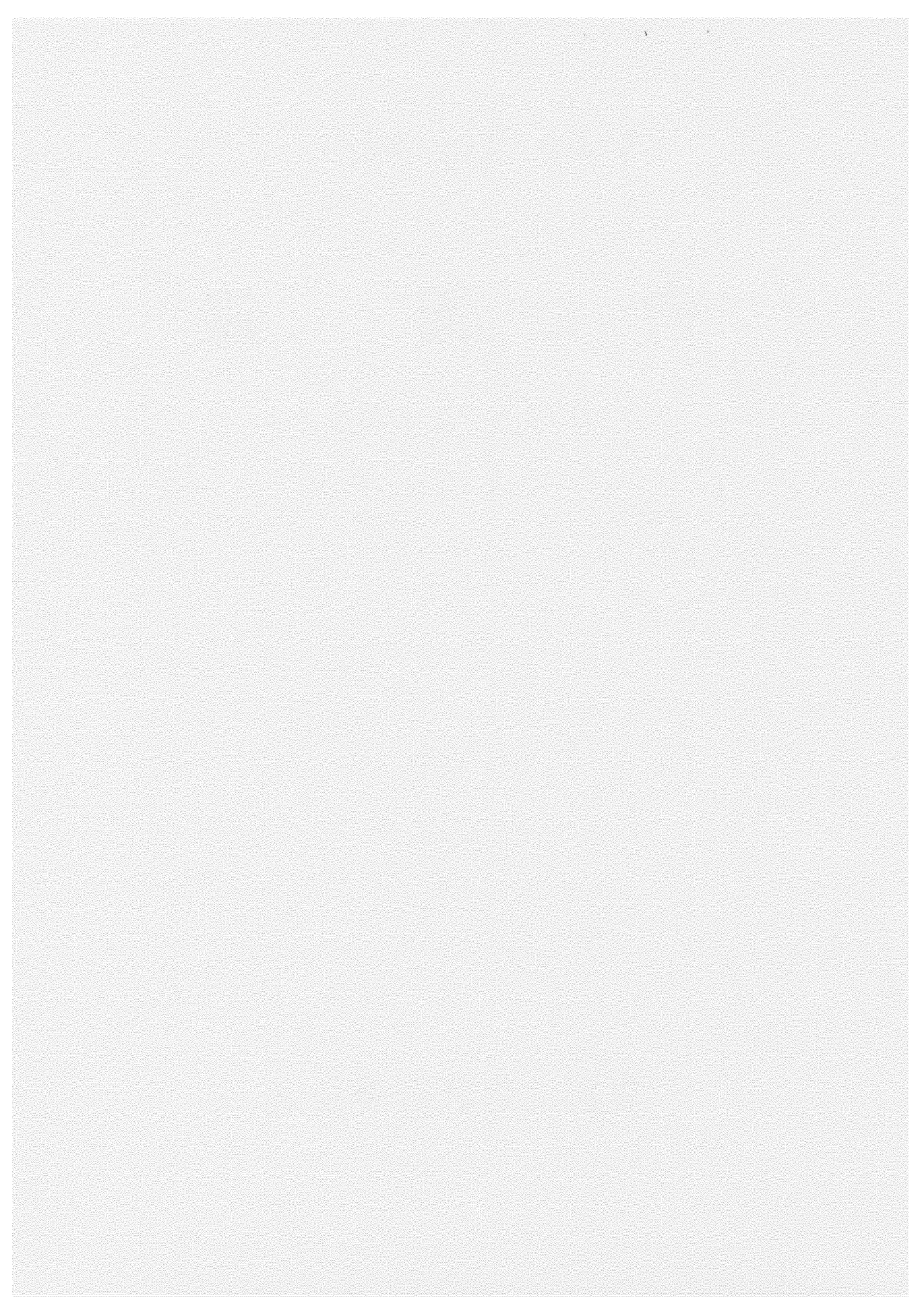


第21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8.6.23. ~ 6.27.)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1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3
II.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III.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9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35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7
3.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3
4.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5
5. 2008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5
6.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7
7.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99
8. 조례심사보고서	103
9. 심사보고서	129
V. 별 책 부 록	
▶ 2007~2011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별책 1)	
▶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2)	
▶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별책 3)	
▶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별책 4)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6월 23일 (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217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신현영

지금부터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11시 02분 폐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6월 23일 (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1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7~2011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8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9.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0.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1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2007~2011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2008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8.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9.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육감 제출)
10.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권오삼 초등교육과장께서는 EBS 학습컨텐츠 활용 세미나 참석차, 김경숙 과학산업교육과장께서는 직업교육 CEO 과정 연수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성영용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학신

의사과장 이학신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안건접수 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접수에 관한 상황입니다.

2008년 6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중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2007~2011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여섯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화기에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청으로 이송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27일 제27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방과후 학교 외국사례 조사 및 해외 홍보비 2억 5,000만원, 세명고등학교 기숙사 증·개축비 7억 7,000만원, 형석고등학교 외부환경개선비 3억 3,650만원, 총 13억

5,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같은 날 27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7~2011년까지의 중기 충북 교육재정 수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1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4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오후에는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하시겠으며,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은 현장방문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6월 27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써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성영용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

[제217회-제1차 본회의]

사를 드리며,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시설사용료를 정하고 기타 현 조례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충청북도학생회관이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확대 신설됨에 따라 충청북도학생회관을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학생회관은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으로, 관장은 원장 및 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정하고 시설사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원장이 정하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의 명칭을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

고등학교로 변경하고 도서관의 관외자료 대출 제한과 대출기간을 도서관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급변하는 학습사회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더 감사원 등에서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 등 권고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준칙안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12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학교설립예정지도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구역으로 설정되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도록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의 자격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금지행위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로 하며, 위원의 의무에 회의 참여, 정보 누설금지, 지위의 남용과 재산상의 권리, 이익취득 및 알선금지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의 자격상실을 의무 미이행, 공무원 위원의 그 직위 상실, 학교운영위원의 신분상실, 연속 3회 이상 회의불참 시로 정하고 회의록에 개최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과 대표위원의 서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 위원들의 주요 발언 요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 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명용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 2007~2011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
- 6.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

부개정조례안

- 7. 2008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9.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14분)

● 의장 성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2011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같은 국 소관이며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 제출 의안 중 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을 보고드린 후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

[제217회-제1차 본회의]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8년도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
정예산안,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에 대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운용 실적을 바탕으로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충북교육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07년 10월
24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선 정산에 따른 지방교육재
정교부금 등 2008년도 세입추계액 변동으
로 당초 수립한 중기충북교육재정 계획을
수정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계획 중 2008년도부터 2011년
까지 4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규모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
입 5조 8,036억원, 지방교육세 등 지방자
치단체 이전수입 6,180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 수입 1,854억원, 지방교
육채를 비롯한 기타수입 2,289억원 등 총
6조 8,359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인건비 4조 6,481억원, 학
교운영비 5,756억원, 교육행정부 469억원
등 경상적경비로 5조 2,706억원이며 시설

비 5,384억원, 교육사업비 8,459억원 등
사업성경비로 1조 3,843억원이고 지방채
와 BTL사업 임대료 상환 및 예비비로
1,810억원 등 총 6조 8,359억원을 투자하
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추계 반영사업에 대하
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정과제인 고교다양화 300프로
젝트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기
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확충 사업비를
2008년도 420억원, 2009년도 100억원,
2010년도 50억원을 반영하였고, 둘째, 한
국형 마이스터고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
및 여건조성사업비로 2008년, 2009년 각
69억원씩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2011년도
개교를 목표로 신설예정인 가칭 양청중학
교, 양청고등학교 신설 사업비로 2009년
83억원, 2010년 233억원을 반영하였고,
넷째, 영어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남부,
북부 영어체험센터 구축사업비를 2008년
46억원, 2009년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영용 의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심혈을 기울여 과학 직업 정보교육 분야
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충실한 계획과
효율적인 운용으로 교육재정을 더욱 건실

하게 유지하여 교육시책 실현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참 조 : 2007~2011증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별책 1)

다음은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업계고등학교 명칭이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폐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조항에 근거법령인 사립학교법 인용조항을 추가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을 변경하며 실업계학교를 전문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 참 조 :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4)

(끝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은 2억 6,400만원의 토지매입비로 충주농업고등학교 학생 실습용지 확보를 위해 6,600㎡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건물취득은 465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기숙형 공립고 추진을 위하여 충주여자고등학교에 3,267㎡, 제천여자고등학교에 3,255㎡, 청원고등학교에 2,950㎡, 옥천고등학교에 2,550㎡, 영동고등학교에 1,630㎡, 진천고등학교에 2,605㎡, 괴산고등학교에 1,786㎡, 음성고등학교에 2,375㎡, 단양고등학교에 2,306㎡의 기숙사를 신축 또는 증축하고 한국형 마이스터고 추진을 위하여 충북반도체고등학교에 2,655㎡의 기숙사를 신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계획에 따라 청성초등학교에 833㎡, 초평초등학교에 1,250㎡, 어상천초등학교에 858㎡, 용천초등학교에 833㎡의 다목적실을 신축하는 등 토지와 건물취득 467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6,600㎡, 건물 2만 9,153㎡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 ▶ 참 조 : 2008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별첨 5)

(끝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선 정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지방공무원 정원분 인건비 반영,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육성,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 영어전용실 설치 및 영어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원연수 등 국정과제 추진 사업과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냉방시설 등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886억 3,000만원에서 1,40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조 6,29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202억 2,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94억 2,000만원, 기타이전수입 6억원, 자체수입 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영 55억 3,0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41억 1,000만원, 교육격차 해소 425억 5,000만원, 보건·급식·체육 활동 34억 5,000만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156억 1,0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직업교육 2,000만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14억 8,000만원, 기관운영관리 19억 2,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5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영용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율화 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과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교육복지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참 조 :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6)
(끝에 실음)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2)

다음은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입결산액은 1조 4,453억 8,793만원이고 세출결산은 1조 3,006억 5,591만원으로 1,447억 3,202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월사업비 615억 2,527만원, 국고보조금 잔액 3억 4,795만원, 지방채상환 117억 3,92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711억 1,959만원은 2008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1조 4,458억 1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1조 4,453억 8,79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10.8%인 1,566억 3,674만원이며 의존수입은 78.6%인 1조 1,367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4,570억 9,110만원으로 89.2%인 1조 3,006억 5,590만원을 집행하였고 4%인 615억 2,5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5%인 949억 99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 615억 2,527만원 중 명시이월사업비 57건에 559억 8,84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0건에 55억 3,686만원입니다.

또한 총 집행액 1조 3,006억 5,590만원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7,117억 1,968만원, 물건비 427억 5,533만원, 경상이전비 4,290억 6,525만원, 자본지출경비 1,076억 5,989만원, 보전지출 22억 1,158만원, 전출금 70억 7,744만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6,669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미수자치단체이전수입 2억 8,000만원, 미수경상이전수입 9,499만원, 보증금 3억 1,200만원, 대여학자금 443억 1,499만원 등으로 총 450억 199만원입니다.

채무액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당해연도에 2,450억 3,905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23억 3,675만원을 상환하였고, 200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2,427억 23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

[제217회-제1차 본회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2조 9,402억 6,556만원, 보존재산 4억 2,364만원, 잡종재산 376억 5,107만원으로 총 2조 9,783억 4,028만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만 3,943점에 1,263억 4,49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제도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신설하면서 부칙에 적용시기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 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재무제표가 핵심입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는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는 작성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만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시점, 즉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자산은 1조 8,143억 9,634만원, 부채는 589억 1,533만원, 순자산은 1조 7,554억 8,101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일정기간, 즉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수익, 비용, 운영차액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1조 3,165억 1,539만원이고 비용은 1조 2,723억 5,922만원이며 운영차액은 441억 5,617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623억 6,631만원 중 2007년도 제천 홍광초등학교 호우피해복구비 외 2건의 사업비로 1억 4,7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4,356만원을 집행하였고 35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 8월 13일에 8월 4일, 5일 호우로 인하여 제천 홍광초 배수로가 완파 및 반파되어 피해복구비로 7,95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 7월 26일에는 7월 18일 발생한 청주중앙중학교 멀티미디어실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7년 3월 27일에 제천야영장 민간인 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 결정되어 2,76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 참 조 :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별첨 7)

(끝에 실음)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별책 3)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별책 4)

이상으로 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과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명용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중 2008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장방문과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33분)

● 의장 성명용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 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

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장수등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세 건의 개정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34분)

● 의장 성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제217회-제1차 본회의]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8년도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즉시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정무 위원님과 광정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김효겸,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희,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별첨 3)
- ▶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4)
- ▶ 2008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별첨 5)
- ▶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6)
- ▶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별첨 7)

※ 별 책 부 록

- ▶ 2007~2011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별책 1)
- ▶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2)
- ▶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별책 3)
- ▶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별책 4)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6월 27일 (금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2008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5.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6.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권오삼 초등교육과장께서는 EBS 학습컨텐츠 활용 세미나

참석차, 김경숙 과학산업교육과장께서는 직업교육 CEO 과정 연수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
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
부개정조례안

● 의장 성명용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
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
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3항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
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위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이 제
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정무 위원장님 나오
셔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와 함께 수
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무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무 교육위
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공공
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립학교보
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
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
난 6월 15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으로 6월 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
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
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과 2쪽을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
원의 시설 사용료와 재정운영에 관한 사
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는 공공기관의 정의 중 충청북도학생회관
을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변경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실업계고
등학교 명칭이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됨
에 따라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
소를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로 변경하고 안 제43조의 실업계고등학교
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하였으며 충청
북도학생교육문화원이 통합 신설에 따 안
제5장에서 학생회관을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으로, 안 제21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하여 학생교육문화원 시설 사용에 관
한 방법과 절차는 원장이 정하도록 하였
고, 안 별표2에서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
원의 시설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관외 자료대출 제한과 대출기간을 도서관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안 별표1에서는 도서관 사용료의 징수금액 중 칼라인쇄 사용료에 대하여 이용자의 실적이 없는 A3~B4 규격의 사용료를 삭제하고 A4~B5 규격의 사용료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1매당 18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낫표(「」)를 표시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인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는 등 법령용어와 표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제1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시설의 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로 제16조, 제25조, 제35조, 제45조의 “하므로써”를 각각 “함으로써”로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개호인”을 “돌봄이”로, 제38조에서 “별지 제4

호 내지 제6호 서식에”를 “별지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로, 안 별표2에서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수영장 비고란에 “일·공휴일 및 야간사용”을 “공휴일 및 야간사용”으로, 제천학생회관 롤러스케이트장과 수영장 비고란에 “단체는 30인 초과 적용”을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나열하고 있는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 선택적으로 해당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등 법령용어와 표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7쪽부터 8쪽까지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0쪽과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설치 운영 중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안건 심의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시·도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학교설립예정지

주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하도록 하여 신설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그 요구사항을 건의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 선정 시 주변지역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퇴하는 사항 심의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능으로 각각 추가하였고,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 위원의 자격, 의무, 자격상실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금지행위와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지 않아야 하고, 회의참여 등 성실한 역할수행, 정화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 누설 금지, 지위를 남용한 자신의 영리목적 거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을 금지하였으며 위원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때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회의 통지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

는 자격을 상실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서 정화위원회의 회의소집 사유를 안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을 신설하여 민원인이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시설해제 신청이 있어 심의를 의퇴할 경우 학교장 의견서, 현장 확인사항, 신청지 주변에 대한 심의 사례 등을 제공토록 하였고, 안 제10조 제5항을 신설하여 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공정성 객관성이 뚜렷하게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장은 정화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회의록 작성 비치 사항을 신설하여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대표위원 서명, 심의안건 및 내용, 위원들의 발언 내용 등을 기록 보존토록 하였으며, 기타 조문순서 변경, 일부 용어사용의 구체화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퇴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교육장 또는 위원장이 학습 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 보호를 위하여 의퇴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교육장이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의퇴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교육장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의퇴하는 경우”로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법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문장체계를 정리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심사보고서 18쪽부터 21쪽까지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2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실업계고등학교 명칭이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4조 제3호에서 “실업계학교”를 “전문계학교”로 변경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안 제2조 제2호에서 인용법령을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안 제1조에서

목적 조항에 근거법령인 사립학교법 인용 조항을 추가하였고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으며 조례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낫표를 표시하였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인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8)

(끝에 실음)

● 의장 성명용

정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4. 2008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17분)

● 의장 성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시어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또한 심도있는 협의를 하신 바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의견

(11시 18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이상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상일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도 내국세 순세계잉여금 선 정산분으로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전입금 결산 정산분, 자체수입 변동분 등을 주요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1조 4,886억 3,846만 1,000원 대비 9.4%인 1,404억 3,907만 3,000원이 증가된 1조 6,290억 7,7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3,600억 5,553만 2,000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429억 5,573만 4,000원, 자산수입 53억 4,38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912억 4,922만 7,000원, 평생직업교육 1,687만 5,000원, 교육일반 491억 7,29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9쪽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예산안의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의 타당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숙형 공립고와 한국형 마이스터고 사업에서 기숙사 정원과 예산편성 단가 조정, 편의시설의 일부를 제외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세출예산안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8쪽 제2외국어 교사연수 일본 연수경비와 항공료 2,700만원 일부 삭감, 예산안 129쪽 중·고전국연합학력평가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사업비에서 발송상자비 등 244만원 일부 삭감, 예산안 137쪽 전문계 특성화고 운영 지원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비에서 8억 6,427만 6,000원 일부 삭감, 예산안 150쪽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인도네시아 교육정보화 지원 초청연수 사업비에서 기념품구입비 등 300만원 일부 삭감, 예산안 158쪽 학교운동부 훈련시설 확충 사업비 중 덕성초등학교 외 2개교 시설사업 감리비 2,19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90쪽, 192쪽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사업비 중 77억 4,115만 3,000원을 일부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총 86억 5,976만 9,000원은 예비비로 편입하여 세입·세출 각각 1조 6,290억 7,753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2007년도 내국세 순세계잉여금 선정산분으로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2007년도 결산 정산분, 기초자치단체전입금과 국고지원전입금, 자체수입 변동분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계상한 사항으로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편성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재정여건상 금년도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공무원 정원 인건비 부족분,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격차해소,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일반사업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자치단체전입금 등을 지원 받아 투자가용 재원으로 확보하여 영어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과 다양한 고교체제 도입을 통한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공립고 및 마이스터고 등 국정과제 추진 사업과 학교급식 직영화, 냉방시설 개선 등 교육감 공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현안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교부금 및 전입금 등을 해당 사업에 적정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교원능력 제고 등의 학력신장과 아울러 교육복지 향상 및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이유와 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삭감내역과 같으므로 보고서 14쪽의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15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6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6쪽과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 현액은 1조 4,570억 9,11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가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2%인 1조 4,453억 8,793만 4,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3%인 1조 3,006억 5,590만 6,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447억 3,20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559억 8,8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5억 3,686만 6,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잔액 3억 4,795만 2,000원과 순세계잉여금 711억 1,959만 1,000원은 다음 연도 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였고 117억 3,921만 5,000원은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각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조 4,453억 8,793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4,458억 18만 1,000원 대비 99.9%를 수납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의존수입이 88.2%인 1조 2,747억 9,999만 6,000원이고, 자체수입이 14.2%인 1,705억 8,793만 9,000원입니다.

[제217회-제2차 본회의]

아울러 징수결정액 중 1,148만 7,000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0.02%인 4억 76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조 4,278억 3,551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92억 5,559만 2,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1조 4,570억 9,110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3.7% 증가한 1조 3,006억 5,590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3%를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625억 2,527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양청초 신설 설계비 외 56건에 559억 8,840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서청초 토지매입비 외 9건에 55억 3,686만 6,000원으로 대부분 시설공사비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949억 99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은 통폐합학교 여건개선 사업에 따른 다목적실을 다목적교실로 신축에 따른 전용 외 4건에 22억 981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2,519억 6,598만 4,000원으로 이는 산남고 외 2개교 교사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 외 3개의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협약 체결에 따른 20년간 총 상환 예정액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대부분이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007년도에 93억 4,740만 3,000원이 발생하였고 65억 8,379만 8,000원이 소멸되어 전년도 말 현재액 422억 3,838만 7,000원 대비 6.5%인 27억 6,360만 5,000원이 증가하여 총 450억 199만 2,000원이며, 채무현재액은 교원명예퇴직수당 사업비 부족에 따른 차입금 117억 3,86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잉여금에서 전액을 상환하였으며 채무부담 행위는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협약 체결에 따른 20년간 총 상환 예정액 2,519억 6,598만 4,000원이 발생하여 그 중 22억 3,700만 8,000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의 채무액은 2,497억 2,99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2조 8,014억 3,622만 1,000원 대비 6.3%인 1,769억 406만 5,000원이 증가한 2조 9,783억 4,028만 7,000원으로 증액의 대

부분이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신규 취득과 증·개축에 기인된 것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현재 1,156억 8,549만 5,000원 대비 9.2%인 106억 5,941만원이 증가한 1,263억 4,49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99.2%의 징수율과 전년도 대비 미수납액이 46.3%가 감소되고 불납결손액도 전년도 대비 9.2%가 감소되는 등 세입에 있어서 징수 및 수납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재원구성별 내역을 보면 의존수입이 88.2%, 자체수입이 11.8%를 차지하고 있는 바 자체수입이 전년도 대비 2.4%에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의한 지원액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교육경비 확충 방안 강구와 수입재원 발굴 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예산 편성 시 모든 세입을 예상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추정치이므로 반

드시 정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추정액은 세출예산 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결산액과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인 바 일부 세입과목의 경우는 과도한 편차를 보여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60억 9,820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6.5%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불용액 중 집행잔액이 145억 2,901만 2,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15.3%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별 예산편성 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적절한 규모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일부 사업의 경우 금액은 적으나 초등교육과 기타 경상이전 외 9건이 전액 불용되고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불용 사업이 28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이 예견될 경우 추경 시 조정 등을 통해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25억 2,527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57건에 559억 8,840만 4,000원, 사고이월액이 10건 55억 3,686만 6,000원으로 사고이월 사업비는 회계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할 수 없을 때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된 금액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연초부터 집행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익년도로 또 다시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추진 상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문제 발생 등을 이월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더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도 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계잉여금 중 일부는 지방채 상환에 사용한 바 앞으로도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 잉여금 사용은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 심사검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32쪽과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548억 1,959만원 중 2.5%인 1억 4,71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제천 홍광초 피해복구비 지원 7,922만 5,000원, 청주 중앙중 화재피해 복구비 3,673만 9,000원, 제천야영장 민간인 부상사고 배상금 2,760만원, 총 1억 4,35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353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제천 홍광초의 경우 지난 2007년 8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급식소 현관 및 운동장이 침수되고 배수로가 파손되어 배수로 개축비로 사용되었으며, 청주 중앙중의 경우 2007년 7월 18일 본관 4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원인불명 화재가 발생하여 시설 및 물품 피해가 있어 물품은 학교 자체에서 복구하고 멀티미디어실 시설 복구비로 사용하였고, 제천학생야영장의 경우 2005년 8월 7일 제천소재 교회 교인 50여 명이 참여한 야유회에서 피해 민간인이 하향 횡단 시설물 이용하던 중 손잡이를 놓쳐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으나 피해 민간인 부모가 야영장에 설치된 공작물 점유 관리자로서의 보존상의 하자를 들어 6,15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결과 법원에서 피해 민간인 과실 60%, 시설물 점유 관리자 40%로 조정 결정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결산안 작성과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기까지 수고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심사보고서(별첨 9)

(끝에 실음)

● 의장 성명용

이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에서 제2외국어 교사 현지 어학연수 경비 외 20개의 사업에서 86억 5,976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세입·세출 각각 1조 6,290억 7,753만 4,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청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17회-제2차 본회의]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원안가결한 것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 조정된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 사업 및 전문계 특성화교 운영 지원 사업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조정된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폐회)

0 출석위원 : 6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김호겸,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희,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8)
- ▶ 심사보고서(별첨 9)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8. 7. .

의 장 성 영 용 成永龍

위 원 정 무 鄭 武

위 원 곽 정 수 郭正守

의사국장 김 장 한 金 張 韓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8. 6. 23. ~ 6. 27.(5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6월 23일(월) 11:00 14: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8. 6. 23. ~ 6. 27. (5일간) 2. 2007~2011 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 보고의 건 3.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충청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6월 24일(화)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본회의휴회
6월 25일(수) 10:00 14:00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 예산·결산소위원회	본회의휴회
6월 26일(목) 09:30 14:00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본회의휴회
6월 27일(금) 11: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충청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217호
의결 연월일	2008년 6월 일 (제 217 회)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8년 6월 13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7-1
----------	-------

제출연월일 : 2008. 6. 1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시설 사용료를 정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명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함
- 충청북도학생회관이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확대·신설됨에 따라 공공 기관의 정의 중 충청북도학생회관을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의 명칭을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함(안 제2조, 제43조)
- 급변하는 학습사회에 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관외자료 대출 제한과 대출기간을 도서관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신설에 따라 학생회관을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으로, 관장을 원장 및 관장으로 변경함【안 제5장(제19조
부터 29조까지)】

- 학생교육문화원 시설 사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원장이 정하도록 신설함(안 제21조제2항제5호)
- 도서관 사용료의 징수금액 중 칼라인쇄 사용료를 변경함(안 별표 1)
 - (1) A3-B4의 사용료 란을 삭제
 - (2) A4-B5의 사용료를 1매당 180원에서 1매당 500원으로 상향 조정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시설 사용료를 정함(안 별표 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나. 자체 부패영향 평가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8. 4. 12(토)~2008. 5. 1(목)

○ 제출의견 :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충청북도학생회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을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이라 한다)으로,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를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제27조제2항·제33조의2 중 "다음 각호의 1"을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회 3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대출기간의 연장은 관장이 정한다"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대출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학생회관"을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으로 한다.

제19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9조 중 "학생회관"을 각각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으로 한다.

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7조 중 "관장"을 각각 "원장 및 관장"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학생회관의 사용)"을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학생회관"을 각각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으로, "관장"을 각각 "원장 및 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생교육문화원 시설 사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제24조의 제목 "(학생회관 사용의 제한)"을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사용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학생회관"을 각각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으로, "관장"을 각각 "원장 및 관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50%"을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1의 인쇄료의 구분란 중 칼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정 수 액	비 고
칼 라	A4-B5	500원	1매당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학생회관)"을 각각 "(학생교육문화원, 학생회관)"으로, "귀 관의 규정"을 "귀 원(관)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26조 관련)

기관명	사 용 구 분	징 수 액 (기준 시간내)	비 고		
충청북도 학생교육 문 화 원	학생문화원 공연장	오전	130,000원	○ 전시설 사용기간 4월~10월(09:00 ~ 20:00) 11월 ~3월(09:00 ~ 18:00) ○ 기준시간(4시간) 초과 사용할때는 매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사용전 예비사용시간 포함.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할때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단, 냉·난방은 제외) ○ 피아노 별도 조율시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3개 기본 무료	
		오후	160,000원		
		야간	200,000원		
	영화음악감상실	오전	30,000원		
		오후	40,000원		
		야간	50,000원		
	본관 공연장		50,000원		
	강 당		75,000원		
	전시설(내부)		20,000원		
	전시설(외부)		10,000원		
	부속설비	피아노(학생문화원 공연장)			40,000원
		피아노(영화음악감상실)			10,000원
		피아노(본관 공연장)			10,000원
		프로젝터(1회)			20,000원
		CD녹음(1회)			30,000원
		테이프녹음(1회)			10,000원
		유선마이크(1개당)			5,000원
		핀마이크(1개당)			10,000원
		보면대(1개당)			1,000원
		난 방			실사용량
냉방(학생문화원)			실사용량		
냉방(본관)			전사용기본요금 1/30+실사용량		
조명(전기)			전사용기본요금 1/30+실사용량		

기관명	사 용 구 분		정 수 액	비 고	
충청북도 학생교육 문 화 원	수영장 (경영풀장)	일일입장	초등학생이하	1,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초등학생이하 : 13세 미만 ○ 중·고등학생 : 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 강습료는 월 회비에 10,000원을 추가(스킨스쿠버 제외) ○ 단체는 15인 이상 적용 ○ 다이빙장은 지도강사 입회 시 사용 가능 ○ 스킨스쿠버용 압축공기통 사용시 1개당 7,000원 추가
			중·고등학생	2,000원	
			일반인	3,000원	
		월회원	초등학생이하	30,000원	
			중·고등학생	35,000원	
			일반인	50,000원	
	단체입장	초등학생이하	1,000원		
		중·고등학생	1,500원		
		일반인	2,500원		
	수영장 (다이빙장)	일일입장	스킨스쿠버	10,000원	
			초등학생이하	2,500원	
			중·고등학생	3,000원	
			일반인	4,000원	
		월회원	스킨스쿠버	170,000원	
			초등학생이하	50,000원	
			중·고등학생	55,000원	
		단체입장	일반인	70,000원	
			스킨스쿠버	7,000원	
초등학생이하			2,000원		
중·고등학생			2,500원		
일반인			3,500원		
수영장 (전용)	경영풀장(시간당)		200,000원		
	다이빙장(시간당)		100,000원		
	개인사물함(월)		3,000원		
제 천 학생회관	롤 스케이트장	학생	개인	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학생 : 19세미만 또는 고등학생 이하 ○ 단체는 30인 초과 적용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수영장	학생	개인	500원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공 통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쇄료 (다자탈자문십)	후백	A3-B4	80원	"
			A4-B5	50원	"
	칼라	A4-B5	500원	"	

현행	개정안
<p>제24조(학생회관 사용의 제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u>학생회관</u>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p> <p>1.~5.(생략)</p> <p>6. 기타 <u>학생회관</u>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 <p>②관장은 <u>학생회관</u> 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p>	<p>제24조(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사용의 제한) ①원장 및 관장 ----- -----<u>학생교육문화원</u> 및 <u>학생회관</u>-----.</p> <p>1.~5.(현행과 같음)</p> <p>6. --<u>학생교육문화원</u> 및 <u>학생회관</u> -----</p> <p>②원장 및 관장--<u>학생교육문화원</u> 및 <u>학생회관</u>----- -----.</p>
<p>제25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u>학생회관</u>의 자료나 물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p>	<p>제25조(사용자의 책임) ----- -----<u>학생교육문화원</u> 및 <u>학생회관</u>----- ----- -----.</p>
<p>제26조(사용료) <u>학생회관</u>의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2와 같다.</p>	<p>제26조(사용료) <u>학생교육문화원</u> 및 <u>학생회관</u>-----.</p>
<p>제27조(사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에 한하여 <u>관장</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생략)</p> <p>2. <u>학생회관</u>의 설치 목적에 상응하는 청소년의 문예활동 등과 기관의 행사</p> <p>3. <u>관장</u>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4.(생략)</p> <p>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영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의 사용료를 50%할인하여 징수한다.</p>	<p>제27조(사용료의 감면) ①----- ----- <u>원장</u> 및 <u>관장</u> ----- -----.</p> <p>1.(현행과 같음)</p> <p>2. <u>학생교육문화원</u> 및 <u>학생회관</u> ----- -----</p> <p>3. <u>원장</u> 및 <u>관장</u> ----- -----</p> <p>4.(현행과 같음)</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u>50퍼센트</u> -----.</p>

현행	개정안
<p>1.~3.(생략)</p> <p>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u>보건복지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인 경우 개호인 1인</p> <p>5.(생략)</p>	<p>1.~3.(현행과 같음)</p> <p>4. ----- -- <u>보건복지가족부장관</u> ----- ----- -----</p> <p>5.(현행과 같음)</p>
<p>제29조(재정) <u>학생회관</u>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p>	<p>제29조(재정) <u>학생교육문화원</u> 및 <u>학생회관</u> ----- -----</p>
<p>제33조의2(사용료의 감면) 원장 및 장장은 <u>다음 각호의 1</u>에 해당될 경우 식비를 제외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33조의2(사용료의 감면)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2.(생략)</p> <p>제43조(사용대상) 공동실습소는 <u>실업계 고등학교</u> 교원 및 학생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근로청소년, 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공동실습소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원 및 학생의 실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1.~2.(현행과 같음)</p> <p>제43조(사용대상) ----- <u>전문계 고등학교</u> ----- ----- ----- ----- ----- -----</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를 준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고궁등의 이용보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시행일 2003.01.01.]]
3.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고궁등의 이용)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궁등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02.12.31, 2004.3.17]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중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교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별첨 3)

의안번호	제277-2호
의결 연월일	2008년 6월 일 (제 217 회)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8년 6월 13일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7-2

제출연월일 : 2008. 6. 13.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감사원 등에서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 등 권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준칙(안)'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학교설립예정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심의사항을 추가 함(안 제3조)
- '위원의 자격'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금지행위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 함(안 제6조)
- '위원의 의무'에 회의참여, 정보누설 금지, 지위의 남용과 재산상의 권리, 이익 취득 및 알선 금지를 정함(안 제7조)
- '위원의 자격상실'을 의무 미 이행, 공무원 위원회 그 직위 상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신분 상실, 연속 3회 이상 회의 불참 시로 정함(안 제8조)

- '회의록'에 개최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과 대표위원의 서명, 심의 안건과 심의내용, 위원들의 주요 발언요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정함(안 제11조)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나. 입법예고(2008. 4. 11. ~ 5. 1.)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하급행정기관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정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에 대한 사항
2. 학교설립예정지 선정 시 주변지역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항
3.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
4. 기타 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정화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장의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위원정수의 최소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정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정화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화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6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7조 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련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위촉한 경우에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
3.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할 경우 보궐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정화위원회 위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정화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장이 민원인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와 시설해제 신청이 있어 심의(이하 "해제심의"라 한다)를 의뢰하는 경우
2. 교육장이 학교설립예정지 선정과 관련한 주변지역의 학습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
3. 교육장 또는 위원장이 학습 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 보호를 위하여 의뢰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제심의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정화구역 관리자인 학교장의 의견서
2. 민원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사항
3. 신청지 주변에 대한 심의사례 등

④위원장은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교육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통보한 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공정성·객관성 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정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및 대표위원의 서명
3.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4. 위원들의 발언내용 주요 요지 등

제12조(간사와 서기) 정화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사무에 따라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무자,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정화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정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학교보건법

제6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15. (생략)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3(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①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은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의 임기 그 밖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와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와 인접한 장소의 범위 및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을 말한다.

1. 교습과정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2.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3. 교습과정이 부기·속독·속셈·주산 및 타자인 학원
4. 교습과정이 음악·미술·무용 및 웅변인 학원
5. 독서실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한다)를 갖춘영업소를 말한다.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④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및 제2항”으로 본다.

(별첨 4)

의안번호	제217호
의결 연월일	2008년 6월 일 (제 217 회)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8년 6월 13일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7-3
----------	-------

제출연월일 : 2008. 6. 1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7.4.12.)으로 '실업계고등학교' 명칭이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되고,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2007.5.25.) 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 시행(2008.5.26.)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목적 조항에 근거법령인 「사립학교법」 인용조항을 추가함(안 제1조)
-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 변경(안 제2조제2호)
- 실업계학교를 전문계학교로 변경(안 제4조제3호)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을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실업계학교”를 “전문계학교”로 한다.

제7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하에 있는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p> <p>.....</p> <p>.....</p>
<p>제2조(정의) (생략)</p> <p>1. (생략)</p> <p>2. “특수교육진흥비”라 함은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학교에 보조하는 제경비를 말한다.</p> <p>3.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p> <p>.....</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보조대상)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행하는 보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행한다.</p> <p>1.~2. (생략)</p>	<p>제3조(보조대상)</p>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제4조(보조대상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다.</p>	<p>제4조(보조대상사업)</p>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p> <p>.....</p>

현행	개정안
<p>1.~2. (생략)</p> <p>3. <u>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u></p> <p>4.~5. (생략)</p> <p>제7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생략)</p> <p>②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이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u></p> <p>1.~3. (생략)</p> <p>4. <u>사립학교법 또는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u></p> <p>5.~6.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3. <u>전문계학교</u>.....</p> <p>.....</p> <p>4.~5. (현행과 같음)</p> <p>제7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u>.....</p> <p>.....</p> <p>.....</p> <p>1.~3. (현행과 같음)</p> <p>4. 「<u>사립학교법</u>」.....</p> <p>.....</p> <p>.....</p> <p>5.~6.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사립학교법

제43조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고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8483호, 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수교육진흥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 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 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 이내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전문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삭제 <2000.2.28>

제80조 (선발시기의 구분)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학교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로 한다.

1. 전문계고등학교(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4.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1.3.2>

1.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2.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중 자연현장실습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각종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도가 같은 지역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④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⑤제73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부칙 <제20003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에 따른 "실업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문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첨 5)

의안번호	제 217-4호
의결 연월일	2008년 6월 일 (제 217 회)

**2008년도 제 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8년 6월 13일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17-4
----------	-------

제출연월일 : 2008. 6. 1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취 득

(단위 : m², 천원)

구 분	기 관 명	사 업 명	수 량	금 액
토 지	충주농고	실습용 토지 매입	6,600	264,000
	소 계	1건	6,600	264,000
건 물	충주여고	기숙사 신축	3,267	5,133,025
	제천여고	기숙사 신축	3,255	5,320,075
	청 원 고	기숙사 증축	2,950	4,346,840
	옥 천 고	기숙사 신축	2,550	4,424,480
	영 동 고	기숙사 신축, 급식소 증축	1,630	3,139,420
	진 천 고	기숙사 신축	2,605	4,857,115
	괴 산 고	기숙사 신축	1,786	3,105,685

구분	기관명	사업명	수량	금액
건물	음성고	기숙사 신축	2,375	4,312,335
	단양고	기숙사 신축	2,306	4,017,136
	충북반도체고	기숙사 신축	2,655	4,697,155
	청성초	다목적교실 신축	833	700,000
	초평초	다목적교실 신축	1,250	1,050,000
	어상천초	다목적교실 신축	858	721,000
	용천초	다목적교실 신축	833	700,000
	소계	14건	29,153	46,524,266
합계	15건	35,753	46,788,266	

제안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

붙임 : 배치도면 15부.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2008년상반기			2008년하반기			합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득	취득합계					15	35,753	46,788,266	15	35,753	46,788,266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입	토지				1	6,600	264,000	1	6,600	264,000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14	29,153	46,524,266	14	29,153	46,524,266
기타											
처 분	처분합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물									
기타											

2. 취득대상 재산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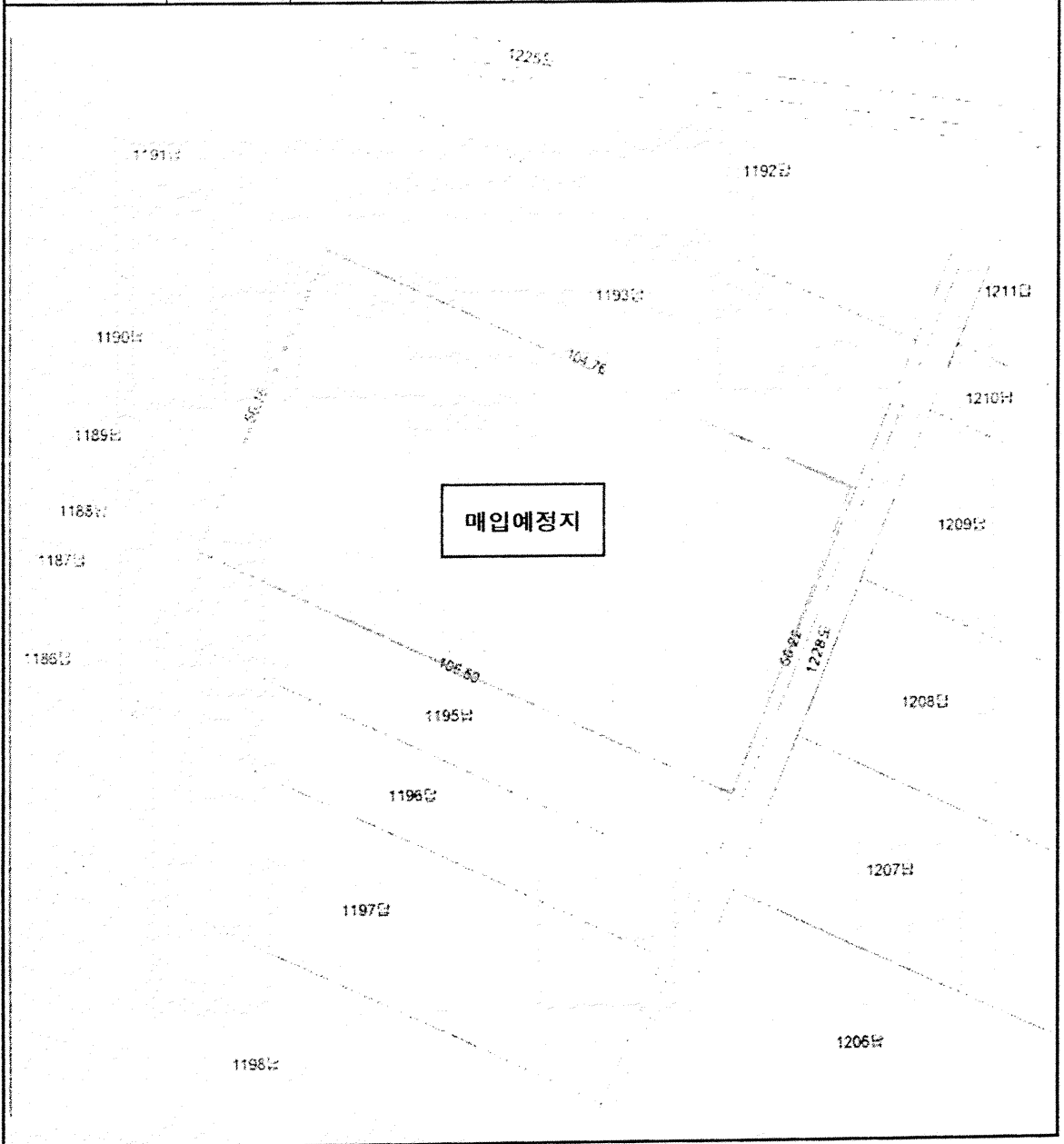
(단위 : m², 천원)

재산의 표시				추정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소유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					
충주농고	토지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1194	6,600	264,000	하반기	- 학생 실습용 토지	교육감	(도면1)
충주여고	건물	충주시 용산동 2060	3,267	5,133,025	하반기	- 기숙사 신축	교육감	(도면2)
제천여고	건물	제천시 서부동 740	3,255	5,320,075	하반기	- 기숙사 신축	교육감	(도면3)
청원고	건물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736-3	2,950	4,346,840	하반기	- 기숙사 증축	교육감	(도면4)
옥천고	건물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15-4	2,550	4,424,480	하반기	- 기숙사 신축	교육감	(도면5)
영동고	건물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72-7	1,630	3,139,420	하반기	- 기숙사 신축 - 급식소 증축	교육감	(도면6)
진천고	건물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590	2,605	4,857,115	하반기	- 기숙사 신축	교육감	(도면7)
괴산고	건물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201	1,786	3,105,685	하반기	- 기숙사 신축	교육감	(도면8)
음성고	건물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03-7	2,375	4,312,335	하반기	- 기숙사 신축	교육감	(도면9)
단양고	건물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324	2,306	4,017,136	하반기	- 기숙사 신축	교육감	(도면10)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 득 소유자	비 고
기관명	구 분	소재지	수 량					
충북 반도체고	건물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103	2,655	4,697,155	하반기	- 기숙사 신축	교육감	(도면11)
청 성 초	건물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34	833	700,000	하반기	- 다목적교실 신축	교육감	(도면12)
초 평 초	건물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93	1,250	1,050,000	하반기	- 다목적교실 신축	교육감	(도면13)
어상천초	건물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456-1	858	721,000	하반기	- 다목적교실 신축	교육감	(도면14)
용 천 초	건물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	833	700,000	하반기	- 다목적교실 신축	교육감	(도면15)
합 계			35,753	46,788,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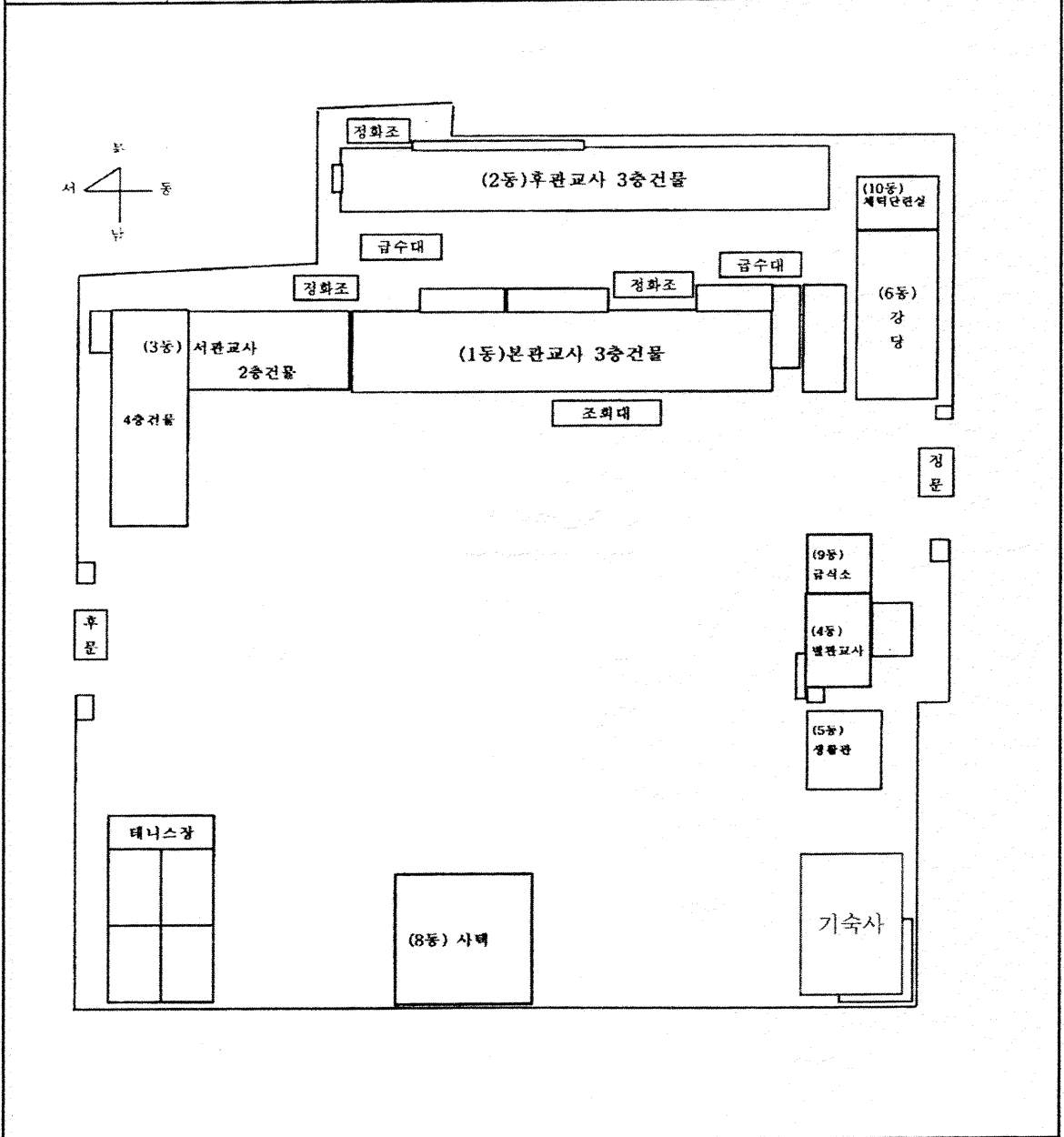
(도면1) 충주농고 토지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유
실습용지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1194	답	6,600	264,000	학생 실습용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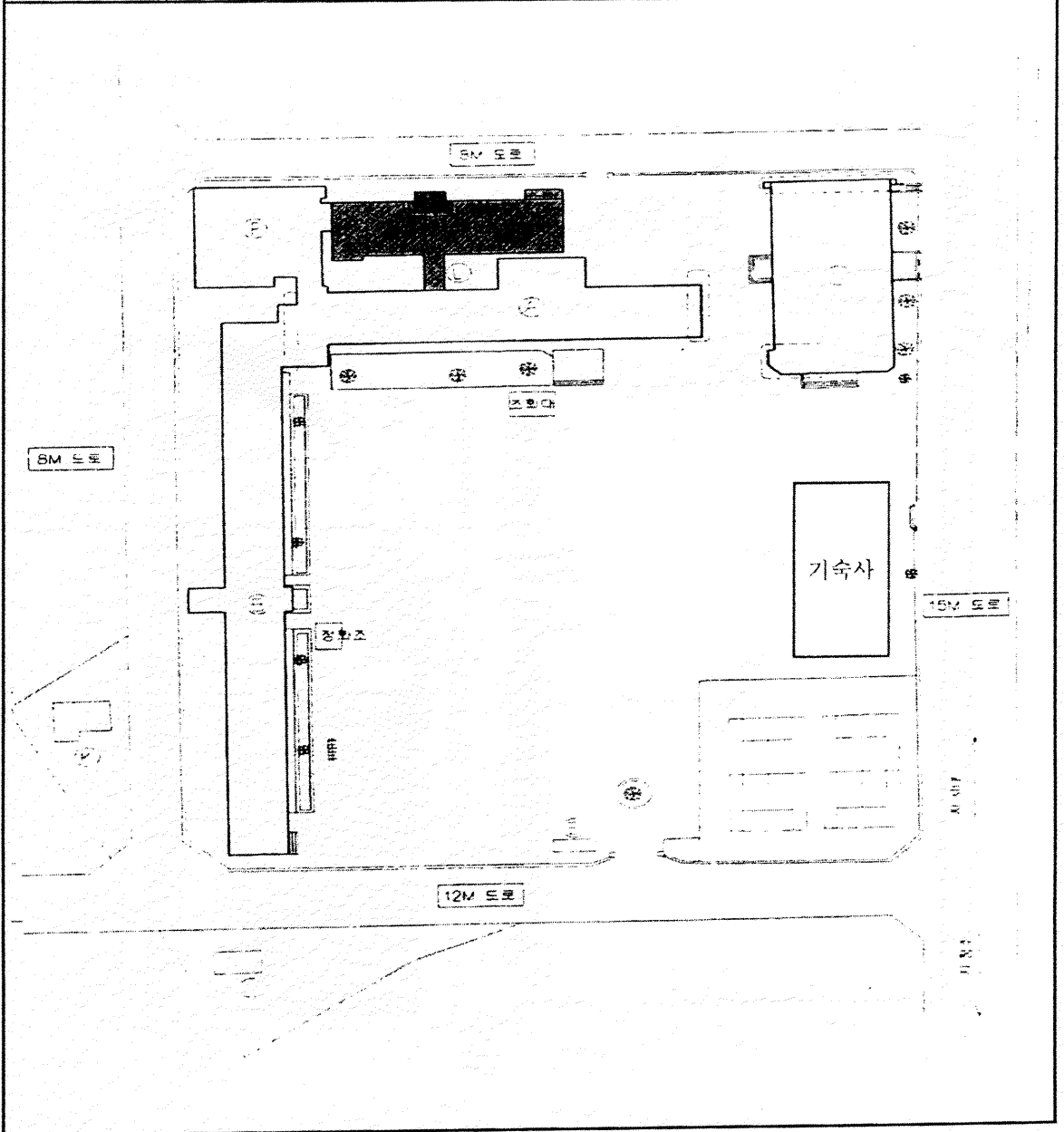
(도면2) 충주여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유
기숙사	충주시 용산동	2060	철.콘.슬	3,267	5,133,025	기숙형 공립고 추진에 따른 기숙사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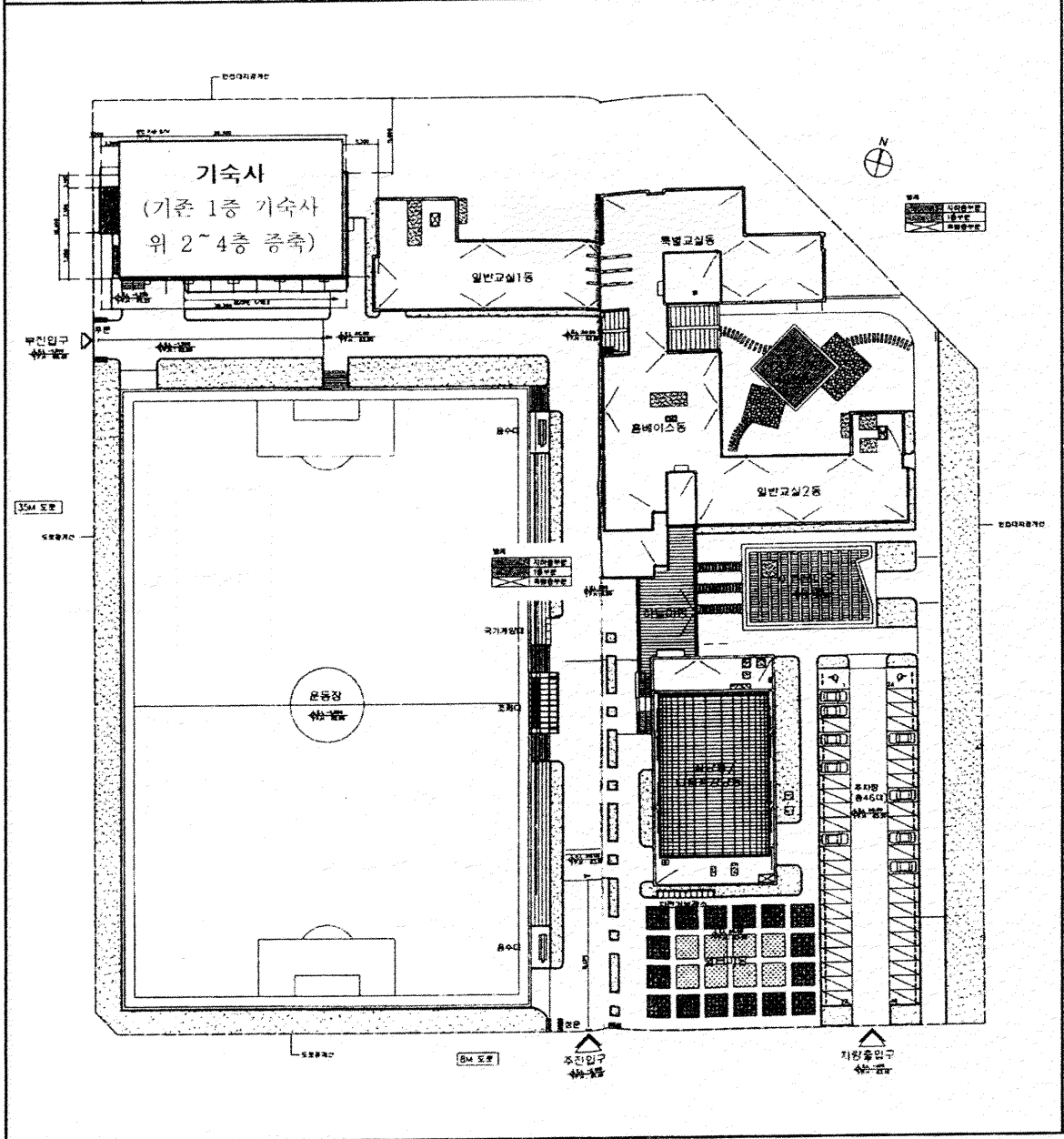
(도면3) 제천여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유
기숙사	제천시 서부동	740	철.콘.슬	3,255	5,320,075	기숙형 공립고 추진에 따른 기숙사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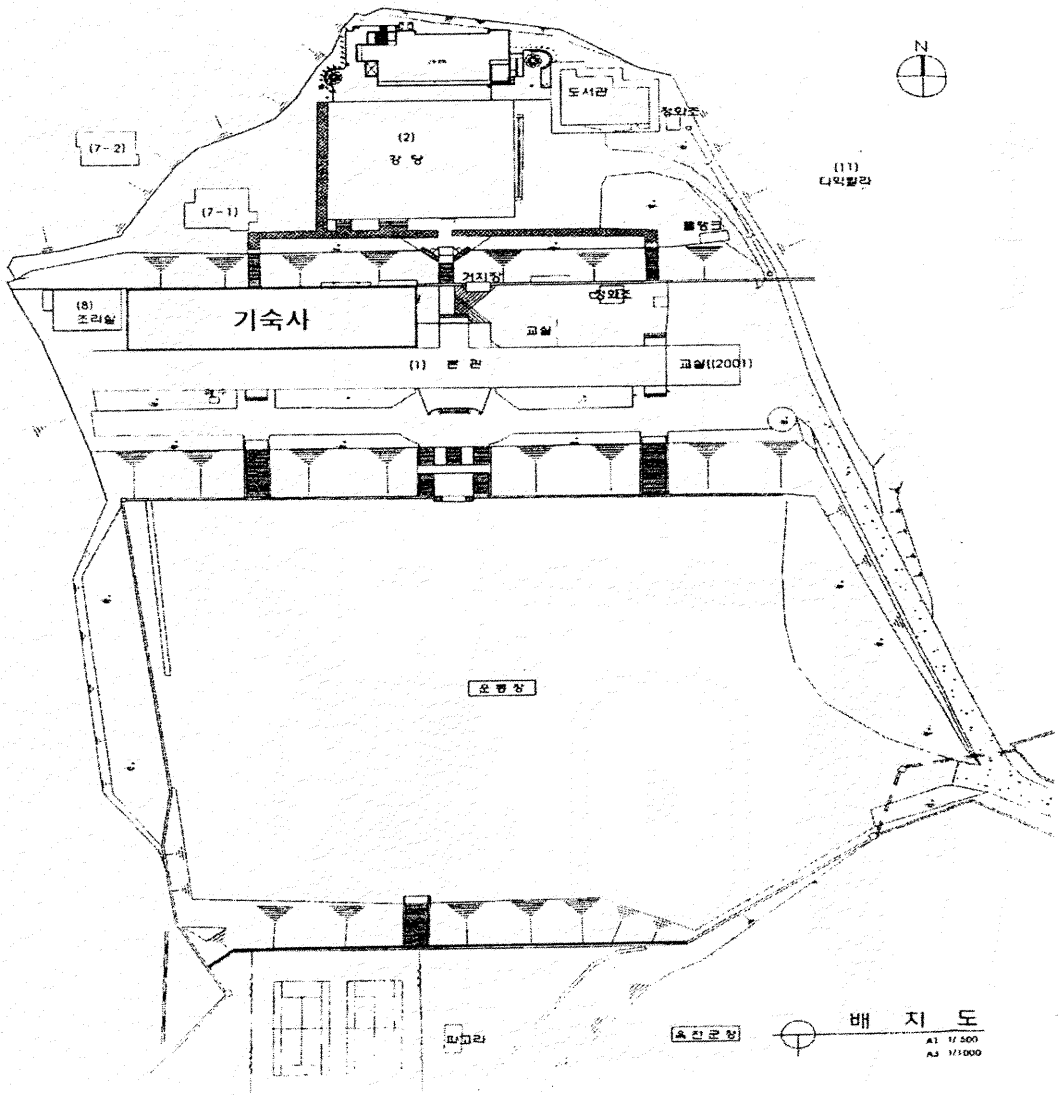
(도면4) 청원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유
기숙사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76-3	철.콘.슬	2,950	4,346,840	기숙형 공립고 추진에 따른 기숙사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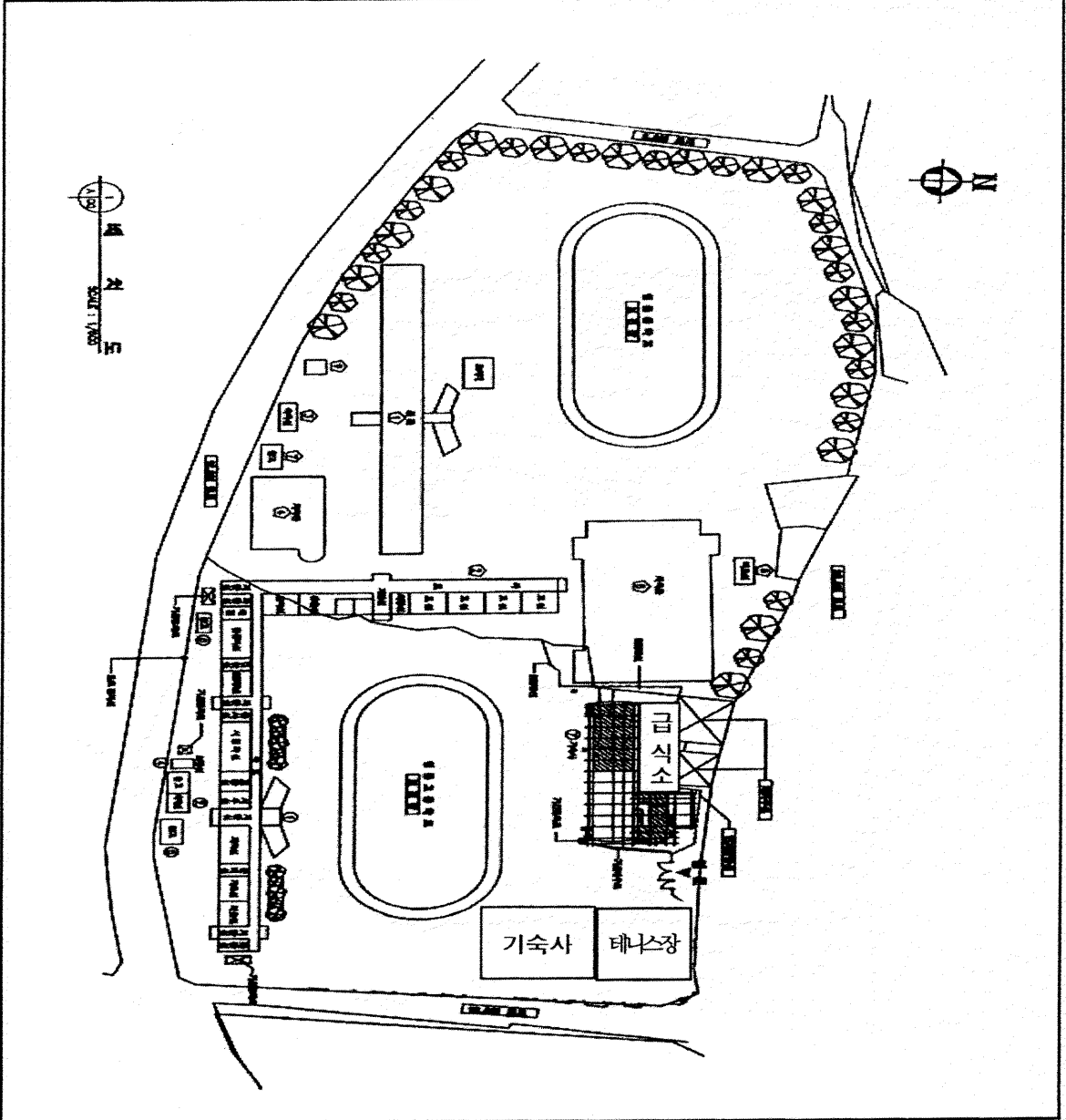
(도면5) 옥천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기숙사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15-4	철.콘.슬	2,550	4,424,480	기숙형 공립고 추진에 따른 기숙사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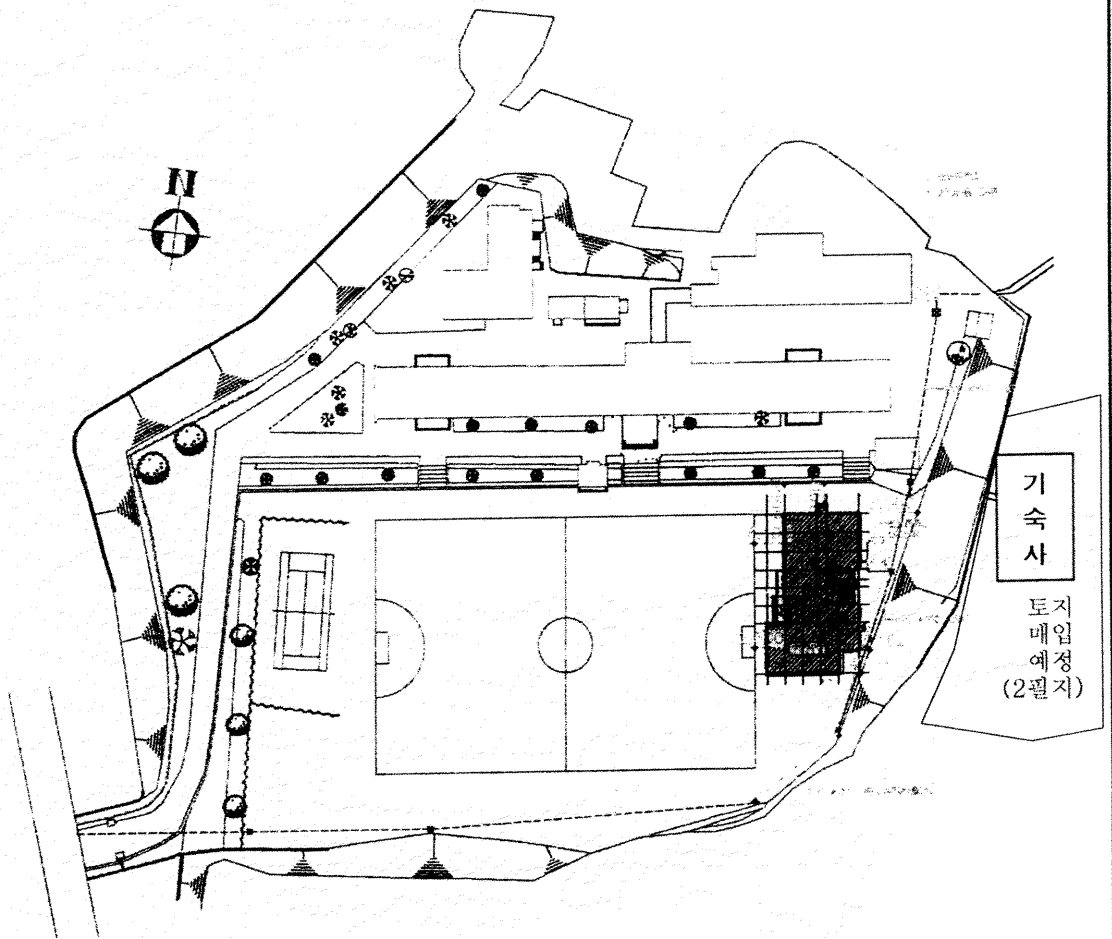
(도면6) 영동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유
기숙사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72-7	철.콘.슬	1,510	2,992,900	기숙형 공립고 추진에 따른 기숙사 신축 급식소 증축
급식소			철.콘.슬	120	146,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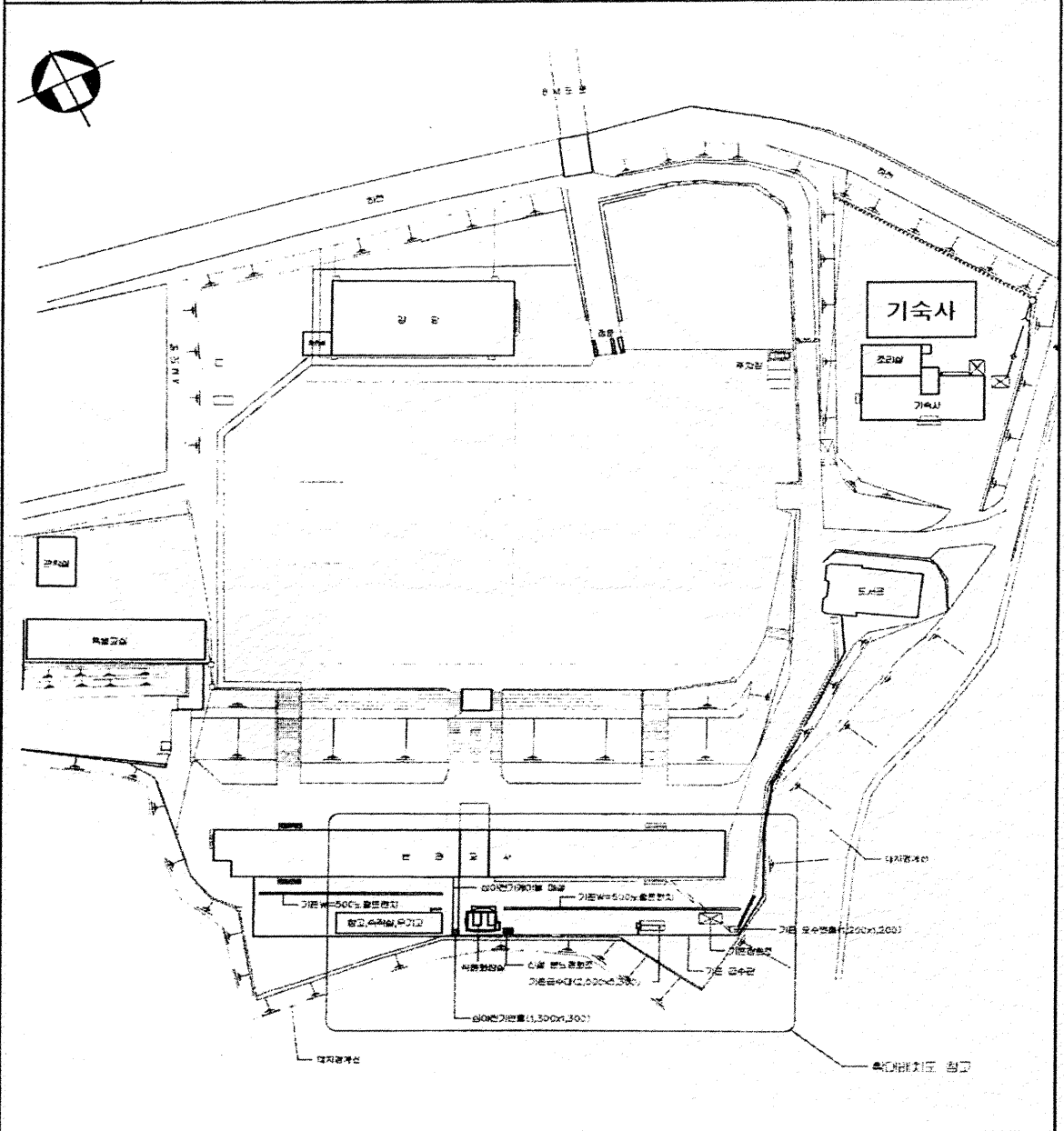
(도면7) 진천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유
기숙사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590	철.콘.슬	2,605	4,857,115	기숙형 공립고 추진에 따른 기숙사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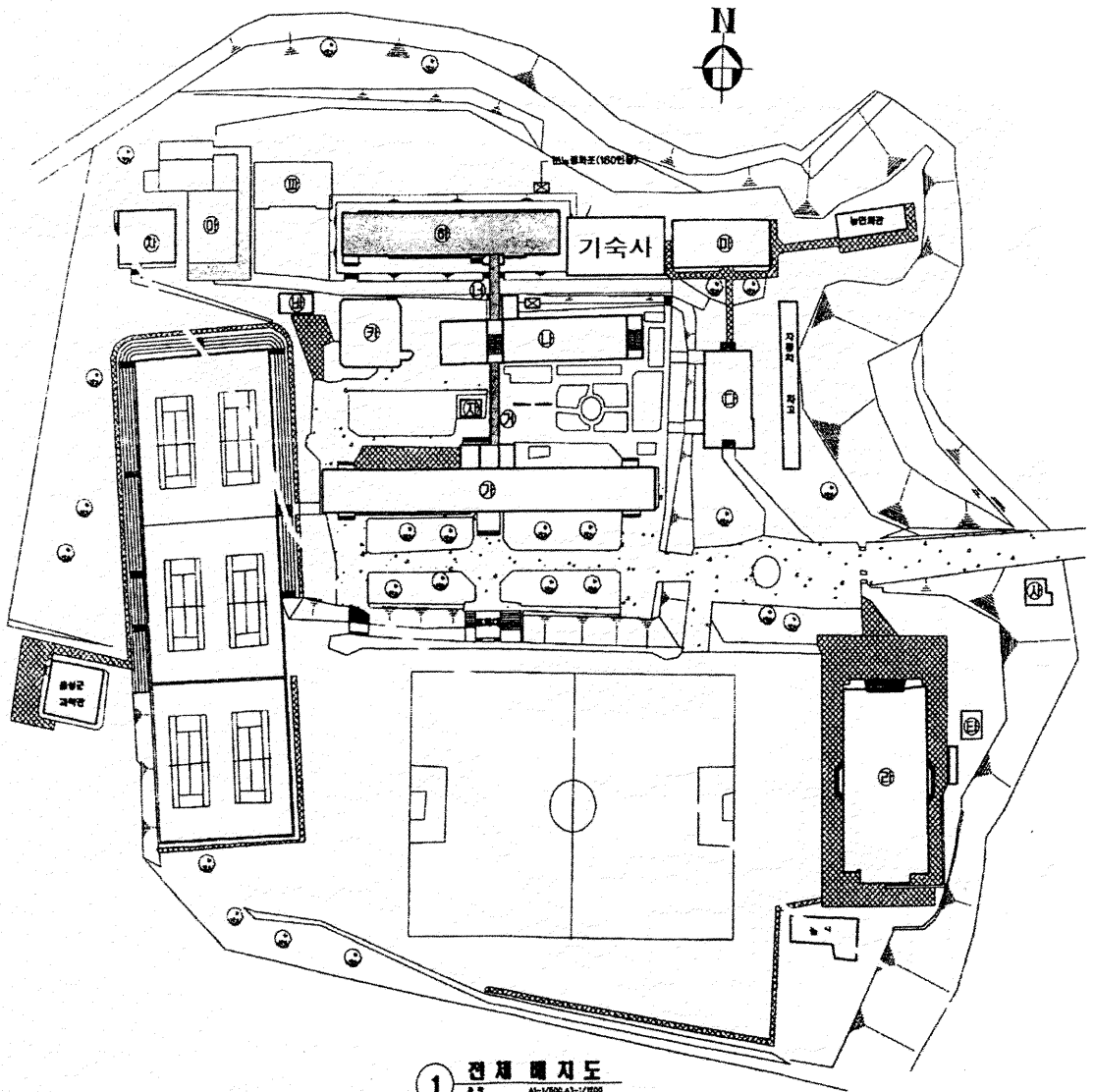
(도면8) 괴산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기숙사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201	철.콘.슬	1,786	3,105,685	기숙형 공립고 추진에 따른 기숙사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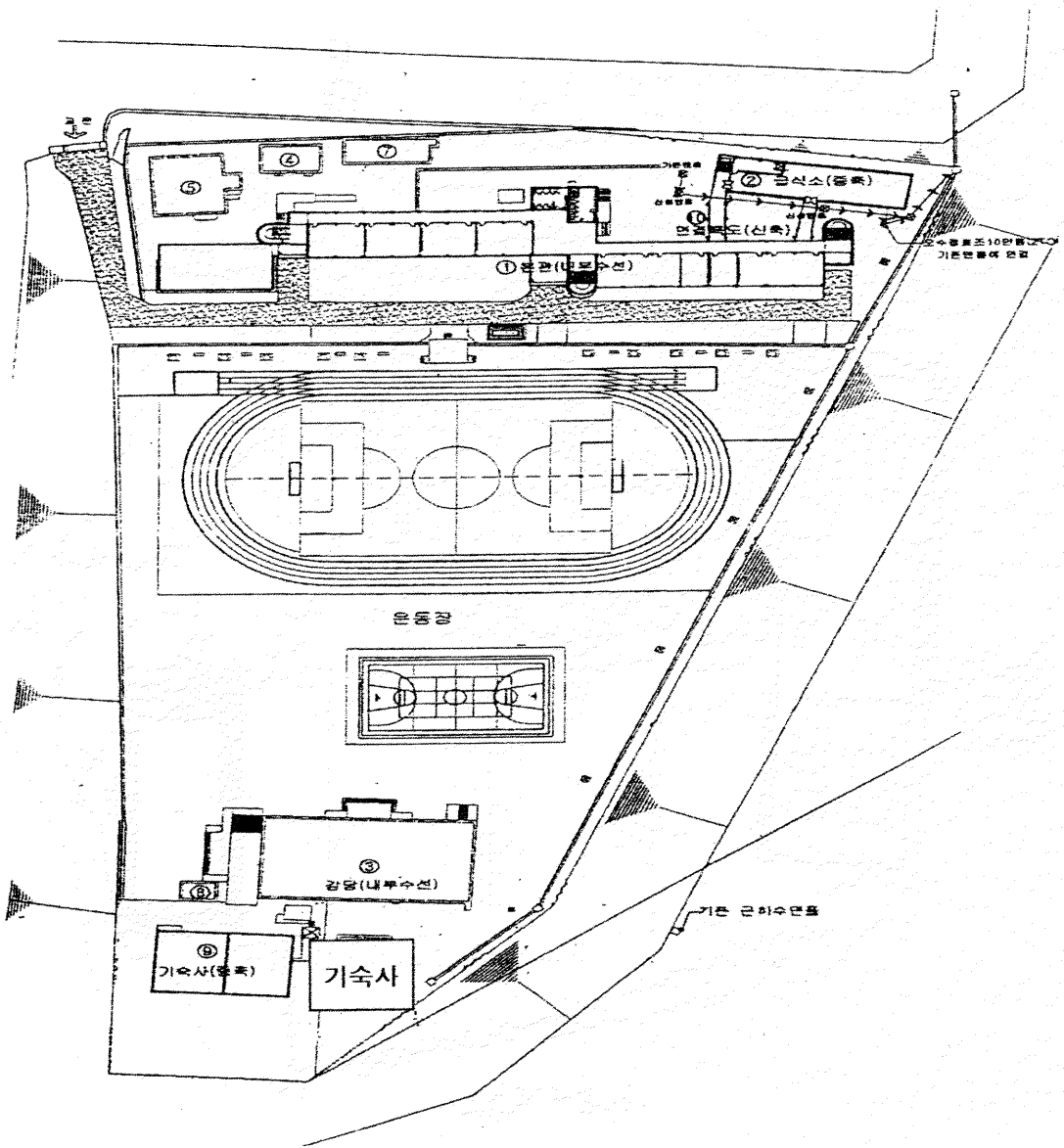
(도면9) 음성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유
기숙사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03-7	철.콘.슬	2,375	4,312,335	기숙형 공립고 추진에 따른 기숙사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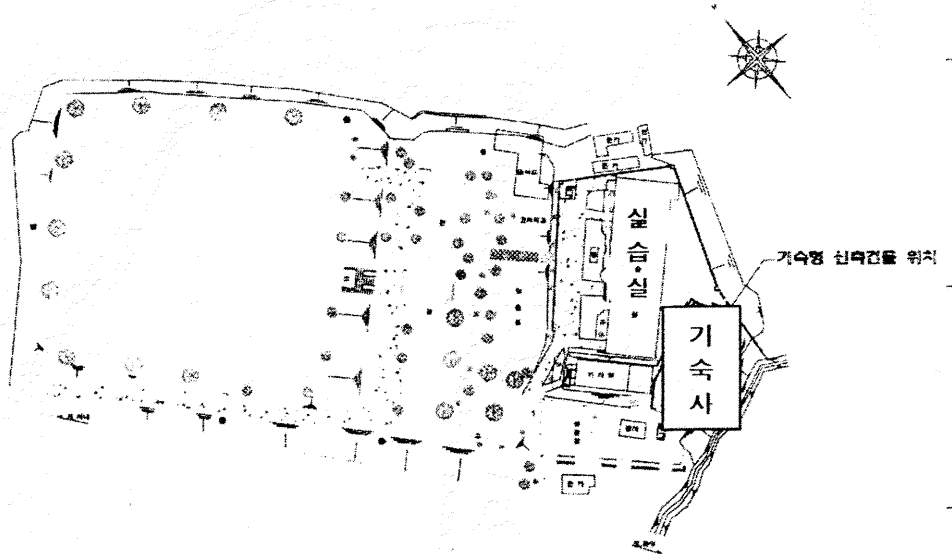
(도면10) 단양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유
기숙사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324	철.콘.슬	2,306	4,017,136	기숙형 공립고 추진에 따른 기숙사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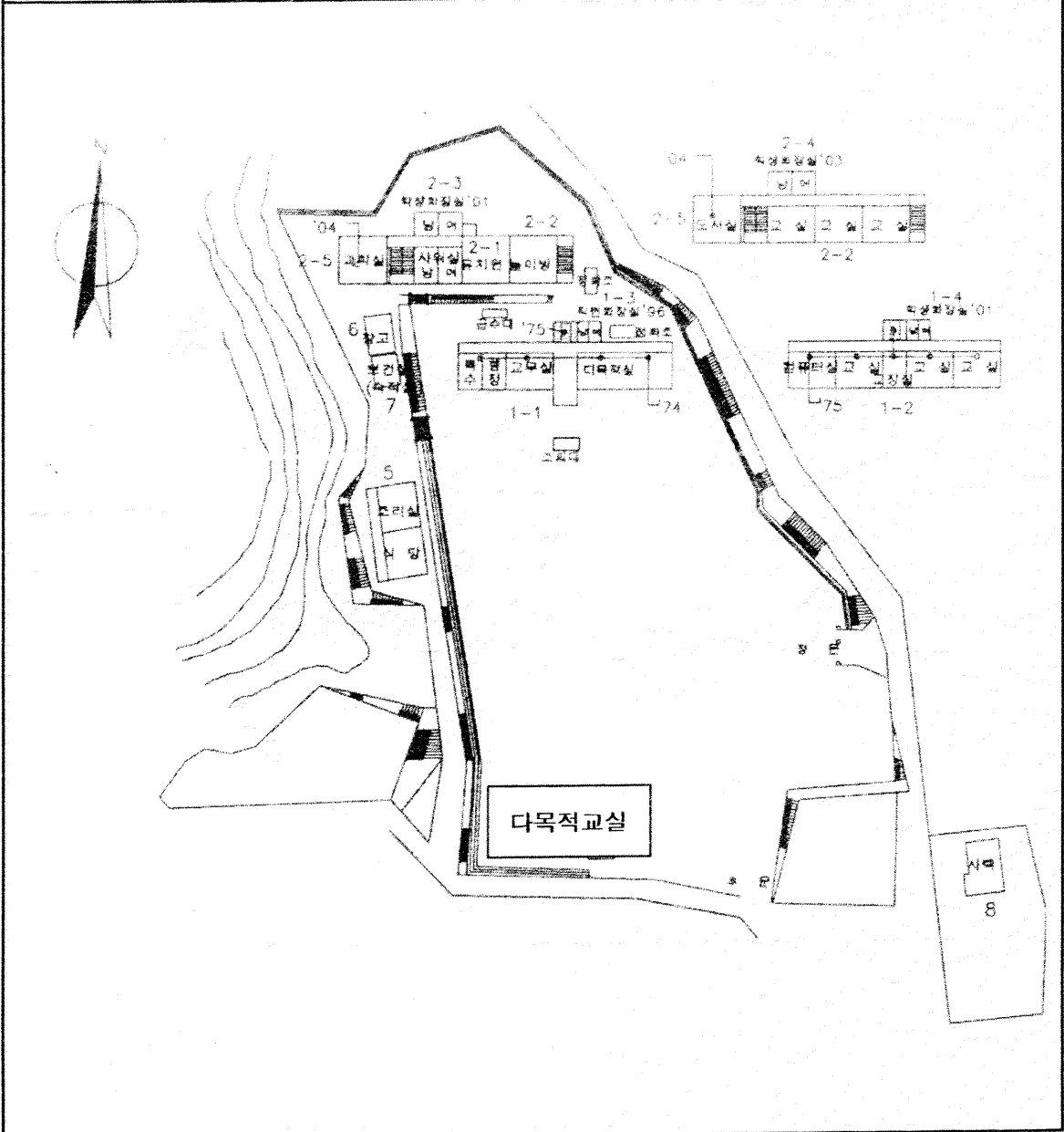
(도면11) 충북반도체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면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기숙사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103	철.콘.슬	2,655	4,697,155	한국형 마이스터고 추진에 따른 기숙사 신축



(도면12) 청성초 건물 취득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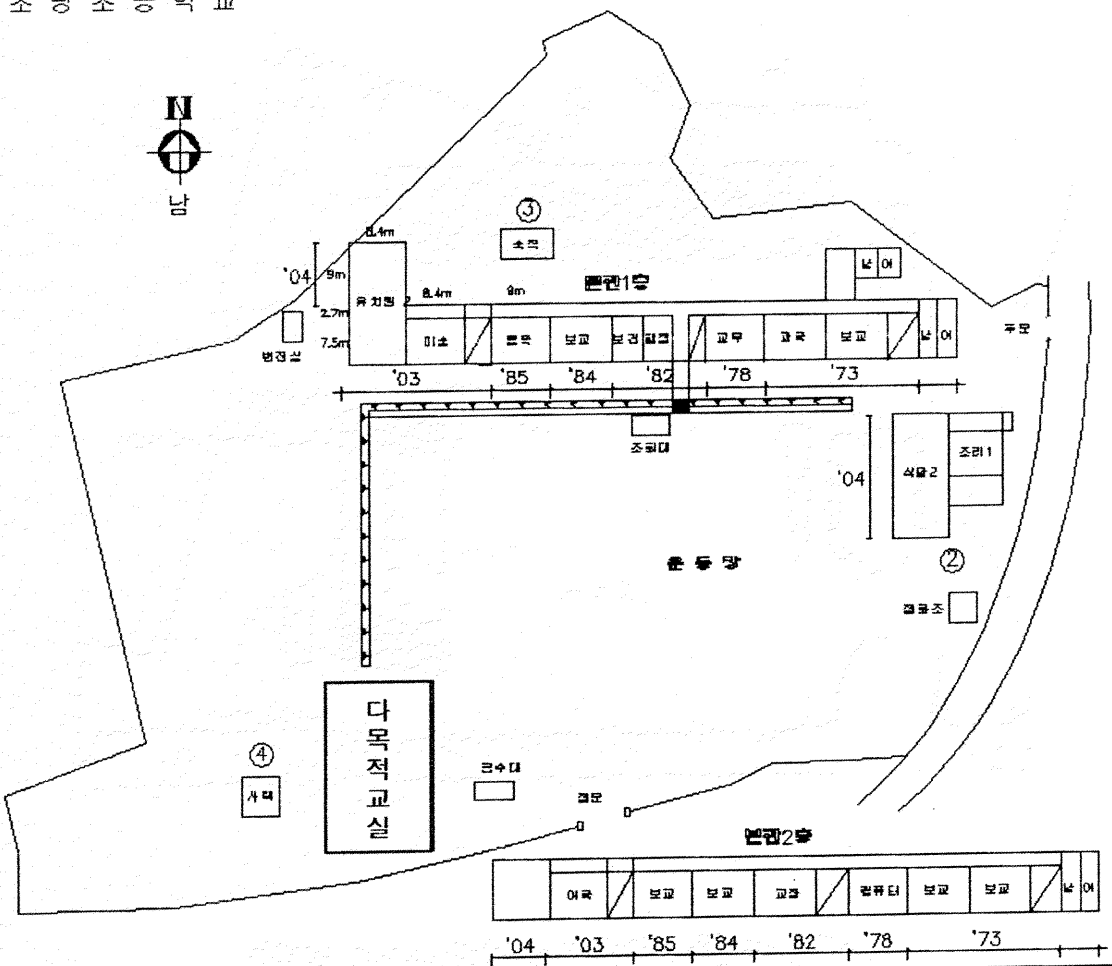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유
다목적교실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34	철.콘.조	833	700,000	다목적교실 신축 옥천군청지원금 (300,000,000원)



(도면13) 초평초 건물 취득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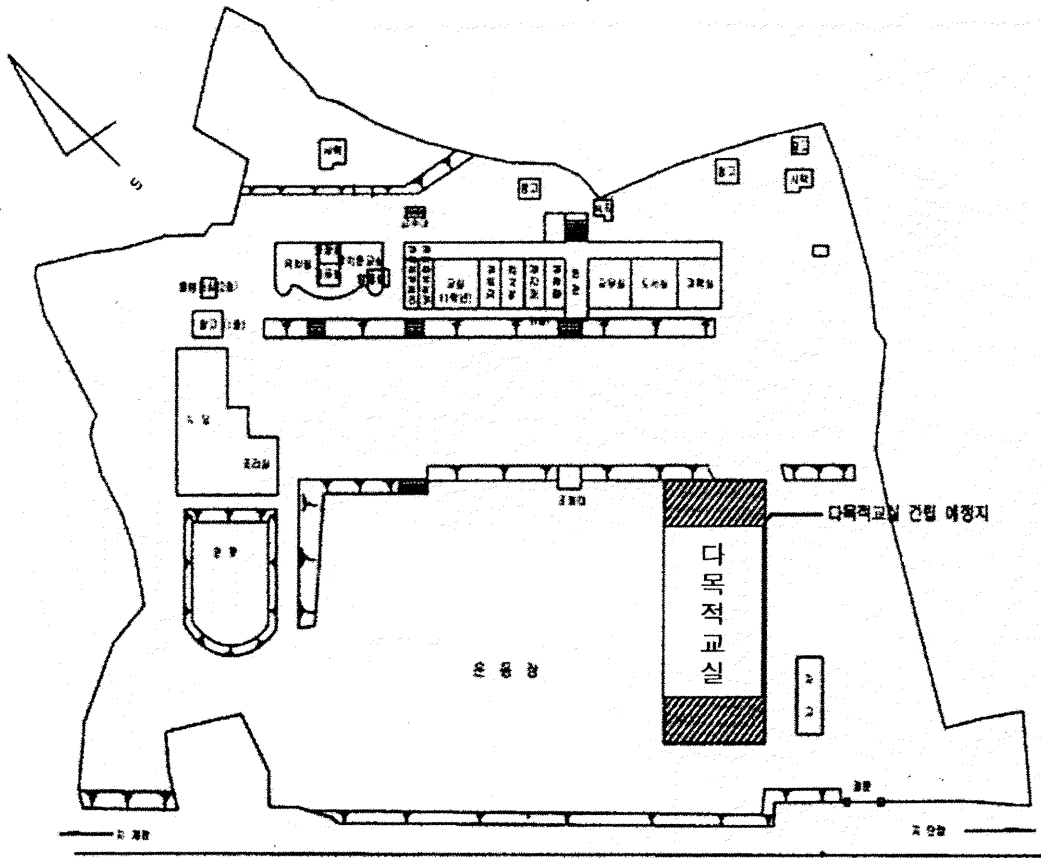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유
다목적교실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93	철.콘.조	1,250	1,050,000	다목적교실 증축 진천군청지원금 (450,000,000원)

초 평 초 등 학 교



(도면14) 어상천초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유
다목적교실	단양군 어상천 임현리	456-1	철.콘.조	858	721,000	다목적교실 신축 단양군청지원금 (309,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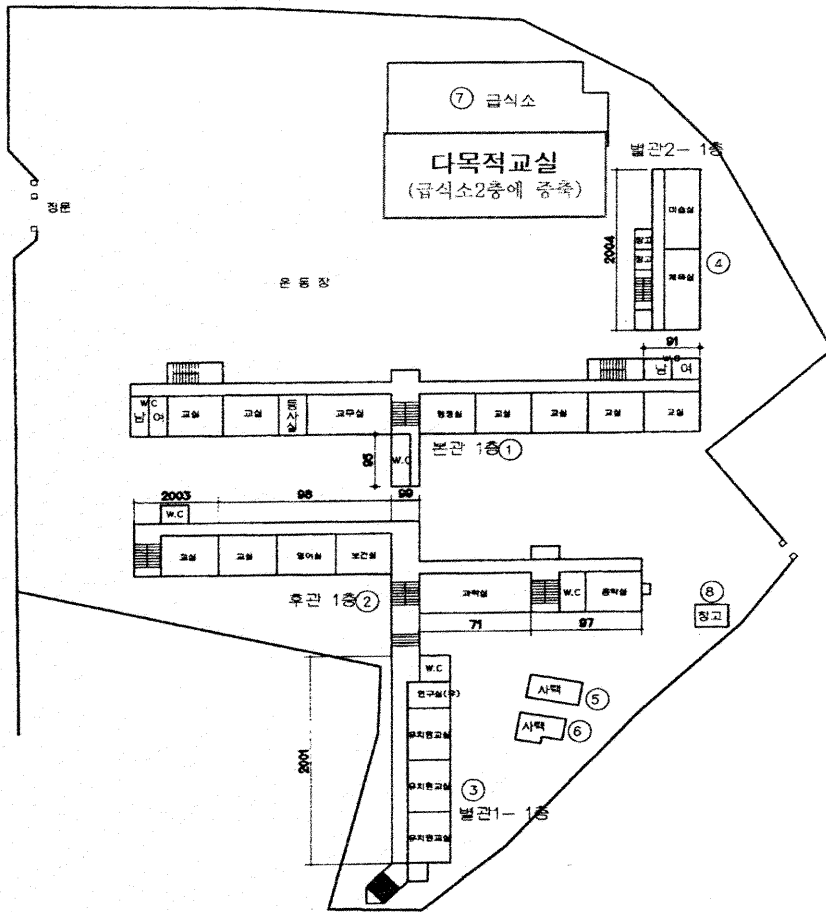


어상천 다목적교실 건립 예정지 배치도

축척 : 1/1200

(도면15) 용천초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유
다목적교실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	철.콘.조	833	700,000	다목적교실 신축 음성군청지원금 (300,000,000원)



(별첨 6)

의안번호	제 211-5호
의결 연월일	2008년 6월 일 (제 217 회)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8년 6월 13일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 번호	211-5
----------	-------

제출연월일 : 2008. 6. 13.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조 4,886억 3,846만 1천원에서 1,404억 3,907만 3천원 증액된 1조 6,290억 7,753만 4천원으로 편성
- 세입 예산은 이전수입 1,402억 431만 3천원, 자체수입 2억 3,476만원 계상
-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912억 4,922만 7천원, 평생·직업교육 1,687만 5천원, 교육일반 491억 7,297만 1천원 계상

□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별책

(별첨 7)

의안번호	제 217-6 호
의결 연월일	2008년 월 일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8년 6월 13일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217-6
----------	-------

제출연월일 : 2008년 6월 1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골자

-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세입결산액 : 1,445,387,934,200원
 - 세출결산액 : 1,300,655,905,420원
 - 세계잉여금 : 144,732,028,780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61,525,270,000원,
국고보조금 잔액 347,952,240원, 지방채상환 11,739,214,81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71,119,591,730원임.
-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별책
-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 : 별책
-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별책
- 참고사항
 -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작성지침 : 별책

2.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이유

-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지출건수 : 3건
- 지출결정액 : 147,100,000원
- 지출액 : 143,564,930원
- 다음연도이월액 : 0원
- 잔액 : 3,535,070원

□ 예비비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건명	지출 결정일	지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잔액	비고
호우피해 복구비	2007.8.13	79,500,000	79,225,140	0	274,860	제천 홍광초 배수로 설치공사
화재피해 복구비	2007.7.26	40,000,000	36,739,790	0	3,260,210	청주 중앙중 화재피해 복구
법무관리 (배상금지급)	2007.3.27	27,600,000	27,600,000	0	0	제천야영장 민간인 부상 사고 배상금
합계		147,100,000	143,564,930	0	3,535,070	

□ 예비비 사용명세서 : 붙임

[붙임]

2007년도 예비비 사용명세서

□ 예비비 지출 사용현황

(단위 : 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잔액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학교 교육	초등 학교	학교시 설확충	학교시설 관리	학교시설 사업비	시설비	79,500,000	79,225,140	0	274,860
	중학교	학교시 설확충	학교시설 관리	학교시설 사업비	시설비	40,000,000	36,739,790	0	3,260,210
교육 행정	본청	본청 운영	법무관리	교육 사업비	배상금	27,600,000	27,600,000	0	0
합 계						147,100,000	143,564,930	0	3,535,070

(별첨 8)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6.27. 11:00)

조례 심사 보고서

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8년 6월 23일,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8년 6월 25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교육국장 김 종 근)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시설 사용료를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함
- 충청북도학생회관이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확대·신설됨에 따라 공공 기관의 정의 중 충청북도학생회관을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

실습소의 명칭을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함(안 제2조, 제43조)

- 급변하는 학습사회에 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관외자료 대출 제한과 대출기간을 도서관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신설에 따라 학생회관을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으로, 관장을 원장 및 관장으로 변경함【안 제5장(제19조부터 29조까지)】
- 학생교육문화원 시설 사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원장이 정하도록 신설함(안 제21조제2항제5호)
- 도서관 사용료의 징수금액 중 칼라인쇄 사용료를 변경함(안 별표 1)
 - A3-B4의 사용료 란을 삭제
 - A4-B5의 사용료를 1매당 180원에서 1매당 500원으로 상향 조정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시설 사용료를 정함(안 별표 2)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문화 공간 확보 및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알찬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추진된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을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시설 사용료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2조에서는 지난 2008. 4. 18.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충청북도학생회관이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확대·신설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의 중 “충청북도학생회관”을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변경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07.4.12.)으로 “실업계고등학교” 명칭이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를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 변경하고, 안 제43조의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하였으며,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신설에 따라
 - 안 제5장(제19조 ~ 제29조)에서 “학생회관”을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으로,
 - 안 제21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학생교육문화원 시설 사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원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 안 별표 2에서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시설 사용료를 정하였음
- 아울러, 안 제14조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 및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관외자료 대출 제한과 대출기간을 도서관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안 별표 1에서는 도서관 사용료의 징수금액 중 칼라인쇄 사용료에 대하여 이용자의 실적이 없는 A3 ~ B4 규격의 사용료를 삭제하고 A4 ~ B5 규격의 사용료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1매당 18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낫표(「」)를 표시하였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인 “다음 각호

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는 등 법령용어와 표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용어와 표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수정할 부분이
있어

- 조례 제1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
설하여 “도서관 시설의 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로,
- 제16조, 제25조, 제35조, 제45조의 “하므로써“를 각각 “함으로써“로,
- 제24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 제27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원장 및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로,
- 제27조제2항제4호에서 “개호인“을 “돌봄이“로,
- 제28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으로,
- 제34조에서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 제38조에서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에“를 “별지 제4호부터 제5호
까지의 서식에“로,
- 제40조에서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 제44조에서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 안 별표 2에서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수영장(전용) 비고란에 “일·공휴일 및 야간사용“을 “공휴일 및 야간사용“으로 하고, 제천학생회관 롤러스케이트장과 수영장 비고란에 “단체는 30인 초과 적용“을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5. 수정안 주요 내용

가.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중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용어와 표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 골자

- 조례 제1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시설의 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로,
- 제16조, 제25조, 제35조, 제45조의 “하므로써“를 각각 “함으로써“로,
- 제24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 제27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원장 및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로,
- 제27조제2항제4호에서 “개호인“을 “돌봄이“로,

- 제28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으로,
- 제34조에서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 제38조에서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에”를 “별지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로,
- 제40조에서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 제44조에서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 안 별표 2에서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수영장(전용) 비고란에 “일·공휴일 및 야간사용”을 “공휴일 및 야간사용”으로 하고, 제천학생회관 롤러스케이트장과 수영장 비고란에 “단체는 30인 초과 적용”을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으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8. 6. 27.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개정조례안중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용어와 표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사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 제1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시설의 사용자가 사용자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로,
- 제16조, 제25조, 제35조, 제45조의 "하므로써"를 각각 "함으로써"로,
- 제24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 제27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원장 및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로,
- 제27조제2항제4호에서 "개호인"을 "돌봄이"로,

- 제28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으로,
- 제34조에서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 제38조에서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에"를 "별지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로,
- 제40조에서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 제44조에서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 안 별표 2에서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수영장(전용) 비고란에 "일·공휴일 및 야간사용"을 "공휴일 및 야간사용"으로 수정하고, 제천학생회관 롤러스케이트장과 수영장 비고란에 "단체는 30인 초과 적용"을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으로 수정한다.

3.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15조(도서관 사용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4. (생략) 5. 도서관 시설의 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6. 기타 실내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신 설)		제15조(도서관 사용제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4. (생략) 5. (삭 제) 6. (삭 제) ② 도서관 시설의 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자의 책임) ... 훼손분실하므로써.....		제16조(사용자의 책임) ... 훼손분실하므로써.....
제24조(학생회관 사용의 제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기관 또는 단체)에.....	제24조(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사용의 제한) ①원장 및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기관 또는 단체)에.....	제24조(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사용의 제한) ①원장 및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관 또는 단체)에.....
제25조(사용자의 책임) ... 훼손분실하므로써.....		제25조(사용자의 책임) ... 훼손분실하므로써.....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7조(사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에 한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4. (생략) ② (생략) 1. 3. (생략) 4. <u>개호인</u> 5. (생략)	제27조(사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에 한하여 원장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4. (생략) ② (생략) 1. 3. (생략) 4. (생략) 5. (생략)	제27조(사용료의 감면) ①원장 및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4. (생략) ② (생략) 1. 3. (생략) 4. <u>돌봄이</u> 5. (생략)																																				
제28조(사용료의 반환)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8조(사용료의 반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4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34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5조(사용자의 책임) ... 훼손분실하므로써....		제35조(사용자의 책임) ... 훼손분실함으로써....																																				
제38조(시설의 사용) ...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에....		제38조(시설의 사용) ... 별지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제40조(사용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40조(사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4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44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5조(사용자의 책임) ... 훼손분실하므로써....		제45조(사용자의 책임) ... 훼손분실함으로써....																																				
[별표2] □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	[별표2] □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	[별표2] □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명</th> <th>사용구분</th> <th>징수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충청북도 학생회관</td> <td>수영장 (전용)</td> <td></td> <td>○일·공휴일 및 야간사용....</td> </tr> <tr> <td>제천 학생회관</td> <td>롤러 스케이트장 수영장</td> <td></td> <td>○단체는 30인 초과 적용</td> </tr> </tbody> </table>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충청북도 학생회관	수영장 (전용)		○일·공휴일 및 야간사용....	제천 학생회관	롤러 스케이트장 수영장		○단체는 30인 초과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명</th> <th>사용구분</th> <th>징수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충청북도 학생회관</td> <td>수영장 (전용)</td> <td></td> <td>○일·공휴일 및 야간사용....</td> </tr> <tr> <td>제천 학생회관</td> <td>롤러 스케이트장 수영장</td> <td></td> <td>○단체는 30인 초과 적용</td> </tr> </tbody> </table>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충청북도 학생회관	수영장 (전용)		○일·공휴일 및 야간사용....	제천 학생회관	롤러 스케이트장 수영장		○단체는 30인 초과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명</th> <th>사용구분</th> <th>징수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충청북도 학생회관</td> <td>수영장 (전용)</td> <td></td> <td>○공휴일 및 야간사용....</td> </tr> <tr> <td>제천 학생회관</td> <td>롤러 스케이트장 수영장</td> <td></td> <td>○단체는 30인 이상 적용</td> </tr> </tbody> </table>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충청북도 학생회관	수영장 (전용)		○공휴일 및 야간사용....	제천 학생회관	롤러 스케이트장 수영장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충청북도 학생회관	수영장 (전용)		○일·공휴일 및 야간사용....																																			
제천 학생회관	롤러 스케이트장 수영장		○단체는 30인 초과 적용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충청북도 학생회관	수영장 (전용)		○일·공휴일 및 야간사용....																																			
제천 학생회관	롤러 스케이트장 수영장		○단체는 30인 초과 적용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충청북도 학생회관	수영장 (전용)		○공휴일 및 야간사용....																																			
제천 학생회관	롤러 스케이트장 수영장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8년 6월 23일,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8년 6월 25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교육국장 김 종 근)

가. 제안이유

- 감사원 등에서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 등의 권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준칙(안)'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학교설립예정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심의사항을 추가 함(안 제3조)
- '위원의 자격'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금지행위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 함 (안 제6조)

- '위원의 의무'에 회의참여, 정보누설 금지, 지위의 남용과 재산상의 권리, 이익 취득 및 알선 금지를 정함 (안 제7조)
- '위원의 자격상실'을 의무 미 이행, 공무원 위원에 그 직위 상실, 학교운영위원의 신분 상실, 연속 3회 이상 회의 불참 시로 정함(안 제8조)
- '회의록'에 개최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과 대표위원의 서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 위원들의 주요 발언요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정함(안 제11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안건 심의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시·도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3조에 학교설립예정지 주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하도록 하여 신설학교 주변에 위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설립 단계부터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하도록 2007. 4. 27.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으며, 또한 학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그 요구사항을 건의하도록 2007. 8. 3.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함.

- 학교설립예정지 선정시 주변지역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 심의
-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 위원의 자격, 의무, 자격상실 조항을 신설함
- 자격 :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금지행위와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 의무 :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성실한 역할 수행, 정화위원회에서 알게된 정보누설 금지, 지위를 남용한 자신의 영리 목적 거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금지함
 - 자격상실 : 위원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때,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회의 통지를 받고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 안 제10조 제1항에서 정화위원회의 회의소집 사유를 안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음.
- 안 제10조 제3항을 신설하여 민원인이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와 시설해제 신청이 있어 심의(해제심의)를 의뢰할 경우 학교장 의견서, 현장 확인사항, 신청지 주변에 대한 심의사례 등을 제공토록 하였음.

- 안 제10조 제5항을 신설하여 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공정성·객관성이 뚜렷하게 결여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장은 정화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에 회의록 작성 비치 사항을 신설하여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대표위원 서명, 심의안건 및 내용, 위원들의 발언 내용 등을 기록 보존토록 하였음.
- 기타 조문순서 변경, 일부 용어 사용의 구체화 및 미비점 보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범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문장 체계를 정리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어
 - 안 제1조에서 “제6조 및“을 “제6조와“로, “제4조의3,“을 “제4조의3과“로 하며, “제5조 및“을 “제5조와“로,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 제4항에 따른“으로, “설치 및 운영“을 “설치와 운영“으로,
 - 안 제2조에서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하급행정기관“을 “제34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단서규정에“를 “단서에“로 “금지행위 및“을 “금지행위와“로,
 -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위생 및“을 “보건·위생과“로,

- 안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으로,
- 안 제4조제1항에서 “각 1인”을 “각 1명”으로, “13인 이상 17인 이내”를 “13명 이상 17명 이하”로,
-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하고, “임명 또는”을 “임명하거나”로,
- 안 제5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 안 제5조제2항에서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잔임기간이”를 “남은 임기가”로,
- 안 제6조제2항에서 “금지행위 및”을 “금지행위와”로,
- 안 제7조제3항에서 “이익의 취득 또는”을 “이익을 취득하거나”로,
- 안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관련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위촉한”을 “소속직원과 관련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임명하거나 위촉한”으로,
- 안 제8조제1항제3호에서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 안 제8조제2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으로”로,
- 안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장 또는 위원장이 학습 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 보호를 위하여 의뢰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교육장이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교육장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로,

- 안 제10조 제5항에서 “현저하게“를 “뚜렷하게“로,
- 안 제12조에서 “각 1인“을 “각 1명“으로,
- 안 제13조에서 “운영 및 기타“를 “운영과 그 밖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5. 수정안 주요 내용

가.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 중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범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문장 체계를 정리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 골자

- 안 제1조에서 “제6조 및“을 “제6조와“로, “제4조의3,“을 “제4조의3과“로 하며, “제5조 및“을 “제5조와“로,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4항에 따른“으로, “설치 및 운영“을 “설치와 운영“으로,
- 안 제2조에서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하급행정기관“을 “제34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단서규정에“를 “단서에“로 “금지행위 및“을 “금지행위와“로,
-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위생 및“을 “보건·위생과“로,
- 안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으로,

- 안 제4조제1항에서 “각 1인“을 “각 1명“으로, “13인 이상 17인 이내“를 “13명 이상 17명 이하“로,
-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하고, “임명 또는“을 “임명하거나“로,
- 안 제5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 안 제5조제2항에서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잔임기간이“를 “남은 임기가“로,
- 안 제6조제2항에서 “금지행위 및“을 “금지행위와“로,
- 안 제7조제3항에서 “이익의 취득 또는“을 “이익을 취득하거나“로,
- 안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관련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위촉한“을 “소속직원과 관련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임명하거나 위촉한“으로,
- 안 제8조제1항제3호에서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 안 제8조제2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으로“로,
- 안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장 또는 위원장이 학습 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 보호를 위하여 의뢰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교육장이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교육장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로,
- 안 제10조 제5항에서 “현저하게“를 “뚜렷하게“로,
- 안 제12조에서 “각 1인“을 “각 1명“으로,

○ 안 제13조에서 “운영 및 기타“를 “운영과 그 밖에“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8. 6. 27.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개정조례안중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법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문장 체계를 정리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사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에서 “제6조 및“을 “제6조와“로, “제4조의3,“을 “제4조의3과“로 하며, “제5조 및“을 “제5조와“로,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4항에 따른“으로, “설치 및 운영“을 “설치와 운영“으로,
- 안 제2조에서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하급행정기관“을 “제34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단서규정에“를 “단서에“로 “금지행위 및“을 “금지행위와“로,
-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위생 및“을 “보건·위생과“로,
- 안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으로,

- 안 제4조제1항에서 “각 1인“을 “각 1명“으로, “13인 이상 17인 이내“를 “13명 이상 17명 이하“로,
-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하고, “임명 또는“을 “임명하거나“로,
- 안 제5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 안 제5조제2항에서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잔임기간이“를 “남은 임기가“로,
- 안 제6조제2항에서 “금지행위 및“을 “금지행위와“로,
- 안 제7조제3항에서 “이익의 취득 또는“을 “이익을 취득하거나“로,
- 안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관련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위촉한“을 “소속직원과 관련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임명하거나 위촉한“으로,
- 안 제8조제1항제3호에서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 안 제8조제2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으로“로,
- 안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장 또는 위원장이 학습 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 보호를 위하여 의뢰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교육장이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교육장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로,
- 안 제10조 제5항에서 “현저하게“를 “뚜렷하게“로,
- 안 제12조에서 “각 1인“을 “각 1명“으로,
- 안 제13조에서 “운영 및 기타“를 “운영과 그 밖에“로 수정한다.

3.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운영에.....	제1조(목적)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과 ..., ...제5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설치와 운영에.....
제2조(설치) ...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하급행정기관.....	제2조(설치) ... 제34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조(기능) ① (생략) 1. ...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 금지행위 및 시설의... 2. (생략) 3. 학교의 <u>보건·위생 및 학습환경</u> ... (신 설) 4. (생략)	제3조(기능) ① (생략) 1. ... 제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 금지행위와 시설의... 2. (생략) 3. 학교의 <u>보건·위생과 학습환경</u> ... 4.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 5. (개정안과 같음)
제4조(구성) ① 각 1인을 ...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② (생략) ③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으로 한다.	제4조(구성) ① 각 1명을 ... 위원 13명 이상 17명 이하로... ② (생략) ③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다만, 소속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 전임자의 <u>잔임기간</u> 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이.....	제5조(임기) ① (단서 조항 삭제) ② ... 전임자의 <u>남은 임기</u> 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개정안	수정안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생략) ② 제6조제1항의 <u>금지행위 및 시설</u> 에....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생략) ② 제6조제1항의 <u>금지행위와 시설</u> 에....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을....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생략) 1. (생략) 2. <u>관련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위촉한</u> 경우에... 3. <u>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위원</u> 이... ② <u>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u> 이 <u>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u> 으로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생략) 1. (생략) 2. <u>소속직원과 관련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임명하거나 위촉한</u> 경우에... 3. <u>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u> 이... ② <u>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u> 이 <u>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u> 으로
제10조(회의 등) ① (생략) 1. ~ 2. (생략) 3. <u>교육장 또는 위원장이 학습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 보호를 위하여 의뢰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u> (신 설) ② ~ ④ (생략) ⑤ <u>공정성·객관성 등이 현저하게 결여</u> 되어...	제10조(회의 등) ① (생략) 1. ~ 2. (생략) 3. <u>교육장이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u> 4. <u>교육장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u> ② ~ ④ (생략) ⑤ <u>공정성·객관성 등이 뚜렷하게 결여</u> 되어...
제12조(간사와 서기) 간사와 서기 <u>각 1인</u> 을	제12조(간사와 서기) 간사와 서기 <u>각 1명</u> 을.....
제13조(운영세칙) ... <u>정화위원회 운영 및 기타</u> 필요한 사항은....	제13조(운영세칙) ... <u>정화위원회 운영과 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8년 6월 23일,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8년 6월 25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 장 길)

가.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7.4.12.)으로 “실업계고등학교” 명칭이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되었고,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2007.5.25.)되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조항에 근거법령인 「사립학교법」 인용조항을 추가함(안 제1조)
-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 변경(안 제2조제2호)
- 실업계학교를 전문계학교로 변경(안 제4조제3호)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7.4.12.)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명칭이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4조제3호에서 “실업계학교”를 “전문계학교”로 변경하고,
-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2007.5.25.)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안 제2조제2호에서 인용법령을 변경하는 것이며,
- 또한, 안 제1조에서 목적 조항에 근거법령인 「사립학교법」 인용 조항을 추가하였고,
-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으며, 조례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낫표(「 」)를 표시하였고, 일상 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인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8. 6. 27.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정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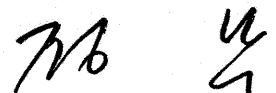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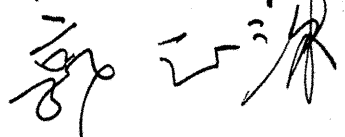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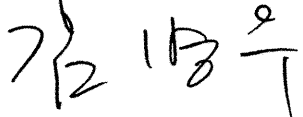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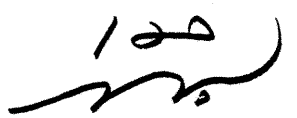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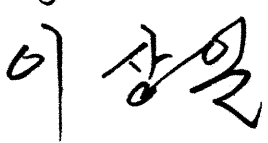
곽정수

김병우

김부응

서수웅

이상일

정무 
곽정수 
김병우 
김부응 
서수웅 
이상일 

(별첨 9)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6. 27. 11:00)

심 사 보 고 서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8년 6월 23일,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7년 6월 25일)
-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7년 6월 26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 장 길)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조 4,886억 3,846만 1천원에서 1,404억 3,907만 3천원이 증액된 1조 6,290억 7,753만 4천원으로 편성
- 세입 예산은 이전수입 1,402억 431만 3천원, 자체수입 2억 3,476만원 계상
-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912억 4,922만 7천원, 평생·직업교육 1,687만 5천원, 교육일반 491억 7,297만 1천원 계상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 예산(안) 총괄규모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4,886억 3,846만 1천원 대비 9.4%인 1,404억 3,907만 3천원이 증액된 1조 6,290억 7,75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음.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1,629,077,534	1,488,638,461	140,439,073	기정예산 대비 9.4% 증

나. 세입예산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가 증가된 1조 6,290억 7,753만 4천원으로 세입 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 이전수입은 1조 5,035억 8,00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인 1,402억 431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92.3%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3,600억 5,55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인 1,202억 1,621만 3천원 증가(전체 세입의 83.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3,600억 65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인 1,201억 6,721만 3천원이 증가된 바, 이는 보통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 1,1532,803만 3천원, 교위능력개발평가선도학교운영 외 16개 사업 특별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 48억 3,918만원이 증가된 것임
- 국고보조금은 초등학교교과용도서 실험학교운영비 1,000만원,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1,600만원, 체험환경 프로그램운영 2,3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00%인 4,900만원이 증가된 것임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429억 5,5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7%인 194억 1,934만 4천원 증가(전체 세입의 8.8%)
- 법정이전수입은 1,376억 9,27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인 175억 1,234만 4천원이 증가된 바, 이는 지방교육세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166억 1,794만 8천원, 시도세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8억 9,439만 6천원이 각각 증가된 것임
- 비법정이전수입은 52억 6,29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8%인 19억 700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충주시 농산촌방과후학교 지원비 외 5건의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17억 1,700만원, 국고지원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1억 9,000만원이 각각 증가된 것임
- 기타이전수입은 5억 6,87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인 5억 6,875만 6천원이 증가된 바, 이는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 3억 6,925만 6천원, 스포츠클럽운영비 1억 9,950만원이 각각 증가된 것임
- 자체수입은 465억 8,80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2억 3,47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2.9%를 차지하고 있음
- 자산수입은 53억 4,38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인 2억 3,476만원 증가(전체 세입의 0.3%)
- 자산매각대는 42억 7,55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인 2억 3,476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토지매각이 기정예산 대비 2억 1,998만 3천원, 건물매각이 기정예산 대비 399만 5천원, 기타유형자산매각이 기정예산 대비 1,078만 2천원으로 각각 증가된 것임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장	관항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비율	
	자산수입	5,343,820	0.3	5,109,060	0.3	234,760	4.6	
	자산임대수입	1,068,318	0.1	1,068,318	0.1	0	0.0	
	임대료수입	1,068,318	0.1	1,068,318	0.1	0	0.0	
	자산매각대	4,275,502	0.3	4,040,742	0.3	234,760	5.8	
	토지매각	3,947,007	0.3	3,727,024	0.3	219,983	5.9	
	건물매각	255,657	0.0	251,662	0.0	3,995	1.6	
	기타유형재산매각	72,838	0.0	62,056	0.0	10,782	17.4	
	이자수입	6,300,000	0.4	6,300,000	0.4	0	0.0	
	이자수입	6,300,000	0.4	6,300,000	0.4	0	0.0	
	이자수입	6,300,000	0.4	6,300,000	0.4	0	0.0	
	잡수입	1,504,358	0.1	1,504,358	0.1	0	0.0	
	제재금수입	145,947	0.0	145,947	0.0	0	0.0	
	변상금	6,892	0.0	6,892	0.0	0	0.0	
	위약금	139,055	0.0	139,055	0.0	0	0.0	
	잡수입	960,908	0.1	960,908	0.1	0	0.0	
	기타잡수입	960,908	0.1	960,908	0.1	0	0.0	
	과년도수입	397,503	0.0	397,503	0.0	0	0.0	
	기타잡수입	397,503	0.0	397,503	0.0	0	0.0	
	차입	7,441,876	0.5	7,441,876	0.5	0	0.0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7,441,876	0.5	7,441,876	0.5	0	0.0	
	지방교육채	7,441,876	0.5	7,441,876	0.5	0	0.0	
	금융기관차입금	7,441,876	0.5	7,441,876	0.5	0	0.0	
	기타	71,467,543	4.4	71,467,543	4.8	0	0.0	
	전년도이월금	71,467,543	4.4	71,467,543	4.8	0	0.0	
	순세계잉여금	71,119,588	4.4	71,119,588	4.8	0	0.0	
	순세계잉여금	71,119,588	4.4	71,119,588	4.8	0	0.0	
	보조금사용잔액	347,955	0.0	347,955	0.0	0	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15,057	0.0	315,057	0.0	0	0.0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32,898	0.0	32,898	0.0	0	0.0	
	합 계	1,629,077,534	100	1,488,638,461	100	140,439,073	9.4	

다. 세출예산

- 2008년도 제2 추정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4%가 증가된 1조 6,290억 7,753만 4천원으로, 이를 부문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6.5%인 912억 4,922만 7천원이 증가된 1조 4,932억 1,717만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94.3%를 차지하고 있음
 -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1,687만 5천원이 증가된 27억 2,637만 1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0.2%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58.6%인 491억 7,297만 1천원이 증가된 1,331억 3,399만 3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 정책사업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55억 2,815만 7천원이 증가된 9,311억 5,666만 4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57.2%를 차지하고 있음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30.1%인 241억 1,313만 3천원이 증가된 1,041억 8,813만 2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6.4%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격차해소는 기정예산 대비 104.6%인 425억 4,503만 1천원이 증가된 832억 2,840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5.1%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16.6%인 34억 5,355만 6천원이 증가된 242억 6,479만 5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14.6%인 156억 935만원이 증가된 1,225억 7,380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 평생 직업교육 부문의
 - 직업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2.6%인 1,687만 5천원이 증가된 6억 6,072만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0.0%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일반 부문의
 -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7.8%인 14억 8,563만 5천원이 증가된 204억 3,151만 4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 기관운영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8.3%인 19억 1,632만원이 증가된 249억 3,148만 9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135.5%인 457억 7,101만 6천원이 증가된 795억 4,023만 7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4.9%를 차지하고 있음
- 성질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 인건비가 7,929억 9,960만 5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48.7%를 차지하고 있음
(정규직보수, 기타직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실제 인건비 편성액】

(단위 : 천원)

정규직인건비	비정규직인건비	사립교원인건비	합 계	비 고
884,416,692	29,174,750	94,765,686	1,008,357,128	61.9%

- 물건비는 564억 5,030만 9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3.5%를 차지하고 있음(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교육위원회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 이전지출은 1,104억 5,632만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6.8%를 차지하고 있음(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해외이전, 출연금)
- 자산취득은 2,141억 7,915만 9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3.1%를 차지하고 있음(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기금적립, 투자교육지원사업비)
- 상환지출은 68억 4,355만 1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0.4%를 차지하고 있음(차입금상환, 차입금이자, 민자사업지급금)
- 전출금등은 3,686억 835만 3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2.6%를 차지하고 있음(일반회계전출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
- 예비비및기타는 795억 4,023만 7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4.9%를 차지하고 있음(예비비, 반환금 및 기타)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가정예산액		비교증감	
분야	부분	정책사업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액	증율 (%)
교육			1,629,077,534	100.0	1,488,638,461	100.0	140,439,073	9.4
	유아및초중등교육		1,493,217,170	91.7	1,404,327,383	94.2	91,249,227	6.5
		인적자원운용	931,156,664	57.2	925,628,507	62.2	5,528,157	0.6
		교수-학습활동지원	104,188,132	6.4	80,074,999	5.4	24,113,133	30.1
		교육격차해소	83,228,406	5.1	40,683,375	2.7	42,545,031	104.6
		보건급식체육활동	24,264,795	1.5	20,811,239	1.4	3,453,556	16.6
		학교재정지원관리	227,805,367	14.0	227,805,367	15.3	0	0.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22,573,806	7.5	106,964,456	7.2	15,609,350	14.6
	평생-직업교육		2,726,371	0.2	2,709,496	0.2	16,875	0.6
		평생교육	2,065,651	0.1	2,065,651	0.1	0	0.0
		직업교육	660,720	0.0	643,845	0.0	16,875	2.6
	교육일반		133,133,993	8.2	83,961,022	5.6	49,172,971	58.6
		교육행정일반	20,431,514	1.3	18,945,879	1.3	1,485,635	7.8
		기관운영관리	24,931,489	1.5	23,015,169	1.5	1,916,320	8.3
		지방채상환및보수료	8,230,753	0.5	8,230,753	0.6	0	0.0
		예비및타	79,540,237	4.9	33,769,221	2.3	45,771,016	135.5
합 계			1,629,077,534	100.0	1,488,638,461	100.0	140,439,073	9.4

라. 삭감 내역

- 세입 삭감액 : 해당없음
- 세출 삭감액 : 8,659,769천원
- 삭감내역 및 사유
 - 세출
 - 예산안 108쪽 제2외국어교사연수 연수경비 2,000만원 삭감, 일본 항공료 700만원 삭감
 - 예산안 129쪽 중·고전국연합학력평가 중학교학업성취도평가 발송상자비 115만 2천원 삭감, 고등학교학업성취도평가 듣기평가CD복사비 18만 4천원 삭감, 발송상자비 110만 4천원 삭감
 - 예산안 137쪽 전문계특성화고운영지원 한국형마이스터고운영 8억 6,427만 6천원 삭감
 - 예산안 150쪽 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 인도네시아교육정보화지연초청연수 기념품구입비 100만원 삭감, 문화체험경비 200만원 삭감
 - 예산안 158쪽 학교운동부훈련시설확충 덕성초등학교 감리비 750만원 삭감, 충주교현초등학교 감리비 720만원 삭감, 단양초등학교 감리비 720만원 삭감
 - 예산안 190쪽 192쪽 기숙형고등학교육성 77억 4,115만 3천원 삭감

마. 종합의견

-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2007년도 내국세 순세계잉여금 선 정산분으로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용도가 지정된 교원능력개발평가선도학교 운영 외 19건의 특별교부금,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실험학교운영 외 2건의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전입금 2007년도 결산 정산분,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기초자치단체전입금과 국고지원전입금, 자체수입 변동분 등을 계상한 사항으로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편성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세출예산은 재정여건상 금년도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공무원 증원 인건비 부족분,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격차해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일반사업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자치단체전입금 등을 지원받아 투자가용 재원을 확보하여 영어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교육 인프라구축 사업과 다양한 고교 체제 도입을 통한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공립고 및 마이스터고 등 국정과제 추진사업과 학교급식 직영화, 냉방시설 개선 등 교육감 공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현안사업비 등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교부금 및 전입금 등을 해당사업에 적정하게 계상하였음
- 인건비, 경상비, 예비비 및 기타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교원능력 제고 등의 학력신장과 아울러 교육복지 향상 및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원사업 추진 : 18,470천원
 - 교육복지 투자우선학교지원(청주) : 417,800천원
 - 자체교육복지 투자시범사업 운영(충주) : 17,000천원
 - 특수교육전일제 강사 인건비(17명) : 193,171천원
 - 교원능력개발 선도학교 운영(33교) : 287,000천원
 - 사립유치원학급담임수당(202명) : 66,600천원
 - 기숙형영재교육센터(과학고 리모델링외) : 335,790천원
 - 방과 후 학교 운영(지역별) : 1,519,000천원
 - 전국 방과 후 학교 국제화 사업 주관 : 250,000천원
 - 초등기초학력진단평가 : 147,778천원
 - 제2외국어교사 현지 어학연수(30명) : 90,800천원

-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교재개발(44교) : 103,000천원
- 중등인정도서 및 교과 승인 : 13,500천원
- 개방형자율학교 시범운영 : 100,000천원
- 교원대 영어교사 심화연수(합숙 18명, 사이버 18명) : 357,040천원
- 영어전용실 설치(146교) : 7,250,000천원
-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운영(18명) : 715,510천원
- 중고등학교 CCTV설치(50교) : 100,000천원
-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 322,468천원
- 학력신장지원 교원국외연수(15명) : 30,000천원
-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운영 : 109,800천원
- 과학실험실 현대화(40교) : 400,000천원
- 한국형마이스터고 운영(1교) : 6,841,155천원
- 사이버가정학습운영 : 685,000천원
- 개발도상국정보화지원 : 73,855천원
-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 초청연수(20명) : 35,150천원
- 순회코치인건비(13명) 107,900천원
- 학교잔디운동장 조성(6교) : 3,018,000천원
- 학교체육 활성화 : 1,040,550천원
- 조리실 냉방기 확충(134교) : 305,000천원
- 급식 직영전환 시설(3교) : 1,937,300천원
- 학교급식운영(염도계 보급 385교) : 77,000천원
-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 장비구입 등) : 757,256천원
- 전국체육대회(훈련비, 장비구입, 입상교 지원 등) : 377,000천원
- 일반직급여 : 4,731,281천원
- 충북교육정책자문단 운영 : 47,240천원
- 기숙형공립고 육성(9교) : 42,091,911천원
- 공유재산 매입 : 1,333,640천원
- 다목적교실 : 5,158,000천원

-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 4,592,613천원
(대수선 6교, 냉난방 개선 30교, 화장실증개축 1교)
-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 4,154,690천원
(대수선 2교, 냉난방 개선 28교)
-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 1,704,047천원
(대수선 9교, 냉난방 개선 6교, 외부환경개선 1교)
- 본청직속기관시설 : 1,916,320천원을 계상한 바,
(외국어교육원, 학생교육문화원)

○ 금번 추경 예산은 교육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외국어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을 통해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됨

6. 수정안 주요 내용

가. 제안일자 : 2008. 6. 27.

나. 제안자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다. 수정이유 : 삭감내역 및 사유 참조

- 사업의 타당성 및 형평성을 위한 예산 편성 물량 조정
- 기숙형공립고 및 한국형마이스터고 사업에서 일부 학교 기숙사 정원과 예산편성 단가 조정, 편의시설 일부 제외 등

라. 수정 주요 골자

- 세출
 - 세출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교원역량강화

- 예산안 108쪽 제2외국어교사연수 연수경비 2,000만원 삭감, 일본 항공료 700만원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학력평가

- 예산안 129쪽 중·고전국연합학력평가 중학교학업성취도평가 발송상자비 115만 2천원 삭감, 고등학교학업성취도평가 듣기평가CD복사비 18만 4천원 삭감, 발송상자비 110만 4천원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전문계고교육

- 예산안 137쪽 전문계특성화고운영지원 한국형마이스터고운영 8억 6,427만 6천원 삭감

(부문)교육일반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 예산안 150쪽 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 인도네시아교육정보화지연초청연수 기념품구입비 100만원 삭감, 문화체험경비 200만원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체육교육내실화

- 예산안 158쪽 학교운동부훈련시설확충 덕성초등학교 감리비 750만원 삭감, 충주교현초등학교 감리비 720만원 삭감, 단양초등학교 감리비 720만원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교육격차해소 (단위사업)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 예산안 190쪽 192쪽 기숙형고등학교육성 77억 4,115만 3천원 삭감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8. 6. 27.

제안자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세출
 - 예산안 108쪽 제2외국어교사연수 연수경비 2,000만원 삭감, 일본 항공료 700만원 삭감
 - 예산안 129쪽 중·고전국연합학력평가 중학교학업성취도평가 발송상자비 115만 2천원 삭감, 고등학교학업성취도평가 듣기평가CD복사비 18만 4천원 삭감, 발송상자비 110만 4천원 삭감
 - 예산안 137쪽 전문계특성화고운영지원 한국형마이스터고운영 8억 6,427만 6천원 삭감
 - 예산안 150쪽 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 인도네시아교육정보화지연초청연수 기념품구입비 100만원 삭감, 문화체험경비 200만원 삭감
 - 예산안 158쪽 학교운동부훈련시설확충 덕성초등학교 감리비 750만원 삭감, 충주교현초등학교 감리비 720만원 삭감, 단양초등학교 감리비 720만원 삭감
 - 예산안 190쪽 192쪽 기숙형고등학교육성 77억 4,115만 3천원 삭감

2. 수정사항(주요골자)

- 세출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교원역량강화

- 예산안 108쪽 제2외국어교사연수 연수경비 2,000만원 삭감, 일본 항공료 700만원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학력평가

- 예산안 129쪽 중·고전국연합학력평가 중학교학업성취도평가 발송상자비 115만 2천원 삭감, 고등학교학업성취도평가 듣기평가CD복사비 18만 4천원 삭감, 발송상자비 110만 4천원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전문계고교육

- 예산안 137쪽 전문계특성화고운영지원 한국형마이스터고운영 8억 6,427만 6천원 삭감

(부문)교육일반 (정책사업)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 예산안 150쪽 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 인도네시아교육정보화지언초청연수 기념품구입비 100만원 삭감, 문화체험경비 200만원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체육교육내실화

- 예산안 158쪽 학교운동부훈련시설확충 덕성초등학교 감리비 750만원 삭감, 충주교현초등학교 감리비 720만원 삭감, 단양초등학교 감리비 720만원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교육격차해소 (단위사업)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 예산안 190쪽 192쪽 기숙형고등학교육성 77억 4,115만 3천원 삭감

3. 수정안 대비표 : 따로 붙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8년 6월 23일,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7년 6월 25일)
-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7년 6월 26일)

2.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 장 길)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세입결산액 : 1,445,387,934,200원,
 - 세출결산액 : 1,300,655,905,420원,
 - 세계잉여금 : 144,732,028,780원으로,
- 세계잉여금 중

- 다음연도 이월액 61,525,270,000원,
- 국고보조금 잔액 347,952,240원,
- 지방채상환 11,739,214,810원
- 순세계 잉여금은 71,119,591,730원임.

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 붙임 참고

□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세입·세출 결산 개요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2007년	1,427,835,516	1,457,091,108	1,445,387,934	1,300,655,906
2006년	1,260,990,813	1,372,059,446	1,373,219,505	1,253,992,124
증감(%)	166,844,703(13.2%)	85,031,662(6.2%)	72,168,429(5.2%)	46,663,782(3.7%)

연도	잉여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보조금 잔액	순세계 잉여금	지방채 상환
2007년	144,732,028	55,988,404	5,536,866	347,952	71,119,591	11,739,215
2006년	119,227,381	9,701,500	19,554,090	166,694	80,901,884	8,903,212
증감(%)	25,504,647 (21.4%)	46,286,904 (477.1%)	△14,017,224 (△71.7%)	181,258 (108.7%)	△9,782,293 (△12.1%)	2,836,003 (31.9%)

- 2007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조 4,570억 9,110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6.2%가 증가되었으며,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2%에 해당하는 1조 4,453억 8,793만 4천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3%에 해당되는 1조 3,006억 5,590만 6천원이고
 - 세계잉여금은 1,447억 3,202만 8천원이 발생하였음.

- 세계잉여금 1,447억 3,202만 8천원 중 559억 8,840만 4천원을 명시이월하고, 55억 3,686만 6천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잔액 3억 4,795만 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711억 1,959만 1천원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117억 3,921만 5천원은 지방채상환 재원으로 사용하였음.

나. 세입결산

○ 총괄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A)	이체등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징수 결정액 (D)	수납액 (E)	불 납 결손액 (F)	미수납액 (G=D-E-F)	수납율(%)	
								E/C	E/D
2007년	1,427,835,516	29,255,592	1,457,091,108	1,445,800,181	1,445,387,934	11,487	400,760	99.2	99.9
2006년	1,260,990,813	111,068,633	1,372,059,446	1,373,978,572	1,373,219,505	12,645	746,422	100.1	99.9
증감 (%)	166,844,703 (13.2%)	△81,813,041 (△73.7%)	85,031,662 (6.2%)	71,821,609 (5.2%)	72,168,429 (5.3%)	△1,158 (△9.2%)	△345,662 (△46.3%)		

- 2007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4,453억 8,793만 4천원으로
 - 세입징수결정액 1조 4,458억 18만 1천원 대비 99.9%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1조 4,570억 9,110만 8천원 대비 99.2%를 수납하였음.
 - 징수결정액 중 1,148만 7천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0.1%인 4억 76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세입 관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관 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불납 결손액④	미수납액 ⑤=②-③-④	수납율(% ③/①)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22,516,844	1,122,516,844	1,122,516,844	0	0	100.0
2. 국고지원금	14,245,163	14,245,163	14,245,163	0	0	100.0
국가부담수입 소계	1,136,762,007	1,136,762,007	1,136,762,007	0	0	100.0
3. 법정전입금	143,984,113	131,202,113	131,202,113	0	0	91.1
4. 비법정전입금	6,840,425	6,835,876	6,835,876	0	0	99.9
일반회계부담수입 소계	150,824,538	138,037,989	138,037,989	0	0	91.5
5. 재산수입	3,898,557	3,909,323	3,886,818	0	22,504	99.7
6. 입학금및수업료	29,979,101	31,096,698	31,083,558	9,883	3,257	103.7
7. 사용료및수수료	1,767,019	1,919,996	1,919,996	0	0	108.7
8. 잡수입	9,548,921	9,798,807	9,422,202	1,605	374,998	98.7
9. 이월금	110,324,170	110,324,170	110,324,170	0	0	100.0
10. 지방교육채	11,876,096	11,738,652	11,738,652	0	0	98.8
11. 주민(기관)부담금	402,419	400,940	400,940	0	0	99.6
12. 기타지원금	1,708,280	1,811,603	1,811,603	0	0	106.0
자체수입기타 소계	169,504,563	171,000,186	170,587,939	11,488	400,759	100.6
합 계	1,457,091,108	1,445,800,182	1,445,387,935	11,488	400,759	99.2

- 세입 관별 결산액 현황을 보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1,225억 1,684만 4천원, 국고지원금 142억 4,516만 3천원 등 국가부담수입이 1조 1,367억 6,200만 7천원
- 법정전입금 1,312억 211만 3천원, 비법정전입금 68억 3,587만 6천원 등 일반회계부담금이 1,380억 3,798만 9천원
- 재산수입 38억 8,681만 8천원, 입학금 및 수업료 310억 8,355만 8천원, 사용료 및 수수료 19억 1,999만 6천원, 잡수입 94억 2,220만 2천원, 이월금 1,103억 2,417만원, 지방교육채 117억 3,865만 2천원, 주민(기관등)부담금 4억 94만원, 기타지원금 18억 1,160만 3천원 등 자체수입 기타가 1,705억 8,793만 9천원임.

○ 세입재원별 결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2006년도	증감액	증감율	비고
국가부담 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22,516,844	1,057,509,920	65,006,924	6.1%	77.7%
	국고지원금	14,245,163	9,504,922	4,740,241	49.9%	0.9%
소계		1,136,762,007	1,067,014,842	69,747,165	6.5%	78.6%
일반회계 부담금	법정전입금	131,202,113	111,076,107	20,126,006	18.1%	9.1%
	비법정전입금	6,835,876	721,730	6,114,146	847.2%	0.5%
소계		138,037,989	111,797,837	26,240,152	23.4%	9.6%
자체수입	재산수입	3,886,818	4,879,518	△992,700	△20.3%	0.3%
	입학금및수업료	31,083,558	28,376,005	2,707,553	9.5%	21.5%
	사용료및수수료	1,919,996	1,814,996	105,000	5.8%	0.1%
	잡수입	9,422,202	6,775,079	2,647,123	39.1%	0.7%
	이월금	110,324,170	141,900,048	△31,575,878	△22.2%	7.6%
	지방교육채	11,738,652	8,902,785	2,835,867	31.9%	0.8%
	주민(기관등)부담금	400,940	483,088	△82,148	17.0%	0.0%
	기타지원금	1,811,603	1,275,307	536,296	42.1%	0.1%
소계		170,587,939	194,406,826	△23,818,887	△12.3%	11.8%
합계		1,445,387,935	1,373,219,505	72,168,430	5.3%	100%

- 세입결산액 1조 4,454억 8,793만 5천원의 재원구성별 내역을 보면 의존수입이 전년도 85.8%보다 2.4%가 증가한 88.2%, 자체수입이 전년도 14.2%보다 2.4% 감소한 11.8%를 차지함
- 의존수입 중 전체 세입결산액의 78.6%를 차지하는 국가부담수입은 1조 1,367억 6,200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1조 1,367억 6,200만 7천원 대비 100%를 수납하였으며,
- 전체 세입결산액의 9.6%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부담금은 1,380억 3,798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1,508억 2,453만 8천원 대비 91.5%를 수납하였으며,
- 자체수입은 1,705억 8,793만 9천원이며, 예산현액 1,695억 456만 3천원 대비 100.6%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 결산액의 11.8%를 차지하고 있음.

○ 불납결손 처분 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불 납 결손액	비 고
관	항	목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업료수입	9,882	자퇴 등 제적학생 수업료
잡 수 입	과년도수입	수업료수입	1,605	자퇴학생 수업료
합 계			11,487	

- 2007년도 불납결손 처분액은 전년도 1,264만 5천원 대비 9.2%인 115만 8천원이 감소된 1,148만 7천원으로 2007년도 자퇴 등 제적학생 수업료 수입 988만 2천원과 2006년도에 미수납되어 2007년도 과년도수입으로 계상된 수업료 160만 5천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음.

○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미수납액	비 고
관	항	목		
재산수입	재산임대수입	대 가 료	22,505	채무자 재력 부족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업료수입	3,257	채무자 재력 부족
잡 수 입	잡 수 입	잡 수 입	93,119	채무자 거소 불명
잡 수 입	과년도수입	기타수입	281,879	채무자 재력 부족 및 기타
합 계			400,760	

- 2007년도 미수납액은 전년도 7억 4,642만 2천원 대비 46.3%인 3억 4,566만 2천원이 감소된 4억 76만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 충주, 괴산증평, 단양 지역의 폐교임대료 2,250만 5천원, 수업료 325만 7천원, 교원명예퇴직수당환수금 9,311만 9천원, 기초자치단체비법정전입금으로 옥천군의 삼양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지원금 2억 8,000만원, 소송비용 187만 9천원이 미수납됨

다. 세출결산

○ 총괄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D)	다음연도이월액(E)			불용액 (F=C-D-E)	
					명시	사고	계	불용액	F/C
2007년	1,427,835,516	29,255,592	1,457,091,108	1,300,655,905	55,988,404	5,536,866	61,525,270	94,909,933	6.5
2006년	1,260,990,813	111,068,633	1,372,059,446	1,253,992,124	9,701,500	19,554,090	29,255,590	88,811,732	6.5
증감 (%)	166,844,703 (13.2%)	△81,813,041 (△73.7%)	85,031,662 (6.2%)	46,663,781 (3.7%)	46,286,904 (477.1%)	△14,017,224 (△71.7%)	32,269,680 (110.3%)	6,098,201 (6.9%)	

- 2007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조 4,278억 3,551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292억 5,559만 2천원을 더한 예산현액이 1조 4,570억 9,110만 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6.2%가 증가하였으며,
- 당해연도 지출액은 전년도 보다 3.7%가 증가한 1조 3,006억 5,590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3%를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625억 2,527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559억 8,840만 4천원, 사고이월액이 55억 3,686만 6천원이며,
-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949억 993만 3천원이 발생함.

○ 세출 관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관 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③	불용액 ④=①-②-③	불용율(%) ④/①
1. 유치원	19,963,359	19,452,806	0	510,553	2.6
2. 초등학교	160,569,325	147,303,474	9,913,406	3,352,445	2.1
3. 중학교	129,007,829	110,122,766	16,944,586	1,940,477	1.5
4. 고등학교	134,845,898	117,592,716	13,871,593	3,381,589	2.5
5. 특수학교	23,814,485	22,166,687	1,120,152	527,646	2.2

관 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③	불용액 ④=①-②-③	불용율(%) ④/①
6. 기타학교	482,555	482,555	0	0	0
7. 평생교육	5,180,226	3,360,062	1,712,166	107,998	2.1
8. 급여관리	833,285,188	815,078,734	0	18,206,454	2.2
9. 교육위원회	570,894	498,407	0	72,487	12.7
10. 선거관리	6,762,000	4,312,518	0	2,449,482	36.2
11. 본청	30,987,857	27,873,804	2,128,950	985,103	3.2
12. 지역교육청	16,873,306	9,995,953	6,352,056	525,297	3.1
13. 교육지원기관	32,362,279	22,248,730	9,482,361	631,188	2.0
14. 지방채상환	0	0	0	0	0.0
15. 제지출금	166,694	166,693	0	1	0.0
16. 예비비	62,219,213	0	0	62,219,213	100.0
합 계	1,457,091,108	1,300,655,905	61,525,270	94,909,933	6.5

-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 지출액 4,171억 2,100만 4천원
- 평생교육분야 지출액 33억 6,006만 2천원
- 급여·복지후생비 지출액 8,150억 7,873만 4천원
- 교육위원회 지출액 4억 9,840만 7천원
- 선거관리 지출액 43억 1,251만 8천원
- 교육청 및 지원기관 지출액 601억 1,848만 7천원
- 그리고, 제지출금 지출액 1억 6,669만 3천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비 고
명시이월	57	57,994,972	1,992,120	56,002,852	55,988,404	14,448	
사고이월	10	17,220,185	10,815,535	6,404,650	5,536,866	867,784	
합 계	52	72,215,157	12,807,655	62,407,502	61,525,270	882,232	

- 다음연도 이월액은 615억 2,527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57건에 559억 8,840만 4천원, 사고이월이 10건에 55억 3,686만 6천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규모 면에서 명시이월은 477.1%가 증가소되고, 사고이월은 71.7%가 감소됨
- 명시이월액 내역은
 - 초등학교가 2009. 신설교(양청초) 설계비 외 12건에 69억 1,774만 7천원,
 - 중학교가 서청중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외 6건에 169억 4,458만 6천원,
 - 고등학교가 봉명고 기숙사 증축 외 22건 136억 3,909만 3천원,
 - 특수학교가 충주성모학교 교실 증축 외 4건 10억 9,699만 5천원,
 - 본청이 BTL 사업평가 용역비 9,400만원,
 - 지역교육청이 청주교육청 청사이전 외 3건 61억 145만 6천원,
 - 교육지원기관이 단재교육연수원 리모델링 외 2건 94억 8,236만 1천원,
 - 평생교육이 교육문화회관 내부시설비 17억 1,216만 6천원임
- 사고이월액 내역은
 - 초등학교가 서청초 토지매입비 외 5건 29억 9,565만 9천원,
 - 고등학교가 제천여고 화장실 보수 및 방수공사 2억 3,250만원,
 - 특수학교가 제천청암학교 창고증축 2,315만 7천원,
 - 본청이 행재정통합시스템 서버 및 통신장비 구입 20억 3,495만원,
 - 지역교육청이 청주교육청 청사이전 설계용역 2억 5,060만원임

○ 불용액 원인별 내역

(단위 : 천원)

성 질 별	예산현액(A)	불용액(B)	불용액 원인별 내역						불용율(B/A)
			계획변경 및 취소	정원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예산절감	지 급 사 유 미발생	집행잔액	기타	
1. 인건비	729,549,242	17,758,691	0	17,556,998	0	16,452	185,246	0	243

성 질 별	예산현액(A)	불용액(B)	불용액 원인별 내역						불용율 (B/A)
			계획변경 및 취소	정원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예산 절감	지 급 사 유 미발생	집행 잔액	기타	
2. 물건비	45,117,366	1,948,340	50,567	159,437	57,272	57,502	1,623,562	0	4.32
3. 경상이전	439,263,525	5,672,042	13,500	0	13,670	12,256	5,632,616	0	1.29
4. 자본지출경비	168,582,173	4,407,785	217,811	0	6,249	0	4,183,725	0	2.61
5. 융자금및출자금	0	0	0	0	0	0	0	0	0.00
6. 보전지출	2,665,970	454,380	0	0	0	0	454,380	0	17.04
7.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9,526,925	2,449,481	0	0	0	0	2,449,481	0	25.71
8. 예비비및기타	62,385,907	62,219,214	0	0	0	0	1	62,219,213	99.73
합 계	1,457,091,108	94,909,933	281,878	177,16430	77,191	86,210	14,529,011	62,219,213	6.51

- 불용액 발생 총 규모는 949억 993만 3천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6.5%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전년도 불용액 888억 1,173만 2천원 대비 6.9%인 60억 9,820만 1천원이 증가됨

- 불용액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 계획변경 및 취소가 2억 8,187만 8천원(0.3%),
-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이 177억 1,643만원(18.7%),
- 예산절감이 7,719만 1천원(0.1%),
- 지급사유 미발생이 8,621만원(0.1%),
- 집행잔액이 145억 2,901만 2천원(15.3%),
- 기타가 622억 1,921만 3천원(65.5%) 임.

○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이체 : 해당없음

- 예산의 전용

(단위 : 천원)

건수	전용금액		사유
	감액	증액	
6	2,209,810	2,209,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폐합학교 여건개선 사업에 따른 다목적실을 다목적교실로 신축에 따른 전용 : 232,960천원 ○ 기간제교사 수요 증가로 인한 전용 : 1,835,000천원 ○ 일반직 대체인력 수요 증가로 인한 전용 : 129,800천원 ○ 민간기업파견 연수경비 해당 기업체 지급계획 변경에 따른 전용 : 11,000천원 ○ 제28회 충북학생관악제 사립학교 3개교 출연금 지원에 따른 전용 1,050천원

· 예산의 이용·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나, 예산 전용은 통폐합학교 여건개선 사업에 따른 다목적실을 다목적교실로 신축에 따른 전용 232,960천원, 기간제교사 수요 증가로 인한 전용 1,835,000천원, 일반직 대체인력 수요 증가로 인한 전용 129,800천원, 민간기업파견 연수경비 해당 기업체 지급계획 변경에 따른 전용 11,000천원, 제28회 충북학생관악제 사립학교 3개교 출연금 지원에 따른 전용 1,050천원임

○ 채무부담행위

(단위 : 천원)

사업명	채무부담 행위승인액	채무부담 행위액	채무부담 행위사유	상환조건	비고
산남외 2교 교사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29,348,000	60,123,853	교육시설의 민간투자사업추진(BIL방식)	20년간 원리금 상환 (5년비국채금리기산율)	2005년
성화초 외 2교 교사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31,591,000	55,679,000	"	"	2005년
서현초 외 6교 신·증·개축	29,204,610	73,049,944	"	"	2006년
청주성신학교외 16교 신·증·개축	28,348,132	63,113,187	"	"	2006년

사업명	채무부담 행위승인액	채무부담 행위액	채무부담 행위사유	상환조건	비고
서청초 외 11교 신· 증·개축	30,745,180	0	"	"	2006 년
강서중 외 11교 신· 증·개축	44,745,267	0	"	"	2006 년
합 계	193,982,189	251,965,984			

- 교육시설의 민간투자사업추진(BTL 방식)을 위한 채무부담행위승인액은 2005년도에 산남고 외 2교 교사신축 및 시설유지관리로 293억 4,800만원, 성화초 외 2교 교사신축 및 시설유지관리로 315억 9,100만원 등 609억 3,900만원에서 2006년도에 서현초 외 6교 신·증·개축비로 292억 461만원, 청주성신학교외 16교 신·증·개축비로 283억 4,813만 2천원, 서청초 외 11교 신·증·개축비로 307억 4,518만원, 강서중 외 11교 신·증·개축비로 447억 4,526만 7천원 등 1,330억 4,318만 9천원이 증가되어 총 1,939억 8,218만 9천원임
- 채무부담 행위액은 2,519억 6,598만 4천원으로 이는 산남고 외 2교 교사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 외 3개의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협약 체결에 따른 20년간 총 상환 예정액임

○ 채권 및 채무관리 현황

- 채권현재액

(단위 : 천원)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고
		계	증(발생액)	감(소멸액)		
미수입임대료 (재산임대료)	0	0	25,389	25,389	0	
미수수익자 부담수입(수업료)	0	0	1,605	1,605	0	
미수자치단체 이전수익	0	280,000	717,550	437,550	280,000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증(발생액)	감(소멸액)		
미수경상이전 수입(소송비용외)	1,880	93,119	93,119	0	94,999	
보증금 (전세권)	262,000	50,000	312,000	262,000	312,000	
대여금 (대여학자금)	41,974,507	2,340,486	8,197,740	5,857,254	44,314,993	
합 계	42,238,387	2,763,605	9,347,403	6,583,798	45,001,992	

- 채권은 대부분이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007년도에 93억 4,740만 3천원이 발생하고, 65억 8,379만 8천원이 소멸되어 전년도말 현재액 422억 3,838만 7천원 대비 6.5%인 27억 6,360만 5천원이 증가하여 총 450억 199만 2천원임

- 채무현재액

(단위 : 천원)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차 입 금	0	0	11,738,652	11,738,652	0	
채무부담행위	0	249,728,976	251,965,984	2,237,008	249,729,976	
계	0	249,728,976	263,704,636	13,975,660	249,729,976	

- 채무현재액은 교원명예퇴직수당 사업비 부족에 따른 차입금 117억 3,865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잉여금에서 전액을 상환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교육 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협약 체결에 따른 20년간 총 상환 예정액 2,519억 6,598만 4천원이 발생하여 그 중 22억 3,700만 8천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의 채무액은 2,497억 2,997만 6천원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

- 공유재산현황

(단위 : 천원)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증	감		
행정재산	2,765,363,190	174,902,375	209,516,593	34,614,218	2,940,265,565	98.7%
보존재산	92,771	330,875	330,875	0	423,646	0.0%
잡종재산	35,980,261	1,670,815	7,177,321	5,506,506	37,651,076	1.3%
합 계	2,801,436,221	176,904,065	217,024,789	40,120,724	2,978,340,287	

-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2조 8,014억 3,622만 1천원 대비 6.3%인 1,769억 406만 5천원이 증가한 2조 9,783억 4,028만 7천원으로 증액의 대부분이 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신규 취득과 증개축에서 기인된 것으로,
- 이를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2조 9,402억 6,556만 5천원으로 98.7%를 차지하고, 잡종재산이 376억 5,107만 6천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존 재산은 4억 2,364만 6천원으로 0.0%를 차지하고 있음.

- 물품관리 현황

(단위 :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증	감		
115,685,495	10,659,410	15,728,826	5,069,416	126,344,905	

- 물품관리는 전년도말 현재액 1,156억 8,549만 5천원 대비 9.2%인 106억 5,941만원이 증가한 1,263억 4,490만 5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운반·건설기계·차량, 산업기계, 기타잡기기의 신규구입 및 처분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음.

□ 종합의견

- 세입·세출결산 현황, 이월액 현황, 불용액 현황,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 채무부담행위, 채권 및 채무관리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 세입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99.2%의 징수율과 전년도 대비 미수납액이 46.3%가 감소되고, 불납결손액도 전년도 대비 9.2% 감소되는 등 세입에 있어 징수 및 수납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 세입결산액 재원구성별 내역을 보면 의존수입이 1조 2,747억 9,999만 6천원으로 전체 세입의 88.2%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1,705억 8,793만 9천원으로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보다 2.4%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원액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교육경비 확충 방안 강구와 자체 수입재원 발굴 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세입예산 편성 시 모든 세입을 예상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추정치이므로 반드시 정확할 수는 없으나, 그 추정액은 세출예산 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산액과의 오차를 최소화 하는 것이 원칙인 바, 일부 세입 과목의 경우에는 과도한 편차를 보여 향후 개선해야 할 점으로 판단됨
- 세출결산에 있어 당해연도 지출액은 전년도 보다 3.7%가 증가한 1조 3,006억 5,590만 5천원으로 2006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91.4%를 집행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89.3%를 집행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요구되며,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불용액

은 949억 993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 9,820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6.5%로써 전년도와 동일하나, 불용액 중 집행잔액이 145억 2,901만 2천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15.3%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별 예산편성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적절한 규모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부 사업의 경우 금액은 적으나 초등교육과 기타경상이전 외 9건이 전액 불용되고,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불용 사업이 28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용이 예견될 경우 추경 시 조정 등을 통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625억 2,527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57건에 559억 8,840만 4천원, 사고이월액이 10건 55억 3,686만 6천원으로, 사고이월 사업비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할 수 없을 때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서 이월된 금액은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연초부터 집행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년도로 또 다시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아울러,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 추진 상 예측치 못한 불가피한 문제 발생 등을 이월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더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도 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21.4%가 증가되고 명시이월비와 국고보조금잔액이 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발생한 바, 예산을 보다 적기에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잉여금 중 일부는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시켜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잉여금 사용은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채무부담 행위액은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협약 체결에 따른 20년간 총 상환 예정액으로 향후 20년간 민간투자비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시설유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채무부담행위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3.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 장 길)

가. 제안이유

-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출건수 : 3건

- 지출결정액 : 147,100,000원
- 지출액 : 143,564,930원
- 다음년도이월액 : 0원
- 잔액 : 3,535,070원

□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 심사보고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건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잔액	비고
호우피해 복구비	2007.8.13	79,500,000	79,225,140	0	274,860	제천 홍광초 배수로 설치공사
화재피해 복구비	2007.7.26	40,000,000	36,739,790	0	3,260,210	청주 중앙중 화재피해 복구
법무관리 (배상금지급)	2007.3.27	27,600,000	27,600,000	0	0	제천야영장 민간인 부상 사고 배상금
합 계		147,100,000	143,564,930	0	3,535,070	

나. 예비비사용 명세서

(단위 : 원)

장	관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잔액
		항	세항	세세항	목				
학교 교육	초등 학교	학교시 설확충	학교시 설관리	학교시 설사업비	시설비	79,500,000	79,225,140	0	274,860
	중학교	학교시 설확충	학교시 설관리	학교시 설사업비	시설비	40,000,000	36,739,790	0	3,260,210
교육 행정	본청	본청 운영	홍보활동 지원	교육 사업비	용역비	27,600,000	27,600,000	0	0
합 계						147,100,000	143,564,930	0	3,535,070

- 예비비 623억 6,631만 6천원 중 1억 4,7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제천 홍광초 호우피해 복구비 7,922만 5천원, 청주 중앙중 화재피해 복구비 3,674만원, 제천야영장 민간인 부상사고 배상금 2,760만원 등 총 1억 4,356만 5천원을 지출하고, 353만 5천원이 불용되었음

□ 종합의견

- 금번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 제천 홍광초의 경우 지난 2007. 8. 4.부터 8. 5일까지 306.5mm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급식소 현관 및 운동장이 침수되고 배수로가 파손되어 배수로 개축비로 사용되었으며,
 - 청주 중앙중의 경우 2007. 7. 18. 본관 4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원인불명 화재가 발생하여 시설 및 물품 피해가 있어 물품은 학교 자체에서 복구하고 멀티미디어실 시설 복구비로 사용하였고,
 - 제천학생야영장의 경우 2005. 8. 7. 제천소재 교회 교인 50여명이 참여한 야유회에서 피해 민간인이 하향횡단 시설물 이용 중 손잡이를 놓쳐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으나, 피해 민간인 부모가 야영장에 설치된 공작물 점유관리자로서의 보존상의 하자를 들어 6,1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법원에서 피해 민간인 과실 60%, 시설물 점유·관리자 40%로 조정 결정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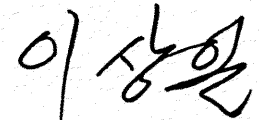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8. 6. 27.

예산·결산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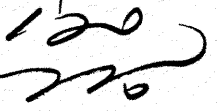
위원장

이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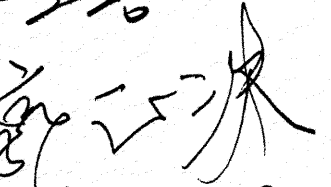
간사

김부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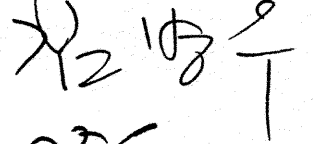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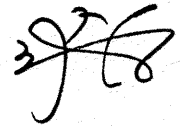
곽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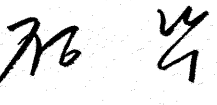
김병우



서수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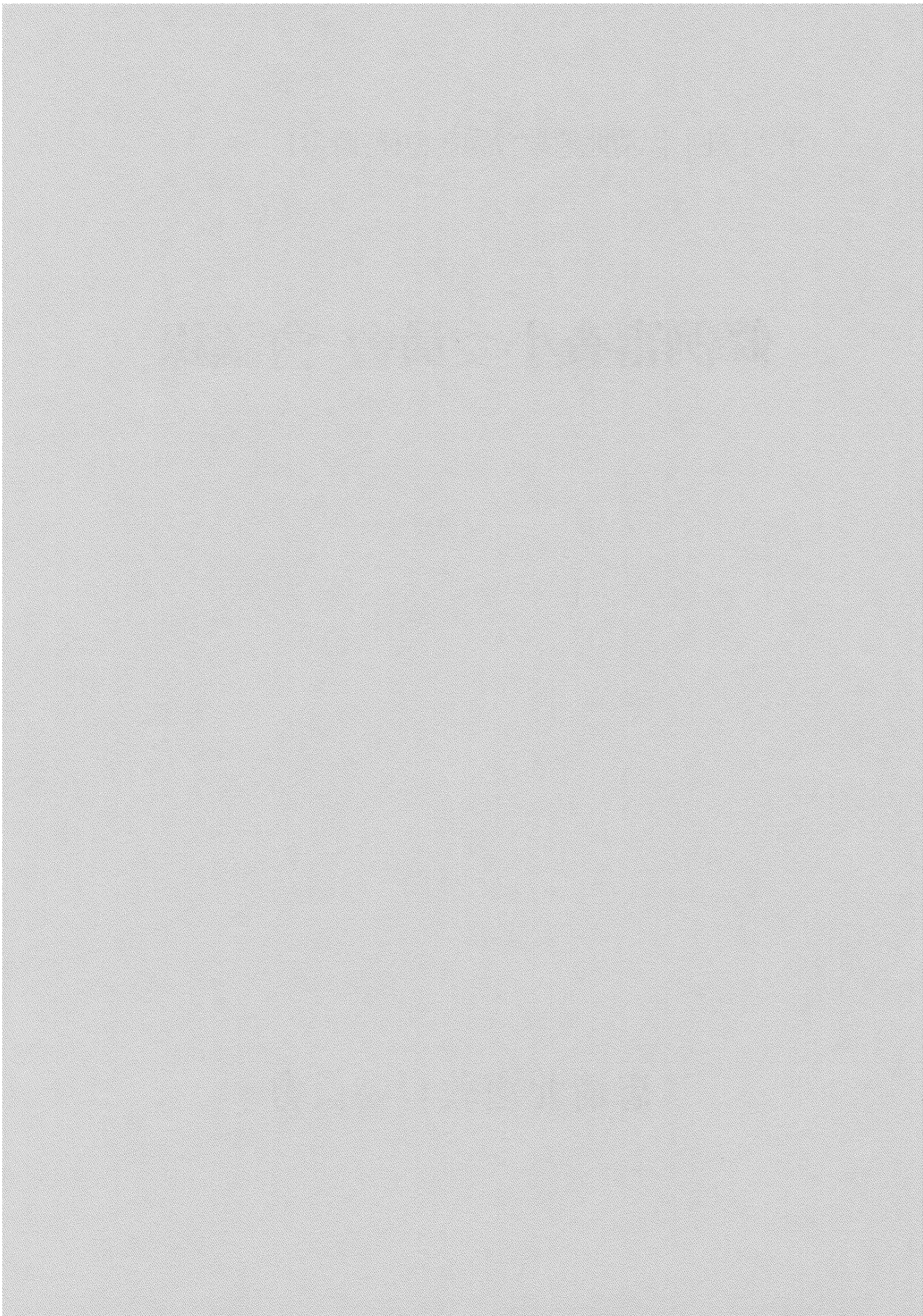
정무



第21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69

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191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6월 25일 (수요일) 10시 00분

議事日程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

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견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이번 조례심사위원장으로 정무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정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무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무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가 잘 이루어져 소기의 목적을 도래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견

(10시 03분)

● 위원장 정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교육위원 서수웅입니다.

이번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로 곽정수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무

곽정수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곽정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수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
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곽정수**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조례가 잘 심사가
되어서 아주 행정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
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오늘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계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5분)

● **위원장 정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하여 충청북도교
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
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
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
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 **위원장 정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
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는 조례명부터 정비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취지를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목을 간편하게 하면서 포괄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하고 기억하기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용에 관한 부분도 있고 징수에 관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걸 포함해서 사용료 징수 등 하면 사용과 사용료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이러한 표현 방식은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서 가급적 제목을 간편하게 하는 것이 짧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 김병우 위원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종래 조례명이 사용 및 징수라고 하면 사용절차라든지 하는 부분과 또 절차와 사용에 따른 요금징수 이런 것들은 포함을 하면서 '등'자로 이렇게 포괄이 되고 이런 이름이라고 봤는데, 이것을 간편하게 하는 것

은 이의가 없는데 징수료라는 말로 대표하면서 '등에'라고 이렇게 포괄을 하면, 초점이 마치 무슨 수익사업 쪽으로 맞춰지는 걸로 비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 보셨는지요?

● 교육국장 김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 등에 관한 조례해서 사용료까지를 포함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은 우리가 미리 그렇게 검토하지는 않았고, 사용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용료 등에 관한 조례로 표현을 했습니다.

● 김병우 위원

큰 차이는 없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조례의 명칭이기 때문에 좀 검토 해볼만한 구석이 아닌가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개정을 하고자 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제11조의 2 사용료와 관련되는 몇 가지 조의 개정안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제11조의2 사용료 부분에 보면 혹시 조례를 다 갖고 계신지요? 개정안이 아니라 조례 자체를 갖고 계세요.

그 개정하고자 하는 제11조의2 사용료 부분에 보면 개정안이 다음 각 호의 1

이라고 하는 부분을 각 호의 어느 하나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라든지 취지는 어떻게.....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다음 각 호의 1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이런 표현방식은 종전의 각종 법률이나 조례 등에서 일반적으로 써오던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최근에 들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쉽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맞춘 것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지금 법제처에서 전국의 법률, 시행령, 조례를 통일 시키기 위해서 지침으로 이렇게 내보내서, 지금 현재에 있는 다음 각 호의 1 이 용어를 전부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통일시키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2006년도 말에 나온 법제처의 자료 법령안 입안심사기준 그 별책에 보니까 정비기준으로 그 항목도 나오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뭘까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각 호의 1 이렇게 아라비아숫자를 써 놓으니까 1호라고 혹시나 혼동할 수도 있겠다 하는 취지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별책 정비기준을 보면 서도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보면 다른 내용들도 보면 종래에 문헌식 표현이나 특히 일본식 한자 어투 이런 것들을 많이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들이 있던데, 그 각 호의 1이라고 종래에 해왔던 그것도 사실은 일본법령을 베끼면서 빌어다 썼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라비아숫자 1자를 어느 하나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각 호의 어느 하나라고 하는 표현조차 제가 보기에는 일본식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제처에서는 그걸 또 기준으로 삼아서 이미 중앙부처에서 정비한 법령에도 전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거의 통일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르자고 하는데 더 이상 일본식 그 표현조차도 바꾸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라고 하는 말 그 표현이 아까 그렇게 정비를 해도 일본식 잔재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유는

그것이 굳더더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호라는 말속에 이미 어느 하나라는 의미는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법조문을 보면 어느 하나라는 말을 그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의미상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하나라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표현할 점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조례에는 굳이 그렇게 어느 하나를 꼭 명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조의2를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각 호의 1이든 각 호의 어느 하나든 굳이 어느 하나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겠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자는 거죠.

그 1항을 보면 도서관의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1과 같다 2항에 보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이렇게 하면 만약에 안되겠는가를 한번 짚어봐 주시자는 거죠.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사실 제가 전에 듣기에는 일부 법률이나 조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처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이렇게 표현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법조문을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이럴 때 일반인들은 전부 해당되어야 되느냐 하나만 해당돼도 되느냐 하는 또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이해하기 좋게 하자 그래서 굳더더기 말 같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렇게 풀어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면 말이죠, 본 조례에도 검토해 볼 조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24조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4조나 이렇게 보면 각 직속기관들의 특히 사용료 면제나 또 사용제한 이런 것을 규정한 조항들에 굳이 그렇게 어느 하나를 넣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넣고 어떤 부분은 빼고.

● **교육국장 김종근**

우리가 제안한 안에도 그런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일성 있게 조정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일일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긴 어려우니까 제가 지적해 준 부분을 실무단위에서 빨리 다시 한번 정비를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 다음에 15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조는 특히 도서관 사용제한 관련되는 조항인데 굉장히 어수선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5항을 한번 보면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했는데, 5항은 이상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다른 항과 형식도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요거를 제15조를 1항, 2항으로 나누는 게 좋겠다 나누고 1항 쪽으로는 도서관 사용을 제한하는 대상을 뭐뭐하는 자 이런 형식으로 모으고, 여기에 5호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거를 2항으로 원문자 2항으로 뒤로 빼는 것이 형식도 맞고 내용도 맞지 않느냐 하

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6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요 부분은 1하고 내용상 중복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6호는 아예 삭제해 버리고 5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원문자 2항으로 바꾸고, 앞부분에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그것을 전체 1항으로 손질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우 위원

동의해 주시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8조를 봐주시면 38조 시설의 사용 거기 보니까 복지회관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4호 내지 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요것을 제 욕심대로 하면 내지라는 말도 법안심사기준 정비안에 따라서 뭐부터 뭐까지라고 바꿔서 하고 특히 그 6호라고 하는 부분은 신청서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허가서 서식입니다. 그래서 4호부터 제5호까지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4호 내지 제6호 요 부분을 제4호에서 제5호까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

를 그렇게 정비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요.

● **교육국장 김종근**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우 위원**

마치 교정봐주는 기분이지만, 그리고 또 사실 2006년도 말에 법안정비기준이 내려옴으로써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각종 조례들이 전체적으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번 재점검이 되어야 될텐데, 사실 그거는 너무 방대한 작업이라서 이런 개정의 기회에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 같이 포함해서 손질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맞춤법이 틀린 게 우리 조례로 그대로 등재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바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16조에 보면 도서관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 분실하므로써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렇게 나와요. 요건 함으로써 이렇게 바뀌야 될 것 같은데 35조나 45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41조는 또 제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그런데 그래서 41조처럼 16조, 35조, 45조도 맞춤법을 교정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맞춤법 틀린 부분도 인정을 하고 저희

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이상 제 질의성 제안을 마치고 요것을 실무단위에서 빨리 정비를 해서 있다가 저희가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교육위원 서수웅입니다.

지금 개정하려는 조례 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표에서 전번 조례에 그러니까 개정안 내기 전 조례를 보면 공연장 수수료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낸 수정안에는 학생교육문화원공연장과 영화음악감상실이 오전, 오후, 야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금액을 책정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학생문화원공연장은 오전, 오후, 야간 음악감상실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오전에 공연할 때와 오후에 공연할 때 야간에 공연할 때 관객의 숫자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보다는 오후의 관객인원이 많고 또 오후보다 야간의 관객인원이 많고 이렇게 해서 관객인원이 많은 쪽에 사용료를 좀더 부가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건 가정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 **교육국장 김종근**

많을 것이라는 건 가정입니다.

● **서수웅 위원**

부드러운 말씀으로 저희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영화도 조조할인이 있는데 혹시 그런 개념인가 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했는데 여기서 오전, 오후, 야간이라는 시간 개념은 우리가 평상시 하는 걸로 일과 근무시간 9시부터 12까지,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시 이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 다음에 보면 학생문화원 부속설비 중에서 난방과 조명부분은 보면 학생문화원과 본관 이렇게 구분해서 했더라고요, 아니 구분하지 않았네요. 냉방은 학생문화원 본관 이렇게 구분해서 책정을 했는데 난방과 조명은 구분하지 않고 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떤 건 구분하고 어떤 건 구분 안하니까 혼선이 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난방의 경우는 학생회관이 경유를 사용하고 또 새로 신축된 학생문화원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한 구분이 필요없다고 보고, 지금 냉방의 경우 학생회관은 전기에어컨을 가동하고 학생문화원은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산출기초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경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 **서수웅 위원**

난방하고 조명은 같은.....

● **교육국장 김종근**

난방과 조명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 **서수웅 위원**

이대로 두는 게 옳다는 말씀이죠.

● **교육국장 김종근**

예

● 서수웅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게 되면 학생문화원 공연장, 영화음악감상실 그 다음에 본관 공연장, 강당 그랬는데 여기서 본관이란 영동을 얘기하는 건가요?

● 교육국장 김종근

지금 우선 영동에 있는 것을 표시를 해서 구분을 한 겁니다.

● 서수웅 위원

강당은 구분이 안되잖아요? 어디 강당 입니까?

이게 실무자들은 강당 그러면 어디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도 그런데 제삼자가 이걸 볼 때는 만일에 사용하려고 신청을 한다고 그럴 때 이 표만 보면 강당이 주중동에 있는 거야 영동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인정합니다.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동에 있는 본관 강당입니다.

● 서수웅 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학생문화원 안에 다 들어가긴 그렇지만 이게 수요자 측에서 볼 때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해 줬

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 다음에 비고란에 보면 뒤쪽인데 수 영장의 경우 충청북도학생문화원에 속해 있는 거에 보면 단체를 15인 이상 적용 이렇게 명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천의 경우는 단체는 30인 초과 적용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상과 초과는 의미가 다른데도 왜 어디는 초과해서 30인을 포함 안시키고, 또 이쪽에는 15인을 이상해서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쪽 청주 쪽이 훨씬 큰데 거기는 단체가 15인으로 했고 제천 쪽에는 30인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개정할 때 충청북도학생 교육문화원을 개관하기 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부분과 이렇게 연계해서 검토를 잘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그래서 15인 이상하면 15인이 포함되고 30인 초과 이러면 31인부터 해당되는 걸

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통일을 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천은 이미 30인 초과 이렇게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연동해서 저희들이 검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인정을 해 주시니까 시원하기는 한데 기왕에 지금 인정을 하시고 다시 살펴볼 기회가 됐으니까 그것도 연계도 해서 인원수도 조정을 한번 다시 해 주시면 좋겠고, 대외적으로 나갈 때 그리고 이상으로 할거나 초과로 할거나도 통일성을 지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일·공휴일 및 야간사용시 시간당 30% 가산 이랬는데 일·공휴일 그게 이해가 안가는 게 앞쪽에는 보면 또 비교에 토요일·공휴일에 사용할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일요일은 이미 공휴일에 포함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일요일·공휴일이라고 쓴 것은 한번 살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고, 토요일·공휴일에 대한 것은 토요일도 포함한다면 타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왕에 요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아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 교육국장 김증근

지적하신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굳이 일요일, 공휴일 구분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공휴일 하면은 주중에 있는 어떤 공휴일을 흔히 인식해오던 그런 것 때문에 일요일과 구분했는데, 이제는 많이 인식들도 바뀌어서 통일해서 공휴일로 표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서수웅 위원

이거는 어떤 규정에 의하는 거니까 일반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일반인을 이해시키면서 쓰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김증근

알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지금 제가 공부하면서 질의했던 사항들을 같이 공감해 줘서 고맙고요.

아까 김병우 위원 얘기했듯이 기왕에 이것을 개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확히 살펴보고 수정발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같이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증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수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무

서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곽정수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조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의 협의가 필요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무

곽정수 위원님 지금 수정동의를 하신 것이죠.

● 간사 곽정수

예

● 위원장 정무

수정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정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곽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를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곽정수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 곽정수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용어와 표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안 별표 2에서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수영장(전용) 비고란에 “일·공휴일 및 야간사용”을 “공휴일 및 야간사용”으로 수정하고, 제천학생회관 롤러스케이트장과 수영장 비고란에 “단체는 30인 초과 적용”을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으로 수정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 선택적으로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제15조의 제1항을 신설하고 “관장은 다음 각 호에”를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제15조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시설의 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제16조, 제25조, 제35조, 제45조의 “하므로써”를 “함으로써”로 수정하고, 제24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제27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원장 및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로, 제27조제2항제4호에서 “개호인”을 “돌봄이”로, 제28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으로, 제34조에서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제40조에서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제44조에서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38조에서 “별지 4호 내지 제6호 서식에”를 “별지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곽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

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 위원장 정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걱정수

교육위원 걱정수입니다.

이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본 결과 많은 수정이 요청이 되어서 한번 검토한대로 제가 먼저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우리 김병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바뀐 법률용어 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개선하는 문제 그런 등등이 여기 간과되어서 한번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거기 세 번째 줄에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거기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이걸 따르므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설치 및 하는데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2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규정에 의한 하급행정기관의 교육장이하 그랬는데 일반행정기관에는 교육장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그걸 하급교육행정기관이라고 자구를 삽입해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검토를 해 봤고요.

또 제3조의 1항 두 번째 줄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에 관한 사항 그랬는데 및

을 와로, 그 다음에 3항에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에 관하여 하는데 거기 위생 및 하는 걸 이번엔 과로, 그 다음에 4조 여기도 13인 이상 17인 이내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그걸 17인 이하로 용어를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항에 정화위원회의 위원은 그 밑에 줄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당연직 위원인데 거기 위원이라는 말이 또 들어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하는 그 세 자를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로 경험 있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그런데 또는 이라는 말을 순화해서 임명하거나 하는 말로 바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역시 거기도 위원이라는 말이 또 중복이 되어서 그 세 자를 역시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임기에 두 번째 줄 다만 소속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를 소속직원일 수도 있고 또 임기를 갖는 위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제가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제가 임기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기가 교육위원이 끝날 때까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감안한다면 그걸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소속직원과 그리고 삽입해 넣는데 관련기관 공무원인 위원인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삽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바꾸고 물론 그 다음에 있는 다만 잔임기간이 역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이고 하는데 거기도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제6조제2항에 제1항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을 와로 바꾸고, 그 다음에 3항에 두 번째 줄 뒷 부분에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수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8조의 2항 관련기관 공무원인 그 직위로 위촉한 경우에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해서 아마 자격상실이 나왔는데, 그 앞에 관련기관 공무원 앞에 소속직원과 하는 것을 삽입해서 소속직원과 관련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임명하거나 하는 것을 삽입해 넣고 위촉한 경우에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 그 다음에 3항에 학교운영위원회인 학부모 위원이 그런데 그 인을 위원인을 갖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인으로 인을 갖다가 회로 바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

원회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그랬는데 그 앞에 삽입해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어서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가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조 3항에 교육장 또는 위원장이 학습환경과 학교에 보건·위생 보호를 위하여 의퇴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거기 보건·위생 보호를 하는데 그 앞에 보건·위생과 그 다음에 학습환경이라는 말이 삽입되어야 되겠고, 다시 읽으면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거기 의퇴하거나 그랬는데 그 앞에 심의를 이라는 말을 삽입해야 되겠고 심의를 의퇴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다음에 10조 5항에 가서 교육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통보한 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공정성·객관성 등이 현저하게라는 단어를 뚜렷하게로 바뀌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2조에 두 번째 줄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그랬는데 그 인을 갖다가 명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는 서기는 담당직원을 교육장이 임명한다, 그 다음에 13조에 첫째 줄 뒤쪽에 정화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했는데 정화위원회 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칙의 사이가 더 줄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 건 그래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준비기준에 제가 같이 맞추어서 검토를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되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일상용어로 바뀌서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8조의 3항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격을 상실한 때, 요 경우에 지금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격을 상실한 때 이렇게 그 말을 삽입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넣어야 되는가.

● **간사 곽정수**

맞아요.

자격을 상실하면 이렇게 상실하나 저렇게 상실하나 그거는 빼도 괜찮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다른 부분은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12조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

사는 해당업무 담당주무자 서기는 담당직원을 교육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시자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별도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 보다는 종전대로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나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간사와 서기를 담당직원들이 담당을 하지 교육장이 별도로 임명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 **간사 곽정수**

네, 알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5조 1항에 있는 소속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자로 명시되어 있고, 또 8조 2항에 보면 관련 기관 공무원은 그 직위로 위촉한 경우에 인사발령 등으로 직위를 상실한 때 이 두가지가 사실은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5조 1항에 있는 임기하고 그 다음에 자격상실인데 그 내용은 따지고 보면 같은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해 직위 재직기간 발령 나면 당해 직위 재직기간이 아니니까.

● **간사 곽정수**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건 제가 속해 있는 부서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속해 있는

데, 거기 보면 부교육감이나 우리 국장님이 거기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 윤리위원 중에서 다른 위원들은 기간이 2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김병우 위원하고 저하고는 교육위원 재직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2년 임기인데 저희들은 4년 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넣었습니다만 하여튼 협의를 해서.....

● 김부웅 위원

소속직원도 공무원이고 관련기관 공무원도 공무원이라 이겁니다.

● 간사 광정수

근데 여기도 넣었던 것은 이제 소속직원을 넣었던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임기가 없이 수시로 교체될 수 있다라고 그럴 경우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구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무

김부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저는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에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1조를 보면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3에

의하여 정화구역 내에 금지행위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은 학교정화구역 내에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및 시설을 허가할 때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교육감과 협의하고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서 정화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3조에는 정화위원회 기능이 되어 있는데 잘 살펴보면 정작 심의대상인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에 대한 대상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안 제10조 3호를 보면 교육장 또는 위원장이 학습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 보호를 위하여 의퇴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같은 안 3조 1항 3호에는 교육장이 의퇴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토록 규정되어서, 두 조항 사이에 각기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의 기능을 여기서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지금 김부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없었는데 제가 추가로 조금만 답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3조 기능에서 보면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조의 3항에 보면 교육장 또는 위원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소집할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다 이런 예감이 들거든요. 만일에 위원장이 이권에 개입됐을 수도 어찌 보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쪽에서 위원장을 삭제하던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앞쪽 기능에 위원장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맞습니다.

● 서수웅 위원

저희 생각에는 10조에 위원장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 김부웅 위원

어차피 교육장이 의뢰하고 소집하는 거니까, 회의소집에 관한 거니까 위원장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교육장이 하면 되니까.

● 교육국장 김증근

지금 지적하신 부분 회의소집은 교육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삭제하고.

● 김부웅 위원

그 다음 그 앞에 질의했던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그것도 한번 보세요.

3조에 정화위원회 기능에 보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환경에 대한 대상이 누락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 교육국장 김증근

제3조에서 정확히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에서 학원에 관한 환경정화위원회가 빠졌다 그 말씀이시죠.

그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항목으로 하나 명시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 김부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 위원장 정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곽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곽정수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 곽정수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문장 체계를 정리하여 주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으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장 또는 위원장이 학습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 보호를 위하여 의뢰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교육장이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교육장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로 하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안 제1조에서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을 “제6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과”로, “제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제5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으로, 안 제2조에서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하급행정기관”을 “제34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단서규정에 따라”를 “단서에 따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행위와 시설”로,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위생 및 학습환경”을 “위생과 학습환경”으로, 안 제4조제1항에서 “각 1인”을 “각 1명”으로 “13인 이상 17인 이내”를 “13명 이상 17명 이하”로,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안 제5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잔임기간이”를 “남은 임기가”로, 안 제6조제2항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

행위와 시설”로, 안 제7조제3항에서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으로, 안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관련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위촉한”을 “소속직원과 관련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임명하거나 위촉한”으로, 안 제8조제1항제3호에서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위원이”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안 제8조제2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5항에서 “현저하게”를 “뚜렷하게”로, 안 제12조에서 “각 1인”을 “각 1명”으로, 안 제13조에서 “운영 및 기타”를 “운영과 그밖에”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곽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6분)

● 위원장 정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게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정무, 간사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5명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희.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8. 7. .

위원장

정 무

정 무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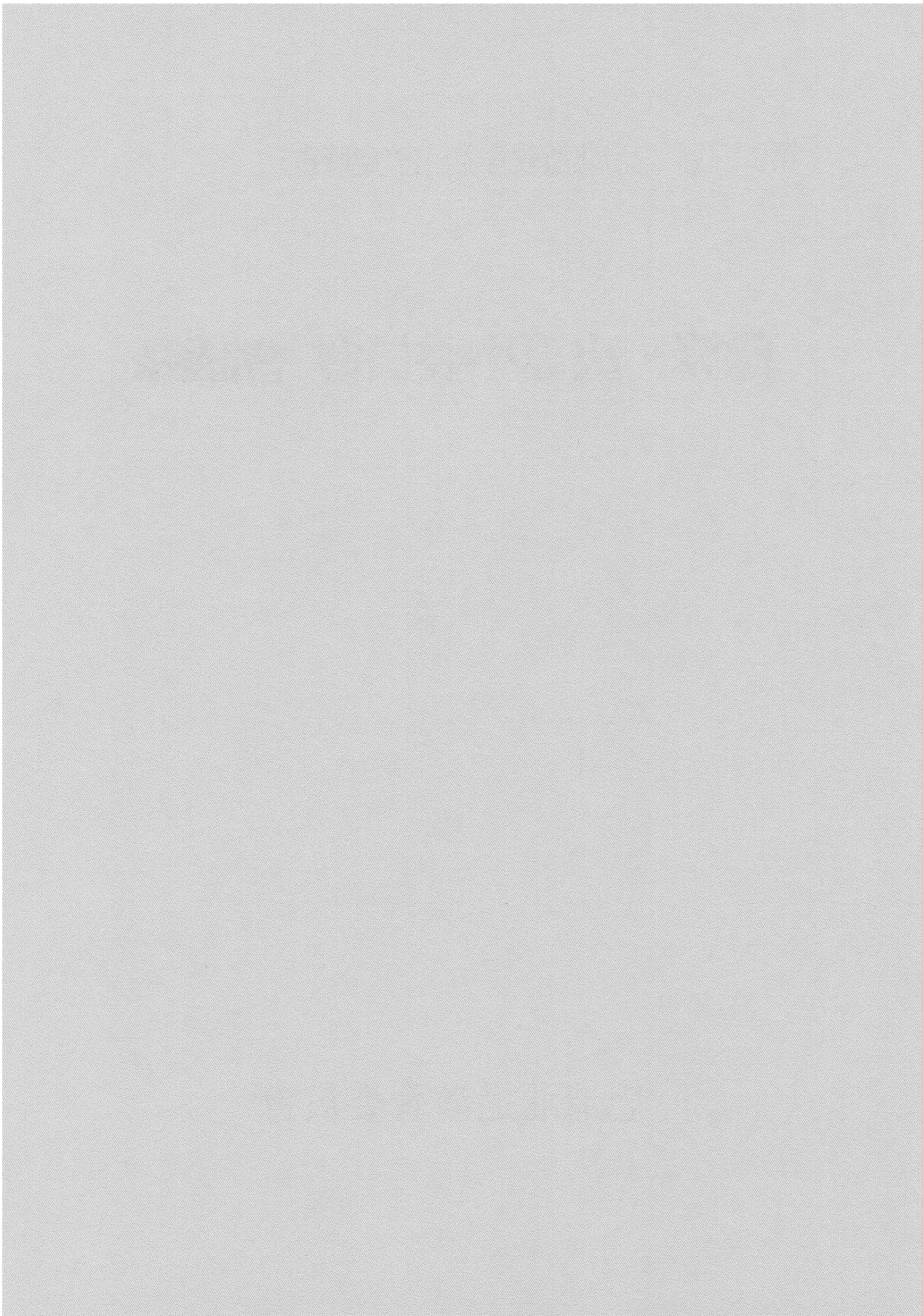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8. 6. 25. (수) 10:00	<p>[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위원장 선출의 건2. 간사 선출의 건3. 의사일정 결정의 건4.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6.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第21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97

II.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227

III. 부 록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297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6월 25일 (수요일) 13시 59분

議事日程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審査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3시 59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

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견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교육위원 김병우입니다.

이번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상일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이상일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일 위원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일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견

(14시 01분)

● 위원장 이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교육위원 정무입니다.

금번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로 김부웅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김부웅 위원님을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부웅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웅 위원님께서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부웅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이상일 위원장님을 도와서 충청북도교

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필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 03분)

● 위원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6월 26일 2일간으로 하여,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4.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4시 04분)

● 위원장 이상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오늘 심사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계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써 주신 관계 당국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결산서 51쪽 법정전입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자주 거론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이건 2007년도 예산에 127억 8,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청으로부터 전액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국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에 대한 관계법에서 환급금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도청에서 보관중인 학교용지부담금은 당연히 전입 받아야함에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미수납액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너무 평소에 관심이 많았었고, 도에서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교육부담금 전출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2007년도에 저희들이 127억 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도청에 전입 요청을 했고, 또 제가 관계국장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 의견을 주고 받고, 또 도의회에서도 우리 교사위원님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행정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한 해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도 났고, 또 이에 상응하는 관계법령 제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결국에 국민들한테 받아들이는 돈은 환급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원의 부담을 지방비로 할 것이냐 중앙에서 할 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국회에서 논란을 하다가, 일단 중앙에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법이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과거에 받지 못한 일부 부분까지도 충분히 받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도에서 2008년도 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63억의 예산이 편성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 관계자에 의하면 그 나머지 부분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청에서 거둬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전출을 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 곽정수 위원

미수납액으로 처리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거는 저희들이 돈을 지금 전액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미수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상 불용액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곽정수 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 특별교부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지난 5월 스승의 날에 즈음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모교 방문시 특별교부금 지원을 해 준 것이 논란이 되어서 감사원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2007년도 국가부담수입에 보면 총 1조 1,367억 6,200만 7,000원 중에서 보통교부금이 1조 795억 8,092만 4,000원인데 특별교부금이 492억 3,592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특별교부금 비율이 4%가 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4%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총 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 96%, 특별교부금이 4%인데 이 4%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도의 특수교육사업에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우리가 4%보다 적게 받았다면 우리 도로 교부해야 될 돈이 결국은 다른 시·도나 다른 용도로 우리 도로 안주고

교육부에서 주머니 돈 쓰듯 한 게 아니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본래 법령상으로는 내국세 총액의 96%가 보통교부금으로 쓰고 4%정도는 교육부장관이 특별교부금으로 특별소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4%를 정확히 받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관계관이 한 3년치 통계를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거의 4%에 육박하지만 다소 조금만큼은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떠한 특정 시·도에 조금만큼 더간 경우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보통교육을 위해서 교육부장관이 공통적으로 쓸 수도 있었다는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왜 명쾌하게 4%를 채우지 못했고 보통교부금이 조금 더 왔는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으나, 다음 번에 한번 교육부에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한번 따져봐요.

결산서 39쪽, 53쪽 토지 매각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기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토지 매각수

입이 예산액보다 1억 2,792만원이 더 수납되었는데 예산보다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입니다.

재산매각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보다 추경에 올렸는데 학교에 도로편입이 되어 가지고서 보상금 받은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추경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아직 예산에 계상을 못해 가지고 약 1억 2,000정도가 추가 수납이 됐습니다.

● 걱정수 위원

토지매각은 도시계획이나 매각계획에 의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과 결산 차액이 많은 건 앞으로 예산편성에 누락이 없도록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 걱정수 위원

53쪽 입장료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수영장 관계자 누구 나오셨나요?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예산·결산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수영장 적자운영문제입니다.

2007년도에 적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된다면 한번 정책

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운영의 주체를 임대 운영 등으로다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가장 경영합리화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학생수영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수억씩 적자를 보고 있고 그 적자를 만회할 만큼 경영 합리적인 뚜렷한 목적도 생각나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체육관계를 전공하시는 일부 민간인께서 오셔 가지고 이 부분을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운영할 의향이 있다 한번 임대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제안은 구두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계관한테 협의를 하고 검토를 시킨 결과로는 당분간은 교육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론이 나서 그거를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 다른 시·도에 이렇게 저희들이 쪽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임대를 주고 있는 시·도가 있고 직영하는 시·도가 있고, 그런데 결국에 임대를 주고 있는 데는 운영의 질은 떨어지고 또 직영하는 데는 운영의 질은 높아지고 다

만 적자요인이 누구한테 부담이 되느냐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임대료를 주었을 때 나중에 시설의 노모도 감가상각도 이런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임대를 주기로 말하면 또 임대수익자가 임대를 맞지를 않을 것이고, 단순히 그분들도 이익이 남아야 그거를 받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해서 적자나는 부분을 이익을 남기려면 그만큼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용자들한테 부담 내지는 불편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교육기관에서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교육기관이 무슨 이익을 창출하는 영업을 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대다수가 우리 학생이라고 그러면 애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거의 아마 우리 선수나 무슨 그런 것 이외에 제가 수영장을 사실은 몇 번을 한번 가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나 그랬더니 12시전에는 여성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남자는 없고 12시 이후에 쓰게 되어 있고, 한쪽은 보니까 다이빙연습장이 있어서 국가대표선수들이 거기 와서 연습을 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학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쓰는 것 같으면 당연히 적자를 보든 뭘 하든 그걸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수도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학교는 지금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례를 적용해서 학교에서 쓰는 물 값은 할인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수영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 그랬더니 겨울에는 물을 덥혀주기 위한 연료비 그리고 수도물 값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수도물 사용에 관한 조례도 거기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테니스코트에 야간조명까지도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시간은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쓰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영장의 실정도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가온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어쩔 수 없다지만 원수 값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적자폭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번 시에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노력해 보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54쪽에 과년도수입에 관한 얘기입니다.

과년도수입이 4억 6,293만 8,000원인데 2006년도에 받아야 될 수입이 과년도수입이 2007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과년도수입 2억 8,000만원은 옥천삼양초 인조잔디를 깔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던 건데, 그 경비의 일부분을 옥천군에서 일부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일부가 우리에게로 전입이 다 안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고요. 나머지 188만원은 저희들이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받아들여야 할 돈인데 그것이 아마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니까 옥천 지방자치에서 들어올 돈이 늦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곽정수 위원**

그 다음에 과년도로 계상했다가 2007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2억 8,157만원의 내역하고 처리대책도 알려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거는 뒤에 옥천삼양초등학교 인조잔디가 군으로부터 돈이 와서 이미 저희들

이 징수를 완료했고 공사 지금 올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쯤 아마 공사가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 **곽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163쪽에 제일 끝에 교육과정개발운영하는데 거기 지금 이월된 액수가 2억 8,900인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거 이월된 사유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 **중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사 문종훈**

중등교육과 장학사 문종훈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비 2억 8,91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에 의해서 개정 교육과정 적용대비 수학과 교수학습자료개발비 3억 3,000만원과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대중용 읽기 자료 개발비 6,0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용역처의 계약체결이 수학과 같은 경우는 두 번씩이나 단독입찰이 되었고 대중용 읽기 자료는 한 번은 단독 입찰, 한 번은 미찰 때문에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용역에 대한 계약이 12월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끝난 다음에 인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은 12월말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2월 말까지 끝나게 되었지만 인쇄는 부득불 하게 2008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2월 달에 인쇄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4월과 5월에 인쇄가 완료되어서 전국으로 모두 배포가 끝난 상태입니다.

● **곽정수 위원**

계약이 단독 응찰되는 바람에 결국은 계약이 성립이 안돼서 미루다가 늦게 되면서 결국은 이월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 **중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사 문종훈**

네, 그렇습니다.

● **곽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불용현황이 나왔는데 보니까 초등교육과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전혀 집행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선정이 잘못 된 거냐 아니면 이게 시기가 하여튼 전액 불용됐다라고 그러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보화과, 평생교육체육과 등등해서 전액 불용이 된 게 각 과별로 다 있는

데, 이 불용처리된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좀 시기나 또 방법 이런 게 적절히 되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액수가 잘못되어서 쓰다 남았다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냥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에 결산서 573쪽, 582쪽 채무부담 행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BTL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573쪽에 채무부담조서의 승인액이 1,939억 정도, 그 다음에 582쪽에 결산액이 2,427억원 그래서 차액이 발생했는데 한번 그 사유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결산서를 작성한 관계관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채무부담조서 573쪽하고 582쪽의 채무결산내용의 숫자가 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시인을 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BTL사업이 저희들이 2006년도에 민간사업으로 처음 도입을 하면서 이것이 채무냐 의무냐의 부분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히 혼선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

초에 채무부담행위로 인정이 되어서 당시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에 채무부담행위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오던 중, 당시 행자부하고 교육부하고 그것이 채무부담행위가 아니고 의무부담으로 봐서 앞으로는 교육위원회에 의결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저희들이 상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어떤 건축물이 아니면 그 부지가 건축물 내지는 구축물이 완성되어가지고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추정액을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총 소요액 그러니까 원가 플러스 20년 간의 이자 또 물가상승 여러가지를 감안하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거를 계약성립 전까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것은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20년 동안 제공한다고 계약을 했지만 서비스 제공이 끝나는 날부터 채무가 또 소멸되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된 채무보다 앞으로 우리가 내야될 부담해야 될 의무로 본다 이래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뒤늦게 받았습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작성할 때에 처음 이게 2007년도 예산에 채무부담행위조서를 꾸미다 보니까 저희들 실무

진에서 이거를 조금 행정착오를 일으킨게, 채무부담승인액을 도에서 승인해준 금액이 얼마고 채무부담은 실제로 행위를 한 거는 얼마나 그 승인의 범위 내에서 채무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를 당초에 승인을 낼 때에 계산도 상당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를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그 금액을 쓴 것이 아니고 거기서 조금 상환액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얼마를 계약을 했느냐 그걸 묻는 표인데, 저희들이 처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에서 채무부담 상환액을 적다 보니까 도표가 573쪽이 잘못 작성되었고요.

● 광정수 위원

573쪽에 채무부담행위액 ②로 되어 있는 것 ①번이 승인액이고 ②이 행위액인데 이게 채무부담행위액이 아니라 이게 채무상환액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잘못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후에 바로 수정 분을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2쪽도 보면 채무발생액이 실질적으로 573쪽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정을 한 부

분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작성상 잘못됐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 **곽정수 위원**

또 하나 거기 같은 저기인데, 거기 보면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해서 보면 5년 만기 국고채금리 플러스 가산율 1.19% 위의 것은 산남고 외 2교가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성화초 외 2교는 똑같은 조건인데 가산율이 1.60%, 그 밑에는 1%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건축에 계약할 때 무슨 입찰할 때 응찰한 사람들의 낙찰이 이렇게 된 건지, 우리로서는 가장 싼 이자를 물어내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최저 금리로 그 사람들이 낸 건지 한번 그 가산율이 다 달라서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계약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계약 내용들을 협상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투자가 보통 20년 동안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대신에 우리가 20년 동안 서비스 받는 것에 대한 상환대가를 지불할 때에 어떠한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조건을 제시할 때

저쪽에서 답변이 오고 이게 수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교육청에서도 이 정도 되면 우리도 할 의사가 있고 또 저쪽에 협상에 응해 오는 그 업체에서도 이 정도 되면 우리도 이거를 할 용의가 있다 하는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의 여러 가지 난이도라든가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의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해서 협상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지정된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협상에 의한 가격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 **곽정수 위원**

똑떨어진 금리가 정해진 건 아니고 국고채금리에다가 더 얹어주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난이도 있을 거고 그동안에 사채시장의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또 그때 건설경기라든가 이런 걸 전부다 종합적으로 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 **곽정수 위원**

이제 앞으로 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면 우리 교육예산에 많은 부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민간투자 BTL사업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생

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2005년도 '06년도부터 워낙 국가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될 의무교육기관이나 고등학교의 학교 짓는 것까지도 예산을 상당히 배부해 주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서 BTL사업으로 추진하라, 의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실 신축 특히 학교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 상황을 해 주겠다 이런 조건을 걸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거기에 덩달아서 다목적실이라든가 일부의 학교시설들을 우리 자체 내에서 교육감님께서 불요불급한 부분도 일부 포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신설을 제외해놓고는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BTL사업은 지양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육감님한테도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곽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산남고나 봉명고가 BTL사업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청원고도 마찬가지죠. 청원고도 BTL사업으로 지었는데 지금 이번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기숙형공립

고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학교마다 기숙사를 짓게 되어 있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몇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BTL사업으로 지은 학교에 대해서는 관리를 BTL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내에 기숙사가 생기면 결국은 그 기숙사는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건 분명히 우리 돈으로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학교에 관리의 주체가 두 개가 생겼다 그러니까 기숙사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학교는 BTL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또 앞으로 추가로 교실이 증·개축이나 그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는 소규모사업을 그걸 BTL업체한테 그걸 하라고 해서 할 리도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BTL업체 건물에다가 우리 국가사업을 갖다가 엮을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관리책임을 누가 지을 거냐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BTL사업체가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전반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동 위에다가 기숙사를 지었을 때 하자 부분의 문제, 관리부분의 문제 그 다

음에 신축연도가 내용연수가 신축연도의 차이에 따라서 내용연수의 관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업체하고 협약내용 속에 있는 거면 다행이지만,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해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관리주체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581쪽에 거기 보증금해서 전세권 그런 게 있는데 거기 지금 보면 전세권이 3억 1,200만원 그 다음에 당초 소멸액이 2억 6,000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 지금 전세권에 대한 설명하고 소멸액이라고 그러는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입니다.

저희들이 남의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사무실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이 1억 6,200만원의 채권이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교원연합회 사무실이 1억원 해 가지고서 2억 6,200이 있는데, 이것이 소멸액은 다음 연도로 다사 연장 계약이 되기 때문에 소멸이 된 거고, 여기서 5,000만원이 더 늘어난 거는 교육위원회 교육위

원 휴게숙소를 분평동에다가 마련해 가지고 이래서 3억 1,200만원이 된 겁니다.

● **곽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5쪽에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는데 보존재산이라는 당해 연도 증감액에 3억 3,000이 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존재산이 뭐가 있으며 늘은 이유가 뭔가 알려주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입니다.

보존재산은 문화재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입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청주에 있는 주성초등학교 강당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것 단독하고, 괴산중학교의 체육관으로 쓰고 있는 것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심의해 가지고 2007년 9월 21일에 근대문화재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보존재산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면서 보존재산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들 도내에는 죽향초등학교 교실까지 해 가지고 3건의 문화재가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럼 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되면 앞으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수리나 관리나

보수나 지붕이 샌다든지 등등 했을 경우에 그럼 대수선비 같은 것은 어떻게 문화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는 전부다 소유주 위주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라 하더라도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관리권은 소유주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보존에 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법의 보호를 받고 모든 수리나 이런 걸 할 때도 전부 보존차원에서 하게 되면 변동을 시킬 때는 전부다 신고를 해서 허가를 득 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다시 옮긴다든가 이런 조금이라도 건물이나 문화재의 가해행위가 될 때는 전부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객정수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를 보존재산이라고 지정만 해 주고 무슨 수리 요인이 생기면 전부 승인까지 받아가면서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객정수 위원

그러면 좋은 거 아닌데요.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부웅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1년 동안 사업을 집행한 뒤에 그 결산한 내용을 보면서 심의위원들의 섬세한 심의의견서에 공감했고, 또 알뜰히 살림해 주신 집행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저는 두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555쪽부터 나와있는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사업비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사업비 성질이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해서 넘어갈 때의 명시이월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명시이월시킬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월사업비가 결산서 사업비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 차액을 제가 살펴보니까 대충 얼른얼른 보이는 큰 것만 봐도 제천여고에 3억 3,912만원자리 또 단재교육원 6억 9,429만원자리, 대원고등학교 등 이렇게 남아있는 결

산액은 처리가 비교적 간단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대원고 기숙사 신축비 2,383만 9,000원, 신흥고 급식소 2,217만 7,000원, 교육문화회관 1억 6,847만원 등 이런 것에 결손처리가 될 때에는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고, 또 왜 그런 추경안을 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제대로 처리가 안됐나 묻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명시이월시킨 사업에 대해서는 의결이 된 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받아서 익년도에 집행을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집행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금액을 초월해서 집행을 한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집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명시이월을 해서 익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득이 해 가지고 그때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들은 주로 공사를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경우에 조달청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 수수료 정도는 당해 연도 집행액으로 빼놓고 명시이월 금액을 산정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주로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특히 단재교육연수원 리모델링비가 다소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보다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걸 공급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기 관급자재를 구매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걸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원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이라든가 신흥고등학교 급식소 부분 이런 것도 한 2,3천만원 정도를 명시이월을 안하고 집행하겠다고 그리고서 사실은 집행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연도 내에 설계는 마치겠다 설계비정도는 저희들이 제외해 놓고 명시이월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그걸 받고 의회에 승인을 맡았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아마 설계가 아직 납품되지 않은 관계로 집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금액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더 좁힐 수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보통 마지막 추경을 할 때 저희들이 한 9월이나 10월부터 마지막 추경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추경이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도의회를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2,3개월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연말을 상당 기간 앞두고 모든 명시이월 명세를 꾸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저

희들이 더 세밀히 해서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부웅**

추경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결손처리가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673쪽입니다.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조대상을 보면 사립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되는 사립학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사립초등학교 기타사업비로 7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는 초등학교는 안되어 있는데 실제 결산서에 들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 **간사 김부웅**

673쪽입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입니다.

790만원에 대한 내역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으로다가 국고를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대성초등학교까지 들어가서 720만원이 지원됐고, 그 다음에 학생

생활지도비에 흡연예방관계로 인해 가지고서 예방교육비로다가 또 이게 10만원 들어갔고, 과학교육진흥비로 해 가지고 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걸 뭐냐 하면 과학교육진흥비는 탐구체험학습비로다 임차료를 갖다가 60만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 **간사 김부웅**

지원한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조례 근거에 없는 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데.

●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은 지원은 아닌데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는 포괄적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에 이 문제가 처음에 사립초등학교는 사실 국가에서 모든 것이 의무교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전체 지원이 안되는 걸로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년 전에 대구광역시에서 당시에 교육부장관한테 질의를 해 가지고 사립학교에 보조가 가능하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교육부의 답변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도교육감이 판단해 가지고 지원할만한 사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 가

지고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간사 김부웅**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를 손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교육위원 서수웅입니다.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해서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결산서 53쪽입니다.

거기 수수료수입에서 입학수수료를 보면 처음에 예산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340여 만원이 더 징수했는데 혹시 이게 수수료로 볼 때는 별로 작은 액수는 아닌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입니다.

수수료수입에서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교원 및 일반직의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우리가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대상자의 배정에 대한 증가수수료를 할 적에 24.8%를 우리가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받아보니까 응시율이 높아지고 배정인원이 늘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들어왔습니다.

● **서수웅 위원**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인 것 같아서.....

●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간격을 좁혀보려고 통계를 가지고 했는데도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 **서수웅 위원**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쳐서 했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금년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또 있네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예

● **서수웅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 전형료에서 내신제 고등학교가 3,000원씩 만 9,000명 잡았고요, 과학고 외국어고등학교가 8,000원씩 해서 600명을 잡았네요. 그리고 예술계고등학교는 만 4,000원씩 170명을 잡았어요. 요게 요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 전형료 책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과 다르게 책정된 것은 혹시 없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전형료 책정은.....

● 서수웅 위원

산출근거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그대로입니다.

● 서수웅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예술고등학교가 만 4,000원씩 1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 입학전형집행규칙 1998년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424호에 따르면 예술고등학교 전형료는 만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만 4,000원으로 이렇게 했다면, 규칙이 그 동안에 바뀌었는지 아니면 규칙에 있는 금액을 잘못 알고 산출 근거를 삼은 건 아닌지 요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확인이 안됩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이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만일에 이게 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걸 만 4,000원으로 해서 받았다면 아이들에게 잘못 받은 게 되기 때문에 많고 적

고를 떠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요거는 반드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전형료징수규칙 424호입니다.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제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7쪽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내역 중에서 부지조성공사 지연에 따라서 서청초등학교 토지매입비 잔금 10억원을 사고이월 했어요. 그랬다가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잔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약상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혹시 없었는지, 10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거 이자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요 문제는 청주시교육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있지 않아요 그러면 1년씩 지연됐다가 다시 지금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가서 여쭙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청주교육청 관계관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청주교육청 재무과장 김흥권

청주교육청 재무과장 김흥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청초등학교 부지공사는 2007년 12월 31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2008년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동절기 그런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저희가 3월초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조건에 지연상황에 대한 이자부담 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대로 잔금만 4월 10일 지급 완료했습니다.

● 서수웅 위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 청주교육청 재무과장 김흥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8쪽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월과 관계된 거라서 이런 문제만 보면 자꾸 의심이 가요. 걱정도 되고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거나 불용액이 과도하게 남은 경우에 왜 그런지 늘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결산서를 보게 되면, 그리고 2007년도로 다시 사고이월시킨 것도 있는데 이월했다가 다시 이월하고 이런 것이 생기는 이유가 아까 사

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갈 듯도 한데, 매년 이런 게 생긴다는 것은 예산편성 때서부터 많은 주위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들이 보면 삼양초등학교 잔디운동장조성 건이 그렇고 영동초 운동부 샤워실 및 탈의시설, 명덕초 운동부용 샤워 및 탈의시설 이런 것 등등 대표적인 것 눈에 띄는 것만 보면 청산중 운동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도 있었으면 속시원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국고로 늦게 12월이나 11월 달에 예산이 오는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넣으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때는 아예 사업이 구상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설계가 안됐다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단 채용만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첫 해 연도는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명시이월을 가지고 익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그 사업을 진행해서 당해 연도에 끝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해 가지고 도내에 보조금이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다든가 아

니면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토지를 구입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던 장소가 이전되어 가지고 부득이 어려움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그 익년도에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가장 염려되는 것은 명시이월 됐다가 그 익년도에 사업을 집행을 하지 못하거나 계약이 성립이 되지 못하면 그 예산은 다시 반납 내지는 불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된 내용은 명시이월을 했던 사업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가 집행되고 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글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 이런 서류를 접할 때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채근을 하고 해서 최소한도 명시이월 그 당시에 사업은 종결짓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이거 전액 불용액 처리되는 것을 보면 이걸 정말 과정에서 너무 신경을 안썼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앞으로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런 사업들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집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결산서 560쪽, 562쪽, 563쪽, 568쪽,

692쪽에 관련된 제천여고 시설사업 이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천여고 시설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2007년도 당초 예산에 강당 및 지붕방수 6,294만원, 급식실증축 5억 6,967만원 총 6억 3,261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별관교사 대수선비 6억 992만 5,000원, 운동부 휴게시설 3억 3,570만원, 공동사택신축 5억 9,550만원 총 15억 4,512만 5,000원으로 이렇게 계상되었었는데, 결산서의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중 제천여고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3개 사업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되었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제천여고 화장실 보수공사 1억 9,250만원은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다가, 또 2008년도에는 화장실 및 방수공사 2억 3,200만원으로 사고이월 되는 등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제천여고 공사현황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사업별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여고 운동부 휴게시설은 2007년도 1회 추경에 3억 3,570만원이 서 있고 공동사택 1회 추경에 5억 8,988만 4,000원이 서있었습니다.

그 사업발주가 2007년 6월 4일부터 10

월 4일까지 설계를 하고 공사기간이 2007년 12월 10일부터 금년 5월까지 공사기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6일에 사업을 통합 발주하다 보니까 연도 내에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보수가 2006년도 2회 추경에 1억 9,250만원, 급식소증축이 2007년 본예산에 5억 6,59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도 2회 추경하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이월사업하고 2007년도 본예산에 들어있는 사업하고 통합해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 정무 위원

사정이 있어서 다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개년씩 이렇게 이월되는 거는 뭐라고 할까 집행청의 관심이 작다고 할까 열의가 없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월은 대개 몇 년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명시이월은 1회에 한해서 명시이월할 수 있고 재 이월은 안 되고 또 사고이월은 물론 횟수제한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 사업비를 한꺼번에 한 학교에 중

합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마다 이렇게 쪼금쪼금 재원을 부담 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왜 그러나 하면 2006년도 12월 달에 2차 추경은 거의 도의회에서 12월 한 20일 쯤 통과가 되기 때문에 2007년도 본예산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할 때 집행청에서는 그거를 2006년도 12월에 2차 추경분이나 2007년도 본예산이나 같은 대개 공사의 업자한테 통합 발주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연도는 12월 달에 통과된 예산이 그냥 며칠 사이로 1개년을 지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 것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양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저희들이 의존 재원이 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오는 경우에 부득이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됐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이 다시 또 사고이월 댔다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일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12월 달 마지막 추경 때는 시설비를 적게 넣으면 하는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학생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본예산이 저희들이 보통 9월 달부터 벌써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본

예산에 들어간 이후에 부득이 시설을 다시 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마지막 추경인 한 11월, 12월 달쯤 보통 교육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때 한 두 달 차이 시차가 있는 동안 발생하는 시설지원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제천여고 한 학교만 해도 사업이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많은데 되도록이면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또 그 다음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업을 너무 많이 벌여놓고 일을 못하고 자꾸 이월시키는 것보다 매듭을 지어가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681쪽 성질별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사유로 7,719만 1,000원이 발생하였는데 2006년도에는 6억 4,995만 1,000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무려 5억 7,2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찌 많이 감소되었는지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입니다.

예산절감사유로 발생한 불용액이 2006년도 대비할 때 현저히 감소한 이유는 2006년도에는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한 예산에 대해서 5%의 절감률을 적용해 가지고 절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는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본예산에 대해서 5% 절감률을 정하고 2회 추경할 때 절감액을 전부 깎아 가지고 다시 또 편성한 바람에 그 바람에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액이 줄어든 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 정무 위원

이제 해에 따라서 금액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교육위원 김병우입니다.

먼저 우리 귀한 교육예산을 알뜰하고 요긴하게 쓰려고 애쓰신 집행청 간부님들과 일꾼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쪽, 15쪽 세입관별 비법정전입금 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이 11억 5,500여 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걸 심의할 때 작년에 참여를 했었고 금년도에도 서면결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11억 이 액수는 없는 것보다야 낮지만 사실 작년 심의할 때도 꼬끼리 비스킷으로 저는 아쉬움을 표시했었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규모가 2조가 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11억은 정말 %로 따지기에 너무 빈약한 그런 액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마저 다시 줄어 가지고 10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서면결의 때 제가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미안하지만 부표를 던졌습니다.

그마저 안주는 것보다야 고맙긴 하지만 그렇게 주려면 주지 마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아쉽고 서운했던 것은 우리 도지사께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강도를 표방을 하시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나 관심도 적지 않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정성이나 성의가 이 정도인가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담당관님

이나 또 우리 도에서 나가 있는 협력관님 말씀은 도지사께서는 교육감님이 하실 수 없는 사항 중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다, 또 그리고 예산절감 중앙정부의 요구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하실 수 없는 일 중에는 뜻이 있으나 또 꼭 필요하나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치단체의 관심이나 지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인재양성기금 1,000억을 말씀하시고 그 외에도 학교급식관련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물론 그 인재양성기금 1,000억도 다른 시·도에는 없는 대단히 큰 규모의 교육재원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산 중에서 자기주머니를 털어서 어떻게 교육부문에 투자를 늘리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돌려주십사,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정말 필요하나 재정이 충분치 못해서 지원을 요하는 부분을 늘려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면 공교육예산은 거의 고르게 나누어서 배분이 되는데 지

방자치단체의 관심에 따라서 또 그 재정 형편에 따라서 지역별로 교육환경의 격차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의 보도에는 그게 만 5,000배 차이 물론 액수 대비입니다만 금액 대비입니다만 만 5,000배 정도의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교육경비지원액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그것을 서로 비교하는 수치가 기준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나 또는 시·군에 총예산 대비 점유율을 따지더라고요, 교육부에 가 보니까 그런 통계를 매년 내고 서로 비교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대비 점유율을 따져보고 다른 시·도의 점유율과 비교를 해 보니까 역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시기도 하셨던데요.

지금 관계 법령에서는 시·도세나 시·군세 세수 대비 점유율을 따져서 이렇게 비교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준치대로 서로 대비하면서 어느 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가 높은가 이거를 서로 비교하던데, 우리 집행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저쪽 도지사님이나 저쪽 관계관님들한테 구체적인 근거

를 통해서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가 덜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협력관님께도 제가 그 수치를 한번 조사를 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이 부분의 투자가 좀더 늘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당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15쪽에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도 농촌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현황이 시·군별로 나와있는데, 예산하고 비교하니까 실질 지원액이 못 미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제천은 한 272만원 정도, 옥천은 116만원 정도, 진천은 66만여 원 이 정도가 애초 예정한 예산액에 못 미쳐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혹시 그 내역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입니다.

이 제천, 옥천, 진천 삼천지교를 뺀 세 개 시·군에서 당초 예산대로 전액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사후 집행 정산하는 과정에서 세입에서 나

중에 반납액을 그만큼 되돌려 줘 가지고 이래서 사실상으로 예산상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 김병우 위원

다행입니다.

사실 우리 도 광역단체도 그렇지만 특히 각 시·군에서는 군수님들을 비롯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역시 그런 부분을 확인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51쪽, 55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용한 내역이 나오는데 통폐합학교 여건개선사업 그리고 기간제 교사와 일반직 대체인력 수요증가로 인해서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를 전용했다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요거는 사실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르면 전용대상이 될 수 없는 항목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예산총칙이나 이런 데 보면 인건비나 시설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가 없고, 또 그 목적 자체는

지나치게 인건비를 많이 쓰거나 시설비를 예산에 승인해 준 대로 쓰지 않고 집행청에서 임의로 늘려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인건비에서 인건비로의 전용 또 시설비에서 시설비의 전용 이것이 물론 사업 자체가 어떤 시설에서 없었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는 것은 잘못되지만, 일반적으로 시설비와 시설비 사업간에 약간의 부족부분의 전용은 인정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상급관청에 확인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그걸 조금 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용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전용이 되기 이전에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편성을 해서 예산심의를 잘 받아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다소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이것이 큰 무리가 있다거나 외부소지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왜냐 하면 인건비에서 인건비로 했거나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1쪽에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정보화지원으로 국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PC지원을 300대 하려고 했다가 전액 불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2007년도에는 교육용PC 300대, 150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00대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고PC 반입 불허로 반테주교육청에 PC지원을 하지 못하였으며, 현지방문연수는 초·중등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반테주교육청의 연수경비 또 인도네시아의 연수생에 대한 출장비 약 905만원 정도, 또 펜티엄4급 PC지원 요구 이런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거기 2,799만원이 PC 300대 대금인가요?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 PC 300대라는 것은 중고PC입니다. 중고PC를 보내 주는 것이고.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물량 지원하는 것은 수집하다가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예산 드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일자리운동본부에 보내서 거기에서 수리를 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개발도상국경비는 방문연수경비 또 원고료, 교재인쇄 그 다음에 강사수당 이런 돈입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작년에 2,799만원이 작년 당초 예산에서 2,399만원 그리고 추경에서 400만원 그게 연수비더구만요, 그렇죠.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연수비입니다.

● 김병우 위원

방문연수비, 거기 가서 초·중등학교 선생님들 몇 십 명에게 연수시켜 주는 경비요?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근데 그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어 가지고 안썼다 이런 말씀하십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예,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럼 그건 안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사업이었나요?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게 서로 간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방문연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것이 그 사업이 교육부 중점사업이었고 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사업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안하는 해가 있어도 되는 그런 사업이었나요?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MOU사업은 MOU사업인데 MOU라는 것도 쌍방 간에 서로 협의가 되어서 동의가 됐을 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연수생에 대해서 출장비를 달라 우리 한국에서 한국 돈으로 인도네시아 연수생에 대해서 출장비를 달라는 거죠. 또 펜티엄3급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4급 PC를 달라 또 연수경비를 달라 이렇게 예상외의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도 서있지 않고 해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건 그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교육부에서도 그걸 이해를 하고 양해를 했습

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끝까지 인도네시아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됐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근데 그랬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또 들어있대요. 더 큰 규모로 들어있대요.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3월서부터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여러 번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해 가지고, 올해는 지금 초청연수 하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양쪽에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현실성 있게 잘 할 수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올해 부분은 내일 추경할 때 또 한번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몇 배로 더 커져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그렇게 불용까지도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어찌 갑자기 확대가 되는가 하는 것은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그건 내일 물어보겠습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올해는 그쪽에서 초청연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초청연수로 줄기를 잡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거 내일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는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수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교육위원 서수웅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규칙을 제가 받아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조금만 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술고등학교는 추천제 내지는 내신제 고등학교입니까? 아니면 선발고사 고등학교입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예술고등학교는 단독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응시를 하는데 선발방법은 내신제 성적과 실기고사 성적을 병행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걸 암만 읽어봐도 만 4,000원 이라는 금액이 나온 게 내신제 고등학교 수험생이 전형료가 3,000원이고 여기 실기검사료가 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저같이 오해를 안받게 하려면 예산서에 3,000원과 만 1,000원 합쳐 만 4,000원이 명기가 되어야 돼요. 만 4,000원이라니까 얼른 봐도 만 1,000원인데 이상하다 오해했는데, 제가 조금 경솔한 것 같은 질문을 드려서 미안하다는 사과도 드리고 아울러 집행청에서도 이런 오해가 없다고 서류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김중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서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게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서 작성에서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청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4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내에 순회코치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

[제217회-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코치 임용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종목별로 인원을 알려주시고,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
향후 증원계획이 있다면 어느 종목에 몇 회를 선포합니다.
명을 증원하실 계획인지 그 자료를 하나 감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김부웅,
위 원곽정수, 김병우, 서수웅, 정무.

○ 출석공무원 : 9명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희,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6월 26일 (목요일) 13시 59분

議事日程 (제21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시 59분 개의)

● 위원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심사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세출예산안을 소관구분 없이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계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잠시도 쉬지 못하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은 교육복지증진 교육여건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외국어교육강화, 교원의 전문성제고,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을 통해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하여 수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여 다시 한번 집행청 관계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추경예산안 75쪽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업무입니다.

교육복지 우선투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청의 프로젝트조정자 비정규직 보수에 퇴직적립금 1명분 310만 4,000원 계상하였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된 95만 6,000원을 포함하면 퇴직적립금 총 계상액은 406만원이 된 셈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내지 제11조에 의거 계속 근무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청주교육청 프로젝트조정자의 경우 당초 예산 인건비 1,146만 6,000원에 2회 추경 인건비 1,205만 7,000원을 합하면 2,352만 3,000원입니다.

총 인건비 2,352만 3,000원을 12분의 1로 곱하면 196만 1,000원의 퇴직금이 산출되는데 406만원은 196만 1,000원에 비해 과다 계상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상하였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입니다.

정무 교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퇴직적립금의 경우 월평균급여 190만 2,000원에 계상했어야 하나 2006년과

2007년도분 퇴직금이 지금 미적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215만 8,000원이 되고요. 그걸 플러스해서 2008년도분 190만 2,000원해서 총 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정무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119쪽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영어소통능력 신장을 위하고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의 질 해소를 위하여 기정예산 51억 4,114만 7,000원 대비 165.9%인 85억 2,979만원은 2차 추경 계상하여 의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 질문드리겠습니다.

122, 123쪽을 보면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으로 청주교육청에 4,600만원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4,800만원씩 균등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운영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그 내역을 보니까 영어캠프 운영 학교 지원 아니면 영어캠프 위탁연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영어캠프학교 운영에는 4,800만원을 그냥 전액 지원한 데가 보은하고 단양교육청이고, 영어캠프의 위탁연수를 했는데 보면 대개 하루에 4만원씩 10일간해서 120명을 전액 위탁한 데가 옥천, 청주, 영동교육청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

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방학중 영어캠프운영비는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시·군별로 돈을 배정을 하면 시·군별 지역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는 4,600만원 다른 시·군은 4,800만원 이렇게 청주가 더 적은 이유는 본래 취지가 농촌지역을 더 지원하고 도시지역은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원어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농촌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청주지역을 더 적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 영어캠프는 지역별로 대상인원이나 실시하는 방법이나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학생이 장기간 영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물론 농촌지역을 위해서 농촌위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청주교육청을 다른 데보다 배는 못 줘도 똑같은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보다도 훨씬 작게 준데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캠프를 연수위탁을 한 교육청이 세 군데

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교육청에서 뭐를 영어에 대한 잘해 보겠다는 의지보다는 그냥 영어캠프로 넘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교육국장 김종근

전부 외부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교육청처럼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부터 위탁이 좀 줄어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그리고 120쪽 우수영어수업발표회 사업비로 1억 3,1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재비는 700부인데 식비나 숙박비 인원을 보면 300명입니다. 왜 교재 인쇄한 700부하고 식비, 숙박비 인원 300명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우수영어수업발표회는 임해수련원에 가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만드는 기회에 좀 여유 있게 만들어서, 영어수업을 하는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보급을 하자는 취지에서 참여인원하고 교재발간 부수가 다릅니다.

● 정무 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발표회니까 그 발표회 할 때 참여하는 인원만 주면 되지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까지 생각해서 만들어줬다는 건 좀.....

● 교육국장 김종근

여기 교재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한 사람씩 오면 학교별로 대개 영어가 2명 또는 3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영어교사들에게도 다 돌아가도록 배부하는 숫자입니다.

● 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원어민팀티칭 매뉴얼제작비 해서 1,912만원을 계상하여 매뉴얼 인쇄를 700부씩 4종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그 매뉴얼을 인쇄를 해 가지고 700부 4종을 바로 인쇄해서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활동한지 꽤 오래 됐지만 원어민과 팀티칭을 할 때 특정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이 없으니까 원어민이 바뀔 때마다 또 담당 영어교사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

전년도에 뭘 배웠는지 어디까지 배웠는지 잘 나타나지를 압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매뉴얼이 필요하다 교재 자체 개발이 어려우면 빨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사가 바뀌더라도 수업을 수준에 맞추어 잘 진행해나갈 수 있게 연속적으로 해결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를 한 바가 있으나, 교육부에서 아직 거기까지 작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도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년단위로 배워야 하는 영어코티칭을 할 때 원어민과의 코티칭을 할 때에 배워야 하는 내용, 수준 이런 것을 제시해 주고, 코티칭을 하는 영어선생님들에게 전원 배부해서 일과시간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정무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원어민한테 교재 같은 걸 주었나요?

● 교육국장 김종근

지금까지는 담당 코티칭하는 선생님과 원어민이 상의를 해서 이번 학기에 뭘 배운다 이렇게 각자각자 구성을 해서 해왔습니다.

● 정무 위원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 교육국장 김종근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 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장학생프로그램 운영으로 7억 1,55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추경이 확정된다고 해도 그 시기와 관련하여 8월부터 시행이 그럼 가능한가요?

● 교육국장 김종근

영어봉사장학생프로그램은 우리 도 자체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특교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장학생 외국에 있는데 원어민을 교섭해서 들어 와야 되고 또 거기에서 봉사하는 도우미대학생을 선발해야 되고 해서, 요것이 빨리 되면 8월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9월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금년에 9월이면 9, 10, 11, 12,.....

● 교육국장 김종근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우리 8월 한 달간은 사전연수기간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전연수를 하고 우리가 9월부터 이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정무 위원

8월부터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8, 9, 10, 11, 12 한 5달 정도.

● 교육국장 김종근

내년 2월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 정무 위원

그러면 8월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한 7개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건강보험료, 주거 지원비를 11개월로 편성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7개월 해도 충분한데 11개월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요 사업을 들어오는 원어민을 6개월 단위로 계획을 안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전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2월치 보험료 등을 계상하게 됩니다.

● 정무 위원

그러니까 7개월만 임용을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11개월치만 산출한다.

● 교육국장 김종근

아니 사업 자체가 내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 정무 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 예산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 교육국장 김종근

예,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내년 2월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했지만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 정무 위원

계속 건강보험료가 뒤로 밀려나가겠네요.

● 교육국장 김종근

네

● 정무 위원

121쪽 맨 위에 보면 사전연수가 있습니다. 사전연수에 있어 식비는 7일로 해서 2회로 강사수당 5일해서 2회로 이렇게 했는데, 그 차이는 왜 나는 건지 식비하고 강사수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영어봉사장학생을 교과부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숙소에 투입하고 바로 그 날 연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튿날부터 연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날짜의 차이입니다.

● 정무 위원

그러니까 오는 날하고 가는 날은 밥만 먹여 보내고 강의는 안한다 그 얘기죠.

● 교육국장 김종근

예

● 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우미활동수당을 11개월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우미활동수당을 꼭 줘야 하는 건지?

● **교육국장 김종근**

도우미는 우리 국내 대학생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교과부에서 1인당 50만원 정도로 이렇게 정해서 전국이 똑같이 실시하게 됩니다.

● **정무 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 말하자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성질이죠.

● **교육국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 **정무 위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에 있어 2,11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14일 동안에 37명을 문화체험을 위한 입장을 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입장을 합니다. 입장료를 14회 계상하였고 입장하는 것이 내내 문화체험인 것 같은데 또 체험학습비라고 해서 또 4회 별도로 또 버스는 매일 14일 동안 대절하였는데, 이렇게 저는 예산서보고 이게 영어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관광사업을 위한 사업인지 약간 혼동될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그 프로그램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외국에서 대학생을 초청을 해서 오는데 여기 문화체험은 외국에서 오는 원어민 학생들에게 주말에 한국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주말에 활동할 수 있도록 경비를 마련하는 겁니다.

● **정무 위원**

그런데 이게 14일 동안 매일 차 대절해서.....

● **교육국장 김종근**

요게 1년 동안에 주말을 따져서 14회로 계산한 겁니다.

● **정무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어제 이상일 위원님께서 순회코치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순회코치인건비에서 본청에 2명분 1,6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순회코치는 학교에다가만 두는 건지 알았는데 본청에 배치하는 이유와, 본청에서 만약에 그 순회코치가 하는 일이 무엇지 업무가 무엇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순회코치는 도내 육상종목과 수영 선수들이 합동훈련을 할 때 전담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우수선수 학생들만 뽑아서 합동훈련 할 때 전담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평소에는 육상과 수영종목 순회코치가 없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순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무 위원

그러니까 학교도 나가서 지도도 하고.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소에는 일선 학교에 순회코치가 배치 못된 학교에 가서 코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합동훈련 할 때는 전담으로다가 우수선수 아이들을 지도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정무 위원

순회코치가 없어서 찢찢때는 학교가 많은 것 같은데.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많이 있습니다.

● 정무 위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지금 현재 저희 464개교에 626종목 지정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1월 현재 130명의 순회코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번 추경에 13명을 증원해서 기본종목, 정책종목, 다관왕종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는 운영을 할까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지정종목을 준 학교가 많은데 순회코치를 줄 때에 어떤 조건이 돼야 순회코치를 주는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우선 지정종목을 저희들 본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육상, 수영, 체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종목.

두 번째로는 정책종목인 역도, 톨러, 싸이클 등 이런 종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관왕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다 우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이제 순회코치가 없어서 애를 먹는데 말하자면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자면 과장님 입장이나 도에서 보는 입장에는 유망한 종목, 요 종목은 순회코치를 주면 금메달 따오겠다 하는 종목을 우선 줄 것 아니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맞습니다.

● 정무 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서 막 의욕적으로 선수를 양산하는데 코치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꼭 필요한 학교에 순회코치를 주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없다고 옛날저도 학교에 근무할 때 보니까 지정종목을 하고 있는데 하고 싶는데 순회코치를 안주는 거예요, 달라고 했더니 금메달 따오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따와야 주는 건지.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려는 학교에는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가능한 한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원래 코치가 부족해 가지고선 기존 찾던 학교가 시원찮다고 해서 코치를 바로 빼돌리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되도록 많은 순회코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에서 우수신인선수육성 사업 중 선수교과지도비를 2,10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신인선수육성 사업이라는 것은 금년에 처음 추경에서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수한 기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학력저하보다 선수들이 운동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능이 아주 우수한 아이가 신인선수로 발굴됐을 때는 그 아이들한테 학력저하방지를 위해서 운동 후에 방과후에 운동 다 끝난 다음에 두 세 시간씩 보충학습을 시켜주어서, 학력저하가 되지 않고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청구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학부모가 체육선수 만드는 걸 기피하는 현상이 애들이 운동만 하고 공부를 안하니까 체육을 해 가지고 성공을 못하면 애가 아주 바보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한테 보충학습이랄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셔서 운

동만 하고 공부 못한다 소리를 안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 코치 포상금을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급대상인원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지급금액을 증가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입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까지 저희들이 금메달을 따면 코치들한테 100만원을 주고 은메달을 따면 60만원을 주고 그 다음 동메달을 따면 30만원을 지급하고 단체경기엔 두 배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치들 포상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대단히 적습니다. 코치들 사기양양책으로다가 열심히 하는 의미에서 포상금을 대폭 확대한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정무 위원

알았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55쪽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항목에서 방과후학교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나는 것을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청주시는 많고 또 군세가 약한 데는 작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시·군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게 어떤 산출근거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데 받고 못 받고 그 차이인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윤병준입니다.

서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은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지자체 대응투자와의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비를 지원으로 농산촌지역의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운영에 지자체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 대응투자 사업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다시피 청주시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촌이 포함된 충

주를 비롯해서 10개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별 균등액과 그리고 학교수와 학급수를 고려해서 사업비를 지역별로 70%를 확정해서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응투자 소요 최소 요구액을 설정했습니다. 그 한편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지자체 대응투자비 순으로 잔여사업비를 차등 배분한 것이 30%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시·군간에 차이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럼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요구를 한 금액이란 말이죠.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지자체에서 넘어온 돈과 시·군 교육청에서 요구한 돈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줄 수는 없고 우리가 학교수라든가 또는 학급수 그리고 지역별 균등액 이거를 해서 70%를 환산했고, 또 나머지 30%를 대응투자 최소 요구액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자립도가 10%인데 15%인데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약간 차등을 두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 서수웅 위원

그게 얼른 이해가 안가는 게 청원군 같은 경우는 음성군의 3분의 1도 안되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부연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산촌 방과후학교 공모를 할 때는 최소한도 요 정도는 대응투자 하라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기준을 제시해서 우리가 1 대 1로 대응투자 이 정도 하겠다 그랬는데,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더 이상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걸 봐서 우리가 또 다시 인센티브로 지원 잘하는 데는 조금 더 주는 지원을 덜한 데는 적게 주는데,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기준을 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해당 지역의 학급규모, 학생수를 비례해서 산출을 해서 순번을 정해서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이거는 세입이니까 예를 들어서 음성이 3억 4,000만원 들어왔다면 청원군은 1억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응투자에 비례해서.....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청원군은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입

니다. 지금 현재 2차 추경이고 1차 추경에 청원군은 2억이 확정이 됐고 추가로 1억을 이번에 청원군에, 나머지 여기 없는 시·군은 이미 1차 추경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먼저 추경해 준 데가 있고 여기에 제시된 것은 지자체에서 늦게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는 할 수 없이 한 단계 늦은 2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서수웅 위원

좋은 의미에서 보면 경쟁적으로 더 지원할 수도 있겠고, 여기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방교육청에서도 더 노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에

● 서수웅 위원

그 다음에 83쪽 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인데 교원능력개발평가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학교 교원평가 시범학교 지원경비죠.

그런데 이게 어찌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추경에 들어가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평가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학생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리고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자기 발전의 기회를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도에는 초·중·고 27개교에 선도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교과부에서 5월 27일날 1차 추경 후에 늦게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33개교로 확대 운영하면서 2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런데 제가 일선에서 학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벌써 한 학기동안 연구가 진행됐잖아요. 그동안에 써야하는 경비가 상당히 있었는데 애로 사항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 들어간다고 해도 도의회 승인 받고 하면 2학기 때나 지출이 가능한데, 모 교장선생님이 참 열의 있는 교장선생님이죠 이거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도 교원개발능력평가에 관해서 선생님들 연수를 좀 해야 되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경비지출이 난감하다, 그런데 사전 어떻게 다른 경비로 지출하고 이렇게 이것이 예산이 배정된 다음에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없는 겁니까? 걱정하는데 전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추진되는데 금년도의 교원능력개발 선도학교는 미리 이렇게 특교를 주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일체 편성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요런 현상이 우리 교육활동 3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오늘 연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방과후학교도 3월부터 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 돈이 얼마가 올 줄을 모르고 이런 게 확실치가 않아서 저희들 본예산 미리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 방법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국장님 말씀은 상황성이나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장이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어제 제가 만났는데 추경에 올라온다는 소식은 벌써 누가 전해줬다고 그러데요.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당장 지금까지 쓸 것도 못쓰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써야 한다고 그러면 요거 편성됐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경비로 쓰던가 학교장 재량으

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는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답변할 자료를 주실 분이 있냐고요. 방법이 없나요?

● 교육국장 김종근

학교예산을 돌려쓰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그건 연구를 해서 알아보고 기본적으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급적 빨리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이게 안타까움이 실제로 있는가봐요. 연구담당자가 자꾸 얘기를 한데요, CD를 만들었다, 예전에 보고회를 뭘 발표를 했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다른 예산 같으면 이렇게 돌려쓰고 다시 추경에서 바꾸고 학교에서 하면 될텐데, 요거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목적으로만 써야 해서 다른 예산을 썼다고 해서 값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래서 글썄 답변을 못하고 답답해서 이런 기회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내년부터라도 이런 목적성경비가 이렇게 늦춰지지 않고 일찍 본예산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

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렇죠.

● **교육국장 김종근**

노력하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아니면 추경을 빨리 해 주던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 요건 제가 조금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에서 여기 보면 합숙형연수경비로 2억 3,400만원 사이버연수경비로 1억 2,24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 보면 합숙형연수경비는 1인당경비가 1,300만원이고 사이버연수경비가 1인당경비는 680만원이에요.

그런데 차이나는 것이 합숙형은 많더라도 실제로 가서 합숙을 한다니까 몇 개월 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사이버연수경비가 이렇게 쓴 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 듣고 싶은데요.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기본적으로 양해말씀 드릴 것은 여기 두 가지 항목이 원래는 연수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 이렇게 되어서 외국으로 어학연수 가는 게 주 포인트처럼 되어 있는 것이 편성항목을 잘못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에 가는 현지 어학연수가 주목적이 아니라 국내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 중에 외국으로 가는 과정이

일부 들어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숙형연수는 교원대학교에서 실시하는 6개월 과정의 영어교사 집중연수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각 시·도에서 교육감이 추천해 보내서 실시하는 연수이고, 그 다음에 사이버연수는 국내 사이버연수 전문기관 사설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수경비입니다. 선생님들이 희망하면 우리가 적정인원을 추천해서 연수경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과정 중에 외국연수를 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이버연수를 재택연수를 하다가 방학동안에 집중적으로 연수생들을 모아서 외국연수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여기 현지 어학연수에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린 교원대에서의 연수도 연수기간 중에 한 달 동안 외국연수를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국연수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여기 편성이 됐습니다.

● **서수웅 위원**

교원대에서 하는 것은 외국어연수가 이해가 가는데 사이버형연수도 이게 외국어연수입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외국어 영어과 연수입니다. 지금 잡고 있는 것이.

● 서수웅 위원

외국어과가 사이버로 해서 그렇게 실효가 있나요?

● 교육국장 김종근

그걸 오히려 더 권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이버.....

● 서수웅 위원

쌍방향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하는 연수가 되나요?

● 교육국장 김종근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 서수웅 위원

얼핏 생각할 때 어학이 사이버로 한다는 게 그렇게 실효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그럼 거기에서 사이버연수에서 요거는 외국에 연수하는 경비이다 사이버연수 하는 기간 동안에 외국에 가는 경비가 있다.

● 교육국장 김종근

사이버연수기간 중에 일정기간은 외국으로 모여서 갑니다.

● 서수웅 위원

이것만 보면 사이버연수 하는데 무슨 경비가 들어가나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의 연수기회가 있다 그건 이해가 되고요.

사이버로 과연 이게 얼마나 연수가 실

효가 있는 건지 제가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얼른 이해가 잘 안가서.

그 다음에 149쪽 되겠습니다.

어저께 사석에서 조금 궁금증을 얘기했던 분야인데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에서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인도네시아에 중앙정부의 중고PC를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거기서 거부했다면서요?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작년 상황을 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런 상황인데 사업이 중단되고 필리핀에다가 재활용PC하고 프로젝션TV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인도네시아연수단 초청연수 및 인도네시아 반텐주지사 교육감 초청 등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추경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네, 그렇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런데 주는 것도 안받는 우리가 배울 것도 많지 않은 나라에 뺨 맞아가면서 자꾸 줄 필요가 있느냐 기분 나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소견머리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번에 유럽연수 우리 위원님들이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도 기분 나빴어요. 저희보다 못산다고 푸대접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관 방문하려면 돈 60만원 내라, 우리 돈주고 방문하고 왔어요. 돈주고 방문하는데도 커피 한 잔 주는 놈들 없어요. 또 정장하고 나와서 어서오십쇼 안내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줘서 싫다는 놈들한테 그거 싫으면 이거라도 가져가라 이걸 연수해서 돈줘야 되는가 이게 기분 나쁘더라 말이죠. 잘못 생각한 건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어떤 배경이나 제가 이해해야 할 그런 어떤 설명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면 돈을 내고 학교 방문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문화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문화의 차이도 있고 또 아직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차이가 있고,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정보화지원을 교육과학기술부 중점시책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중고PC를 안받는다 이걸 중고PC 불허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

게 된 겁니다, 작년부터.

● **서수웅 위원**

그 나라 방침으로.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정부에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고PC 재활용PC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3월서부터 6월까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인도네시아하고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양측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9월 4일부터 8박 9일 동안 인도네시아연수단 20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체험도 하고 컴퓨터연수도 받고 이런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숙식을 하고 그 장소에서 연수도 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교육기관도 방문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IT강국으로서 선진국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교육인프라 지원을 통해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교육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
가의 교육정보화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
고, 경험공유를 통해서 정보격차를 해소
하고 공동발전을 위해서 개발도상국 교육
정보화 지원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
각을 하고,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서두에
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점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물론 타
시·도도 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개 시·도 중에 지금 현재 14
개 시·도가 초청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청연수 하는 것으로 해
서.....

● 서수웅 위원

같은 국가를요?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시·도교육청별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인도네시아하고
2005년 2006년 교류를 했고 PC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 현장에 가서서 교육감님께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
서)체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이 되어야 된다
고 봅니다.

● 간사 김부웅

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조금
의견 좀 낼까요?

● 서수웅 위원

예,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 간사 김부웅

같이 의견 좀 대볼까요.

● 서수웅 위원

네

● 간사 김부웅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연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소득 2만불 아직 덜 됐습
니다만 6만불, 7만불 이상 되는 그런 나
라를 가보니까 외빈을 맞이할 때 방문비
를 받아오 오히려 우리에게, 그리고 방문
기간 중에 정말 차 한 잔 대접하는 게 없
습니다. 슬리퍼 바람으로 나와서 보려면
봐라 이 정도입니다. 그래 참으로 기분이
언짢고 굴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하자면 자세를 낮춘 우리가 가서 연수
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는 우리한테 코 좀 높여야될 건데 이
게 못사는 나라는 못사는 나라대로 우리
중고는 못 받겠다 연수비 다 대다오 이러
고 오는데, 그래서 못사는 나라는 못사는
나라대로 우리가 낮추어서 예의를 갖추어
야 되고 잘사는 나라는 잘사는 나라대로
또 가서 예의를 갖추어야 되고 그래야 되
는가 싶은 생각에 어제 한번 들었었습니
다.

우리가 예의를 잘 갖추어서 정성을 다 해서 맞을 준비를 하는 게 또 용승히 대접하는 게 나쁠 건 없지만, 의례히 우리가 하는 정도라면 정말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외빈 누가 온다고 그러면 며칠 전부터 학교가 전체가 다 뒤집어지고 교육기관 다 뒤집어집니다. 그걸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배부른 이런 연수 달라는 사람 정말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취지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방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념품까지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저도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간사 김부웅**

예, 말씀하세요.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인도네시아 관련은 제가 작년에 부임한 이후에도 몇 가지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선 PC반입을 불허하는 국가정책 때문에 우리가 PC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연수는 좀 와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런 요청이었는데,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연수경비 심지어는 거기 선생님들의

출장비를 부담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부담하면서 교류할 수는 없다 해 가지고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쪽에서 출장비까지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안된다 그래도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간절히 요구하는 것은, 그 나라 나름대로 가난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사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못사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건 문화적 차이도 있고, 한국형이 미래사회에 더 바람직한지 지금 복구의 스타일이 더 바람직한지 일본의 스타일이 더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왕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나 지금 국장님 말씀에서 문화의 차이로 이해할 부분은 많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서로 볼 때에 오히려 그런데 마음이 끌리는 것도 인지상정이긴 한데 본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

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육정보화지원 초청연수비로 4,721만원 계상했죠. 당초 예산에 편성된 개발도상국 정보화지원 방문여비는 1,63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당초 예산과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당초에는 방문연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라는 것이 작년도 8월에 잡았기 때문에 방문연수를 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할 경우에 그 지역의 선생님들의 숙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거기에서 제공을 받는 거죠.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초청연수를 하게 되면 8박 9일 동안 숙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고 교통비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이 교과부에서 중점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료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공료까지 부담해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4,000만원을 들여서 이다

음에 4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려운 점이 계시고 염려하는 점은 있지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궁금한 해서 물어본 거구요.

그 다음에 필리핀 교육정보화 지원방문 사업비로 2,664만 5,000원 계상했죠. 사전답사 방문여비 편성단가는 189만원 그 다음에 MOU체결 방문여비 편성단가는 249만 5,000원이죠.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은 필리핀 교육정보화 지원방문 사업비 중에 사전답사방문단은 장학관 1명, 장학사1명 2명으로 4박 5일 동안입니다. 이것은 4박 5일이고 MOU체결 방문여비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7명의 방문단이 6박 7일 동안 방문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또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 위상이 계시기 때문에 등급이 다르고 출장비 기준이 다릅니다.

● 서수웅 위원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아시겠지만 충청북도교육청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

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시죠.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예, 알고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사업들은 그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지 안얻어도 되는 건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규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벵겟(Benguet)주의 코딜레라(Cordillera)교육청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벵겟주 바기오(Baguio)시의 교육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교육청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 서수웅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 간단하게 여쭙보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을 할 때에 학교운동부 훈련시설 확충 그 항목에서 거기에서 보면 5억원 미만인 그런 사업에는 감리비를 먼저 예산에는 전부 삭감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부 5억원 미만인데도 감리비를 전부 다시 또 계상을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예산은 여기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고 그거는 학교로 직접 가도록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이것보다 증액이 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리비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서수웅 위원

먼저 본 예산심의 때와 같은 심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 서수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개선시설에서 초·중·고등학교 냉난방개선사업에서 실당 100만원 편성단가를 한 기타교실은 전부 단가로 100만원씩 산출했는데, 그렇게 100만원씩 편성단가를 계상한 기타교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212쪽에서 보면 개신초등학교도 그렇고 남평초등학교도 그렇고 기타교실은 전부 100만원씩 계상했는데.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기타교실에 100만원씩 편성한 단가는 보통교실 이외에 교실에 향후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간선시설을 하는 비용입니다. 미리 간선공사를 할 때 대비해서 그 간선공사까지 하기 때문에 그 100만원 가지고 시설공사 한 것입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러면 기타교실이라고 써야 되나요?

● 시설과장 안세열

지금 우리가 냉난방대상으로 하고 보통교실 위주로 하고 있고 기타교실은 보통교실 다 끝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선공사 할 때 한꺼번에 전부 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미리 하게 된 것입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런데 냉난방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실은 100만원짜리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교현초, 성남

초, 의림초, 장락초, 화산초, 칠금중 이런 데는 학교 내에 먼저 번에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개별 난방기와 EHP난방기를 구분해서 설치했거든요. 근데 그 구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또 그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학교별로 개별 난방기나 EHP난방기가 속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난방기는 보통교실에 전기시설과 에어컨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보통교실에 난방이 되어 있을 때 에어컨만 설치하는 비용이고, EHP난방기는 기존에 심야전기가 있는데 그건 난방만 하는 경우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오래됐던지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천정형으로 해서 냉난방겸용으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심야전기로 했던 그 난방이 고장이 나서.

● 시설과장 안세열

학교별로 전체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상황이 전부 틀립니다. 그 실정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 서수웅 위원

어차피 냉난방을 한꺼번에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서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부웅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안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정운영에서 2007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3학년 사회과 지역화교재 개편 지원비로 교육청별로 745만원씩 총 8,19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본예산안 1권 374쪽을 보시면 1억 1,37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편성된 지역교육청 초등학교 내고장 공부개발 보급비와 지금 다시 편성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초등 장학담당장학관 윤병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억 1,375만원은 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계속 교재를 활용합니다. 매년 인쇄를 해서 보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개편되는 교육과정에서 실험용교과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8,195만원은 2007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의해서 지역화교재인 3학년 사회과 탐구를 실험본 제작을 위한 개발을 위한 원고료, 삽화료, 사진료가 되고, 당초 예산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지역화교재의 인쇄보급 예산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간사 김부웅

당초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생각을 해 보면 내용도 똑같은 내 고장 공부개발 보급비인데 또 어찌 나왔나 했더니, 그러면 이제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책을 또 하나 만들겠다?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후년도부터 사용할 걸 미리 개발하는 겁니다.

● 간사 김부웅

지금 나와있는 책하고 다시 만들 실험

본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개정된 교육과정 자체가 2007년에 전 과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 **간사 김부웅**

실험본 제작비이다.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네

● **간사 김부웅**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나중에 그 내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안 93쪽, 청주지역에 사립유치원교사 학급담임수당 지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주를 제외하고 타 지역의 사립유치원교사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해 오던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청주지역을 제외하고 지원해 온 거죠.

그런데 갑자기 추경예산안까지 세워가면서 지원해야 할 사유가 생긴 겁니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인구 30만 이하의 도농복합지역을 대상으로 국고와 지방비를 5 대 5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1회 추경 이후 본예산에 공립학교와 타 지역은 다 이렇게 학급담임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11만원씩 그런데 청주시의

사립유치원 담임교사들에게 11만원씩 지급해야 되는데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사립유치원 지원이기 때문에 11만원씩 3개 도에서 강원, 충남, 전남에서는 11만원씩 사립유치원에도 지원을 했고, 그리고 부산은 5만원씩, 경남은 5만 5,000원, 경북은 4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청주시의 사립학교 학급담임교사에게 11만원씩은 지원이 안돼도 타 시·도의 사례를 준해서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절반 수준인 5만 5,000원씩 계상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11만원씩 지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간사 김부웅**

지원하자는 거에 제가 반대 뜻보다는 그럼 지금 청주를 안봐줬다는 건 그만큼 청주시에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소외를 당한 것이 되겠네요. 타 시·도의 경험에 비해서, 갑자기 이게 나왔길래 어떻게 당초 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고 2차 추경에 이런 게 나왔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렇다면 지금 안주는 도도 있다고 지금 얘기 보면 해석됩니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아직 안주는 도도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개 지역에서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 **간사 김부웅**

그럼 우리 도는 조금 빠른 편에 들겠네요.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에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서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기준이 인구 30만 이하만 지급을 했었어요. 30만 이상 도시에는 지급을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들어간 겁니다.

● **간사 김부웅**

2006년도부터 그랬다면서요?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금년도에 바뀌었어요.

● **간사 김부웅**

글쎄, 2007년도에는 안 지급한 거예요. 그동안에 해야 할 걸 안한 거예요. 그렇죠. 당최 헛갈리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07쪽,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7쪽하고 113쪽 아까 118쪽에서도 잠깐 됐었습니다만 일본어교사 현지연수, 중국어교사 또는 유럽어교사 현지연수 등 30명에 9,0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학력제고 유공교원 선진공교육 체험연수 국외연수비에 15명 등 3,000만원을 또 계

상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 예산심의에서 체험연수비 1,960만원을 계상했다가 초·중등교원간에 연수기회 형평성 또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번 2회 추경에 다시 계상됐다는 얘기에요. 이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 초·중등교원간에 국외연수현황이 또 굉장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명, 15명 또 118쪽에 있는 36명 그러면 81명이 또 증원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아무리 봐도 초등에는 더 이상 국외연수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계상한 사유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우선 초·중등교원이 외국체험연수 기회를 고르게 확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치코대학연수를 보면 초등교원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반 이상이 초등교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초등교원을 많이 확대해나가겠습니다.

107쪽에 있는 제2외국어 교사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나라가 영어교육에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외국어를 가르치면서도 영어교사에게만 자질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집중이 되고, 다른 제2외

국어 교사들은 많이 소외가 되어서 다른 제2외국어도 앞으로 균형 있게 신장을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해서, 특별히 앞으로 하자하고 지금부터 이걸 계상을 해서 일본어, 중국어, 유럽어 교사를 연수 보내기로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중국어 현지 6명, 유럽교사 현지 4명 이런 것은 여기서 미리 연수기간을 섭외 해 가지고 본인들이 가서 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학력신장지원 113쪽에 학력신장지원시스템 운영은 진로지도 유공교사를 해외체험을 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신청을 했다가 삭감된 내용인데, 우리 행정청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학력제고를 위해서 특히 고등학교에서 아주 3학년 담임들을 기피하고 특히 같은 부장이라 하더라도 3학년부장들을 더 기피하고 이래서 아주 행정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3학년담임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시·도도 있고 또 부장교사, 진로지도교사를 많이 해외체험도 시키고 그렇습니다만 우린 아직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3학년부장교사에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어렵습니다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간사 김부웅

취지나 또 그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한번 조정이 됐던 이런 예산안이 다시 올라올 때는 그래도 신중을 더기해서 왜 그때 삭감됐었나 그 이유를 타당성 있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예산안 103쪽으로 조금 후퇴를 해야겠네요. 학력평가문제인데 당초 예산안심의 때도 본인이 언급을 했습니다. 학력평가의 중요성은 제가 긍정하지만 초등학교 평가과목에 영어가 포함되는 것은 초등 영어교육 본래의 취지인 언어소통능력 제고인 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영어를 평가과목으로 넣었습니다. 언어소통능력이 중요시되고 하기 때문에 요 때의 평가도 초등학교에서 추구하는 영어과의 교육목표에 맞게 언어소통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부웅

평가방법이 언어소통 한다고 그러면 그 많은 아이들을 쉽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윤 장학관님 괜찮겠어요?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영어평가라고 해서 지필평가만 이루어지지 않고.

● **간사 김부웅**

언어소통평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많은 아이들을 저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아마 방법적으로 녹음을 통해서 듣기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구요. 그래서 어떤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교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개발이 되어서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또 우리 도가 표집검사에 또 응해줘야 됩니다. 본예산에 이걸 설정한 거는 이왕 표집검사에 응할 거면 전 학교에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전수의 기회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모든 면을 이번에 평가를 통해서 분석해서 앞으로의 평가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김부웅**

제가 지금 후회스러운 게 영어시험을 만날 못봐 가지고 아주 영어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자꾸 시험에 대한 이런 강박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137쪽이 되겠네요.

전문계특성화고등학교운영 지원에서 한국 마이스터고 운영비 68억 4,11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안에 의하면 충북반도체고등학교 한 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것이 맞죠?

●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 봉하원**
산업담당장학관 봉하원입니다.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어떤 학교가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간사 김부웅**

거기 보니까 충북반도체학교라고 써있는데요.

●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 봉하원**
그거는 저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려면 모델학교를 잡아줘야지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놓은 거지 실제 지정된 학교는 아닙니다.

지정이 되려면 우선 먼저 저희 도에서 요거를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교과부의 마이스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것이 적당하다고 했을 때 우리 교육감님이 지정하는 겁니다. 아직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위원님 보충말씀을 드리면 아직 행정적으로 지정이 된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충북반도체고등학교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고 그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부웅**

해서 137쪽을 보면 그래서 여기 써있길래 이게 지정이 된 건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써있잖아요 지정학교하고, 그러면 이 대상학교가 만약에 충북반도체학교가 아니라고 하면 그 선정의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 봉하원**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할겁니다. 도내에 전문계고등학교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적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학교를 갖다가 교과부에 다시 올리고 교과부에서는 마이스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 **간사 김부웅**

그건 얘기들었고, 그러면 충북반도체고등학교는 좋다 말았네 문서에 딱 나와있길래.

●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 봉하원**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 **간사 김부웅**

알겠습니다.

예산안 208쪽을 봐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영동 심천중학교 다목적 시설비로 7억 2,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심천중학교의 경우에는 BTL사업으로 한 번

책정이 됐다가 바뀐 것 그러니까 사업이 취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책정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심천중학교가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설계까지 맞췄다가 교육인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도정비 즉 법령정비 이후에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다목적실 지원기준인 30%를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교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 **간사 김부웅**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전체를 통으로 BTL로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BTL사업으로 안하고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니까 해 보겠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 **간사 김부웅**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교육위원 김병우입니다.

저는 좀 자질구레하게 알고 싶은 것이 많아 가지고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81쪽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인데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데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선생님들이 맞는 경우에 거기에 특수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전일제강사를 쓰겠다 그 인건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될 때에는 일반교사와 역할분담이 팀티칭이 되는 겁니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초등 장학담당 윤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일제강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교사정원은 책정되어 있는데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교사가 특수학급 대상학생들까지 같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생깁니다. 또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그러한 자격이 있는 특수교사자격증이 있는 전일제강사를 투입해 줌으로써, 정규교사는 보충을 못해 줘도 강사라도 보충을 해 줘야 특수학급의 대상학생들이 특수교육 활동시간이 늘어나고 교육이나 또 학습권이 더 보장

된다는 측면에서 추경에 긴급히 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면 일반교사와 같이 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담을 시키는 겁니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그렇게 하게 되면 전담이 되기 때문에 일반교사는 특수학급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특수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교사는 자기과목을 더 충실히 교육할 수 있고 전담으로 학생지도까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특수학급 교육에 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 경우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되어 있지 않고 중복은 안되는 겁니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아시다시피 특수교육보조원은 교사의 고유업무인 수업이나 또는 평가나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장애어린이들의 식사나 용변지도 이런 것 그리고 특수학급에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급에 가서 특수장애학생들을 보조하는 순수보조활동만 하기 때문에 전일제강사와는 전혀 겹치거나 중복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서수용 위원님께서 한번 짚어보신 문제인데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것이 올 11월 달에 시행령이 정비되고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아마 금년도에 시범학교를 선도학교를 늘리고 그렇게 특교금이 내려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능력개발 지원비라고 해서 학교마다 8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이니 겁니까? 무엇에 쓰는 겁니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말씀하신 대로 19명 미만교 소규모학교는 800만원에서 40명 이상은 1,300만원 그리고 20명에서 39명 사이는 1,000만원 이렇게 학교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의 활용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따른 교원연수를 통해서 교원들의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주로 많이 사용될 겁니다.

물론 교내연수도 될 수 있고 교내 학습 동아리도 될 수도 있고 전문서적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원연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해당학교의 선생님들은 교원능력개발에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출장

이라든가 또는 협의회비 등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평가지나 매뉴얼 또 연수자료, 종합보고서 작성 등의 자체 운영 보고나 이런 거를 위해서도 일부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병우 위원**

그래서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적기에 내려지면 더 요긴하게 쓰이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능력개발에 목적을 두고 하는 평가이고 그거에 보탬이 되도록 내려주는 재원이기 때문에 정말로 교원능력개발에 지도능력개발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무조건 넘겨만 주고 그냥 내버려두진 않겠지만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이는지 짚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2차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학교에서는 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회계를 추경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성립전예산으로 운영위원회 심의 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교원들의 각종 연수에는 미리 학교장이 집행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원들

의 순수 자질향상이나 교원연수의 입장에서 좋은 방향으로 선도학교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제2외국어 교사연수 사업에 현지 어학연수비 9,08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 연수경비의 경우에 당초 예산에는 1명당 40만원씩 편성했다가 지금 2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40만원은 교원대에서 추진하는 제2외국어교원 국내연수경비입니다. 국내연수경비로 계상이 됐던 것이고, 이번에 편성한 것은 외국 현지 연수가 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3개국에 똑같이 20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 교육국장 김종근

나라에 따라서 또 기간에 따라서 연수경비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거를 금액을 정해 놓고 금액에 맞춰서 현지 연수를 하도록 적절히 조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9쪽 중등교육과정운영과 관련해서 학습자료 개발에 드는 예산이 4억 7,000여 만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개발은 왜 하는 겁니까? 이것 좀 너무 일반적인 질문인데.

● 교육국장 김종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명시되어서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고, 수준별 이동수업에 교사가 부족하면 그 교사부족분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별 이동수업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수준별로 지금 교과서는 전부 수준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도 달리 해야 되고 평가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교로 교재개발비를 1억원씩 이미 배치를 해서 본예산에 들어갔고 특교로 내려왔고 1차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교재개발비를 내려보내면서 5 대 5로 대응투자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1억원을 또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계수를 1억원에 딱 맞추기가 어려워서 편성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어서 1억 3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

렸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 1억 여 원은 대응투자라는 거죠.

개발이유를 제가 물은 이유는 그것이 지금 여기에는 개발비로만 되어 있지만 개발은 왜 하는가 그거는 활용을 위해서, 정말로 교실현장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여기에 활용계획까지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예산이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요 교재개발을 우리가 여기에서 도교육청에서 개발하지 않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교재개발을 하겠다 신청을 받아서 학교형편에 학생수준에 맞추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주로 개발된 자료는 인쇄물로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자료사이트에 탑재해서 이렇게 내려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여기 인쇄비도 있긴 있는데요.

● 교육국장 김종근

인쇄도 하고 개발된 자료는 홈페이지에 탑재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학생들이 항상 활용할 수 있고 수업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그 110쪽에 보니까 개발비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적어요. 그 이유는 있습니까?

그 산출기초가 450만원하고 470만원.

● 교육국장 김종근

교당지원비가 1차 특교 때 중학교보다 고등학교를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특교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111쪽에 교과서개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도서심의위원이 보니까 기정 30명에서 80명으로 추가되고 확대됐는데 그 내역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도서는 교과부에서 인정하는 도서가 있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재량활동이라든가 특별활동이라든가 이럴 때 개발하는 것을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개발이 있는데 과거에 보다가는 지금은 인정도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3종으로 해 가지고 각 종별로 10명씩 심사위원을 구성하려고 했었으나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종으로 지금

늘려서 잡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교과서를 8종을 우리가 발간을 할거라는 거죠.

● 교육국장 김종근

8종을 예산을 해서 발간을 하는데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심의료만 2,000만원이네요.

● 교육국장 김종근

이 심의료도 요때 심의료는 지금 신청을 해서 개발한 다음에 가을에 가서 심의하는 겁니다. 외부인사 위촉해서 하는 겁니다.

● 김병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김부용 위원님께서도 짚어보셨던 문제인데 3학년 지도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만원정도씩의 해외연수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5명인데 그 15명은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하십니까?

혹시 지금 인문계 3학년 부장선생님들이 15명 이상이 될 텐데.

● 교육국장 김종근

일반계고등학교 특히 진학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보냈으면

다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3학년 진학지도가 주목표이기 때문에 진학지도 실적이 우수한 선생님들 순으로 이렇게 보내실 건가요?

● 교육국장 김종근

결과가 아마 나오기 전에 선정이 될는 지도 모르겠고 한데요, 그 결과보다는 노력의 과정이 우리 추천을 받아서.....

● 김병우 위원

제 생각에도 지난번에 일선학교에서 불행도 있었습니다. 진학지도를 정말로 다년간 해서 건강이 상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애쓰신 분들 수고하신 분들을 차라리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해외연수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오시면서 참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두루두루 둘러볼 그런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했습니다만, 연수비가 말이죠 보면 우리 집행청에서 보내는 연수들이 굉장히 넉넉한 연수들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180만원 이상을 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샘을 해서 이렇게 볼 거는 아니지만, 집행청에서 하는 연수들이 정말로 요긴하게 알뜰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하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효율성 있게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 125쪽에 학교폭력예방과 생활지도 일환으로 중·고등학교에 CCTV를 구축하고 지원하는데 50개교에 1억씩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50개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가요?

● **교육국장 김종근**

CCTV설치는 학교폭력이 오래되고 근절이 안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우범지역에 많이 설치를 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50개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금 아직 CCTV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그런 학교 중에서 재학생수가 많은 학교 또 학교의 위치라든가 구조상 우범지역이 특이한 지역이 있다 그런 학교들을 선정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요 CCTV설치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특별교부금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 재원인지 한번 알려주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요 예산에 추경에 지금 올린 예산은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 **곽정수 위원**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를 위해서 중·고등학교에 CCTV설치비가 지금 보니까 1억씩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중·고등학교에 CCTV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국고예산 지원 없이 미리 우리가 편성하게 된 사유가 지금 학교폭력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리 설치해서 우리 도가 예산상으로 국고에서 나올 수도 있는 돈을 우리 돈으로 썼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것은 초등학교만 50개교 200대를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래 여기 예산반영은 중·고등학교만 우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 **곽정수 위원**

초등학교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오는 걸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우리 예

산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곽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김병우 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126쪽, 127쪽에 대안교육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요것을 제천 간디학교에 연수를 위탁해서 하는 거죠.

● 교육국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래서 한 번에 650만원씩 두 반을 두 해 해서 2,600만원을 연수비를 주고 거기에서 선생님들께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와 대안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키는 그런 취지의 연수이죠.

● 교육국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한 반은 몇 명 정도씩 하는 거죠.

● 교육국장 김종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반 60명으로 편성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교과부에서 특교로 배정을 해 주고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리 충북은 강원도, 충북, 충남, 대전 이 4개 시·도를 함께 묶어서 사업을 하되 주관

시·도는 충북으로 한다 그리고 장소는 간디학교로 한다 여기까지가 교과부에서 지정해서 우리한테 위촉한 사항입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 60명 선생님들 두 반 그러니까 우리 도내의 한 120명의 선생님들이 그 기회에 대안교육에 대한 어떤 안목이나 식견이나 또는 신뢰나 이런 것들을 길러서, 이후에 대안교육기관과 우리 공교육 제도교육기관 간에 어떤 협조체제를 굳히기 위해서 하는 연수입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아니 협조체제 강화가 목적이 아니고, 우선 말씀드리는데 120명은 우리 도내 교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4개 시·도의 전체인원이 120명이고 거기에 우리 시·도가 몇 명이 참여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과의 교류가 목적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지도자질 함양이 목적입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대안교육적인 방법을 배워와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하려고.

● 교육국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 131쪽 대학수학능력 시험 관련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능은 원래 전형료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 **교육국장 김종근**

당해 경비로 본래 전형료를 가지고 전체 지금까지는 전부 전국을 통틀어서 중앙에서 일괄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그런데 이번에 시·도별로 상황이 달라져서 지역의 고사장은 교육감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요렇게 고사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 왔더니,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도 고사장을 설치해 달라 시험 볼 때 아침 애들이 일찍 일어나서 가 가지고 불이익을 본다 등의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일부 시·군만 분할하게 되면 또 나머지 시·군도 마찬가지로 지이니까 청원군을 제외한 전 지역을 고사장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에서 주는 예산보다 추가 경비가 되기 때문에 추가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금년도에 고사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내년부터라도 전형을 하게 되면 추가되는 경비는 우리 자체로 부담해야 됩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139쪽에 두 개의 농고에 현장체험교육 지원비로 2억 넘는 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청주농고하고 보은자영고가 현장체험학습을 한다든지 선진지를 갈 때 경비를 다 대주는 그런 예산입니까?

●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 봉하원**

산업담당장학관 봉하원입니다.

요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인력양성 교육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서부터 계속하던 것인데 우리 도에는 전국 10개교 중에서 2개교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농고에 1억원, 보은자영고에 9,000만원을 부여받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 **김병우 위원**

그래서 해당학교들은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학생들의 현장체험이나 박람회 관람이나 이런데 쓸 수 있다는 거죠.

●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 봉하원**

예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141쪽에 취업약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학협력취업약정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 봉하원

산업담당장학관 봉하원입니다.

이 취업약정제라는 것은 교과부에서 대학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전문계고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전문계고를 대학 측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실제 돈을 내려가는 것은 대학에 내려가는데 그 대학에서 대학과 전문계고와의 체결을 해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는 대학에서 산업체와의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전문계고와 대학과 산업체와 이러한 약정제를 맺는데, 지금 전문계고의 50%를 지원한 그 50%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10%를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산업고에는 충청대학과 되어 있고 충주상고는 두원공과대학과 사업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투자금으로 1,500만원하고 충주상고의 187만 5,000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그 취업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취업시키는 거를 보장해 주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들에서는 당연히 학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약정을 맺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취업까지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까?

●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 봉하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까?

●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 봉하원

효과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수용 위원님께서도 살펴보시고 저도 어제 일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선 본 예산에는 인도네시아 방문연수 40명에 대해서 2,885만원이 잡혀 있었고 요번에 다시 2차 추경으로 7,385만 5,000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방문연수도 40명 현지에 가서 시켜주고 다시 40명 초청연수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인도네시아 방문연수 계획은 작년 8월에 본예산에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방문연수를 할 계획으로 2,885만원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문연수보다는 초청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3월부터 지금 6월까지 양측간에 협의가 되어서 다시 2차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던 40명 방문연수는 없어지는 겁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렇죠.

그건 추경에서 정리할 겁니다.

● 김병우 위원

그것이 두 가지 다 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이 40명을 우리가 IT강국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연수를 하자는 것인데, 이 MOU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수비까지 이렇게 줘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없네요.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지금 40명이 아니라 요번에 초청되는 인원은 연수생이 20명입니다. 20명인데 2006년도 교육정보화교류협력합의서 MOU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충청북도교육

청은 반덴주정부에서 선발한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ICT활용 관련연수를 지원한다 3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 5항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측 실무자간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명으로 됐었지만 20명으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고, 여러 가지 사항도 서로간에 협의가 됐고 교과부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9월 4일날 8박 9일 동안 연수생들을 연수시킬 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80만원에 해당하는 연수경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약정은 내용에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연수를 하게 되면 연수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연수에 필요한 초청연수를 하면 우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 김병우 위원

이 연수경비는 수당 쪽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숙식비로 되는 걸 말하나요?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렇죠.

숙식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입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 내용이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 말고도 그 연수생들에 대해서 단복을 10만원짜리 단복을

주고 문화체험을 20만원씩 들여서 시켜주고 기념품도 10만원씩 주고 이것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극진한 대접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IT강국의 무슨 위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선심강국의 그런 결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그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6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가 지금 초청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이 사례를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른 시·도에서 기념품이라든지 문화체험경비라든지 단복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시·도도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문화체험은 이분들이 계속해서 연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은 충청북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구입비도 이분들이 잘사는 나라에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 그냥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명칭이 전략투자대상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000만원을 투자해서 4억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앞으로 긴 안목을 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복 같은 것도 타 시·도도 단복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연수하는데도 쓰고, 또 고국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한국에서 이런 좋은 옷을 입고 왔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의 한국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고양하고 국위를 선양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약정이 5년이기 때문에 5년만 할건가요? 아니면 계속 할건가요? 내년에도 또 이거 하게 됩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이게 지금 현재 약정이 몇 년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약정을 2005년 11월 29일에 했고 또 2006년 5월 9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간에 하지 않는다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협력이나 협정서 이걸 MOU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간에 국가 간에 조약도 사실은 격이 맞아야 되고 또

그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본청에서 2005년 2006년도에는 관련 조례도 없고 해서 의회도 상의도 할 것도 없이 집행청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협약협정서를 볼 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필리핀 같은 경우 그 경우는 행정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일개 행정기관이라면 우리 광역 지방자치단체 집행청 수장이신 교육감님하고 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짚어보고 하셔야 될 것 아닌가.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된 대로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려면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

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또 그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병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3쪽에 신백초, 내토중, 충주농고 다 목적교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5억 원 정도 있습니다. 우선 부지매입이 준비과정이라고 본다면 어쨌든 이것이 지금 시·군과 대응투자 협의는 다 마친 사안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건축부분보다 토지는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되지 않고는 건축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당해 연도에 같이 추진을 하다 보면 건물을 짓기가 어렵고 명시이월 내지는 또 사고이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뒤에 강당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대로 특교로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용도가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성이 지역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여건이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물론 이제 지난번에 제천에 교육감님이 교육청순방 때에 군수님하고 지역에서 간담회 하는 걸 제가 같이 동일한 장소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군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지역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 나중에 다목적실이나 이런 걸 건축할 때에 문제가 되고 하니 그런 토지를 군청 것하고 맞바꾸는 방법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다목적실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하고 현재 부지 내에서는 도저히 다목적실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수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응투자에 대한 약속은 받았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공문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에도 군수님 입장에서는 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상호 예산편성과 심의라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군에서 얼마를 대주겠

다고 공문을 정식으로 받은 것은 없어요, 아마 교육청과 시청간에 서로 공문이 지금 오고 가고 이런 단계입니다.

● 김병우 위원

아니 근데 충주농고 같은 경우에는 실습지가 없어졌고 또 필요하고 하니까 당연히 그거는 구입을 해야될 테지만, 신백초나 내토중은 제천시장님하고 그거 관련해서 확실한 답이 없이 그냥 덜렁 부지만사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근데 그 부지가 바로 학교 인근에 붙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목적실을 짓든 안짓든 위치상으로 보면 매우 필요한 그런 부지입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됐습니다.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어서 빠른 소리로 인사는 생략하고 빠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45쪽입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보통교부금중액 분이 1,153억 정도인데 이번에 2007년도 내국세 세계잉여금 정산액 재원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2007년도 정부예산 결산이 끝나면 2008회계연도의 이월금으로 편성되어서 2008년도 말이나 2009년도 본예산에 교육청으로 교부해서 편성해야될 예산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미리 당겨서 쓰여지는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 사용할 재원이 이만큼 작아진다 이렇게 봐 있는데 예산을 아껴 써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2007년도 결산 전에 세계잉여금 중에 선정산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될 예산을 미리 당겨쓴다는 그런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새롭게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어차피 올 재산이 미리 당겨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알뜰하게 잘 써야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도 저희들이 온 금액을 다 쓰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이번에는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곽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뜰하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 압박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살림살이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51쪽, 52쪽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전입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 편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방교육세전입금이 166억 1,000만원이 중액 편성되고 시도세전입금으로 8억 9,000정도가 중액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교육세와 시도세를 징수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되는 도청과 현 우리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잘되지 않는 건가, 이게 사실은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돈 것 같은데 2차 추경까지 미뤄진 걸로 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지방세로 받아서 우리 계로 줘야 되는 예산하고 도청에서 세워지는 예산하고 사실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두 개로 의회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청에 세입을 잡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는 시점하고 도청에서 추가경정예산이나 본 예산을 짜는 시점하고 저희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청으로부터 받는 추정액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교육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도의회에 올라갈 때쯤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에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금액을 우리한테 전출이죠, 도쪽으로 보면 전출을 잡지 않고 그때 당시의 세수를 잡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나오다 보니까 항상 예산서에는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시간차에 대한 갭이 생겨서 연말에 그거를 정산을 하는데, 보통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도 그것이 회기 중간이기 때문에 그걸 통일해서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도청입장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도청과 저희들이 도청에서 준다는 금액과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금액이 유기적인 협조가 안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 편성하는 시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세수의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도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무원들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돼서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도 많이 받았습시다만, 그거는 두 개의 의회가 있는 한 갭을 줄일 수 있겠지만 같은 금액으로 세수를 맞추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결국은 시기적인 기준차이 때문에 생기거라 그것을 1차 추경에 넣기는 어렵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연말에 가면 그게 결국에 총 받아들인 지방세 중에서 저희들한테 올 부분은 정산분이 다 오게 됩니다.

● **곽정수 위원**

연말에 가서는 딱 맞아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 **곽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지난 회기 교육정책 행정질의시 제가 국책사업에 대해서 추진과제 및 소요예산에 따른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6월 9일 보도

를 통해서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 및 급식비 감면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운영비 지원을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넓히고 저소득층 및 농촌 중·고등학생 급식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2008년도 2학기부터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운영비 지원을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넓히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중학생 소요재원만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운영비 지원을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하기 위한 중학교분 특별교부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유도 알려주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서 계속 학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학교는 2학기부터 운영비 즉 옛날로 말

하면 기성회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나 고등학교 부분은 보도자료에 언급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거는 자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교육부에서 그거에 대한 이행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획은 오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재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유는 기왕에 저희들 도는 교육부에서 발표 이전부터 저소득층 자녀하고 차상위계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 특히 차상위계층 자녀의 대상을 얼마나 하며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못하고, 기왕에 편성된 예산가지고 지금 2학기 때부터 충분히 주고 대상이 되거나 금액이 늘어날 경우에는 3차 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곽정수 위원

차상위계층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보통 법에는 보건복지장관이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매년마다 약간씩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 4인 가족이 126만 5,000원이고 그게 최저 생계비가 126만 5,000원인데 차상위계층은 그 120%에 해당되는 거를 차상위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20%는 계산을 해 보니까 151만 9,000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까지를 차상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0명중에서 한 120%이니까 최저가 한 10%된다면 차상위계층은 거기서부터 1.2%정도 더 가산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 걱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 6월 9일날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0년도까지 저소득층 자녀 및 맞벌이가정에 초등학생 자녀보호 학습지원을 위해서 초등학교 내에 방과후교실을 학교당 1개씩 설치하겠다고 발표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올해 신규로 몇 개의 방과후교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한번 알려주기 바랍니다.

또 방과후자유수강권제도는 이게 아마

바우처제도 같은데 저소득층 학생이 원하면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차상위계층 학생의 50%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 또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사유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윤병준

초등 장학담당장학관 윤병준입니다.

방과후 보육교실은 지금 256개 초등학교 중에서 본예산에 정확한 건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75개교를 올해 포함하면 36개교 정도만 방과후 보육교실이 설치되지 않고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발표한 것을 우리는 앞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수강권제도는 우리 도에서 그것도 제가 정확한 예산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차상위계층까지 거의 흡수를 해서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 걱정수 위원

방과후자유수강권이라는 것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방과후자유수강권의 개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제도의 일부를 도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수강권을 주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가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제도인데, 개념상으로는 성립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수강권을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학원을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그런 실행이 잘 안돼서 2차로 학교 내에서 그 학생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 강좌개설을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고 자꾸 빠져나가고 그래서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학생들끼리 모아놓으니까 더 어려우면 일반 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 그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점차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목적했던 대로 잘 실행되지 않습니다.

●곽정수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단양교육장을 하실 시절에 에듀코어스쿨이 아주 대성공한 걸로 우리 충북 전역에 지금 일개 시·군마다 1억씩을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단양에서 하실 때하고 실제로 도에서 국장님을 하면서

시·군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셨을 때 기획했던 부분보다 잘 안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장점은 많을 테지만 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종근

그런 프로그램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군 단위 지역은 비교적 출발이 순조롭다할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일 학교선정에서부터 어려웠던 부분은 청주같이 이런 도시지역이 방과후학교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도시지역의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더 많은 학교를 배정했는데, 도시에서 제일 어려운 이유는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우리 애들은 학원을 가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학원을 그만두고 이리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곽정수 위원

다음에 에듀코어스쿨을 더 심화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마음속에 참고해야될 내용을 말씀을 드려 보면, 사실은 지금 학교가 방과후학교 운영에 특기적성교육에 또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기다가 또 군 단위로 묶어서 에듀코어스쿨을 더 큰

사업을 갖다가 냐다보니까 중심학교에서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애로 사항을 얘기했고, 또 하나는 학교마다 학사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일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걸 획일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사의 수업시수가 과다하다 학교에서 정규교과에 또 방과후교육활동에 또 특기적성교육활동에 거기다가 에듀코어활동까지 갖다 얹어버리니까, 교과에 따라서는 시수가 주당 40시간을 넘게 물론 시간수당을 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대우를 해 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과로 내지는 혹사됐을 때 과연 밀도 있는 수업이 되겠느냐, 물론 여기는 외부강사도 학원강사도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도시 중심의 얘기일 때는 가능하지만, 사실은 시골의 군 단위에 그런 외부강사를 영입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땅치 않다 하는 그런 불만을 얘기하시는 것도 들었고, 또 하나는 시간수당이 차이가 난다하는 문제도 불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는 하는 수업은 시간수당이 2만 5,000원 2만원인데 에듀코어스쿨에서 하는 시간수당은 외부강사가 왔을 때는 더 많이 줄 수 있고 같은 교사가 해도 에듀코어 강의 내용은 시간수당을 더 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획일성의 결여 때문에 운영의 문제점을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권역으로 묶다보니까 버스로다가 대절을 해서 서로 교류를 하거나 교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버스임차료가 상당히 고액을 들어가면서 과연 들인 것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단양계실 때는 교사들이 대부분 단양소재지에 거주를 하시니까 별문제가 없지만 지금 여기 진천, 괴산, 음성 이런 데는 교사들이 거의 출퇴근을 하는데 그 늦은 시간까지 에듀코어스쿨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하는 실질적인 얘기도 했고요.

또 어느 관리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교장들의 정신적인 노동가치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배려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뭔가 선생님들이 봤을 때 존경할 수 있는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수업하는 사람은 수당을 받아 가는데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추진하고 감독하고 확인하는 또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봉사하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이것을 좀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저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고려되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것이 더 성공으로 가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지적해 주신 문제점 어려운 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고 해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정수 위원

지금 선생님들 얘기가 돈도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나 적절한 내 수업만 하고 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교과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서 부러먹는 것도 어느 정도 용량을 보고 부러야 되지 않겠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75쪽에 보면 이걸 청주교육청에 관한 내용인데 교육복지투자 우선학교 지원 그 내용에 보면 당초 예산에 똑같아요 숫자도 유치원 6, 초 5, 중학교 4 그래가지고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2차 추경에 거기 예산이 섰어요 학교수도 같고 이렇게 돼서 이게 중복투자는 혹시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당초 예산의 사업내용하고 지금 2차 추경의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입니다.

곽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비와 국고금 1 대 1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해 특별교부금이 10여 억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당초 예산에 지방비 대응투자를 우선 9억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요번에 특별교부금이 10억이 올 걸로 예산을 했는데 1차 적으로 4억 3,000만원이 왔습니다. 요번 예산에 편성한 거고요. 6,7월경에 나머지 금액은 추가로 교부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사업내용이 많은데 예산이 조금 와서 요번에 2차 추경 때 또 붙이고 다음에 또 붙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당초에 9억 9,535만원은 저희들 지방비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총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 거는 저희들이 지방비로 계상한 금액이고 특별교부금으로 추가로 내려온 것을 요번에 계상한 겁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교육복지투자 우선학교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교육복지투자 우선학교라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이라고 하면 도시 지역에 소외계층 즉 말하면 먼저 소득이 낮은 주민들이 살아 갖고 그분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다른 학생들과 소득으로 인한 교육격차가 나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청주시내 그 학교 중에서 유독 유치원 6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 이렇게 개수를 정했는데 그러면 청주시내가 학교가 상황이 똑같다고 판단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정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2006년도에 흥덕고, 2007년도에 상당고에 있었는데 이걸 학생수 중에서 저소득층을 저희들이 조사해 갖고 교육부하고 협의해 갖고 지정한 겁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당해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를 해 준 거로.

●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예

● **곽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저기 답변하시는 관계관계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아까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제가 궁금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지금 연수경비가 3개국 일본, 중국, 유럽 3개국에 1인당 연수경비를 200만원씩 그래서 20명, 4명, 6명 그러면 30명을 맞춰서 아까 질의를 한 답변 중에 200만원씩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연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물론 나라마다 생활비나 뭐 등등이 달라서 차등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까만, 200만원 맞춰놓고 거기에 맞는 연수를 했다라는 얘기는 마치 옷에다가 신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발에다 발을 끼운 게 아닌가 하는, 돈을 200만원 쓰기 위해서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연수를 했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과연 이런 식의 연수가 무슨 효과가 기대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그러면 200만원에 맞추다 보면 선진국은 4박 5일로 맞추고 후진국가는 8박 9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건 좀 어때요 모순점이 있지 않아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말씀하신 대로 돈에만 딱 맞추면 그런

모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 해서 200만원으로 통일시킨 근거는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지금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외국연수를 많이 주관하는데 나라에 따라 연수기간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나라 진행되는 연수가, 그래서 일반적인 물가수준이 일본과 유럽의 경우는 물가수준도 비슷하다고 보고 또 중국에서 진행되는 연수는 외국 일본이나 유럽 쪽에 그런 연수가 일주일정도 더 길고 이렇게 해서, 실제 연수경비는 비슷비슷한 점이 있다 그런데 그 나라 별로 연수기간이 길고 짧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 대개 그 정도면 맞출 수 있다고 봤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런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한 주체는 우리가 이런이런 연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런이런 연수를 한다라고 해서 보내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외국의 연수기간에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 줄 수 있느냐 컨택(contact)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기간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럼 아직 예산이 성립이 되는 과정이

니까 진행될 때 정확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요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 **교육국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언제 한번 되면 보여 주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서수웅 위원도 김병우 위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118쪽에 거기 합숙형연수 또 사이버형연수 그래서 이게 교원대학이나 또 국제문화원에 위탁을 하는 연수라고 하는 말씀을 잘 들었고 또 기간이 6개월 이렇게 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액수가 18명이 1,300만원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는 유학경비입니다. 어때요, 비용이 과다 계상된 것 같은 그런 저기는 아닌지요?

● **교육국장 김종근**

요 연수경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상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교육부로부터 위탁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 거기서 편성하는 예산을 연수경비를 우리가 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유학 가는 것보다 더 이상의 효과가 있는 집중연수를 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 **곽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129쪽에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거기 보면은 우선 발송상자 아주 자잘한 건데 수치상 문제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발송상자비 128개교 8학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통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이 5학급 이렇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8학급 하는 건 과다 계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인쇄 및 포장도 지금 중학교 것하고 고등학교 것하고 보면 숫자나 또 교과나 또 면수가 똑같은데, 중학교 거는 단가가 80원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1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인쇄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이 돼요?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자료산출을 할 때 학급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상자비는 8학급이 아니라 5학급으로 수정해야 되겠고, 또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 3번 듣기평가CD복사비에서부터 발송상자비까지 128교가 아니라 82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인쇄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모든 평가지 분량이 중학교의 면수하고 고등학교의 면수하고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 경비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곽정수 위원**

아니 근데 면수는 12면으로 똑같아요.

● **교육국장 김종근**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교과부에서 이렇게 아주 산출해 가지고 단가를 100원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연합으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단가가 적어지고, 초·중학교의 경우는 우리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로 인쇄해서 80원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 **교육국장 김종근**

반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할 때는 실비 80원이면 될 것이라고 계산한 겁니다.

● **곽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국정과제 중에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그 일환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마이스터고 지정 예정학교라고 보여지는 충북반도체고등학교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실습실리모델링비, 기숙사신축비

등 68억원을 투자하는데, 이걸 국고재원으로 해야 하는데 왜 우리 자체예산으로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두고, 두 번째, 한국형 마이스터고를 육성한다고 많은 예산을 하드분야에 투자를 했는데 막상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하느냐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가 선정이 되면 그 교육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 봉하원 산업담당장학관 봉하원입니다.

전문계고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교육국정과제로써 고교 다양한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학교개혁을 통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마이스터를 길러내는 전문계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과정은 일단 우리 산업에 필요한 그러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이 어떠한 전문분야에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반도체를 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를 생산 또는 반도체 장비를 수리하는 그런 마이스터를 생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은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을 개방형으로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도 역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지금 현재의 2분의 1로 줄이고 나머지 전문교과를 다 포함을 해서 실제 생산에 필요한 그러한 마이스터를 생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를 나오면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거기에서 다시 군대도 병역도 거기에서 기술병으로다 간다든가 이렇게 하고 다시 그 회사에 복귀해서 거기에서 대학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은 많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까지 교과부에서도 기본교육 과정을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어떤 보도자료라든가 또는 회의내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교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예산관계 좀 국장님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한국형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 재원이 68억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특교나 이것을 교육부에서 이렇게 받은 재원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1,185억원을 2007년도 선정산분을 받을 때에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권장해서 온 사업들이 3개가 있습니다.

기숙형공립학교 육성에 대해서 225억하고 마이스터고 20억 또 영어전용교실 및 인프라구축에 73억 이런 정도는 꼭 반영해서 집행을 해 달라는 저희들이 권장사항이 있었고, 이것이 그때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선 지원분 줄 때에 일반 재원 즉 보통교부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육부의 선 지원분을 미리 당겨준 취지에 따라서, 기숙형공립학교도 교육부 뜻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마이스터고를 육성하고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교육부에서 보내준 예산에 추가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재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재원보다는 재원 자체가 정부에 올 예산이 아니라 선정산분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교부금으로 편성이 된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1,185억원 은 중에서 기숙형공

립고에 225억 또 마이스터고에 20억 또 영어교육을 위해서 73억 그런 정도는 꼭 집행을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중에 마이스터고용으로 20억을 써야 되는데 여기 지금 68억을 넣었던 말이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나 하면 저희들이 1,185억을 받는 과정에서 본래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 취지가 국정사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내준 돈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국정과제 추진하기 위해서 써라 그 대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거를 사업을 집행해 달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금액은 우리한테 돈을 주기 위한 기준일 뿐 꼭 거기에서 그 돈을 써라 그 돈을 그것만큼 써라 적게 써라 많이 써라 가이드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에 더 뜻을 두고 하는 것이지 꼭 금액이 의미는 크게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마이스터고가 개방형으로다가 교장선생님을 공모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확정된다 그런 말씀으로 아까 봉하원 장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 봉하원**

맞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런데 그걸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바로 선정작업이 되어서 선정되는 교장선생님이 바로 마이스터고가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분야에 사실은 교과서를 개발한다든지 또 등등 산업체학교의 연계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충북은 반도체중심으로 해서 하이닉스하고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관계를 갖고 졸업생들이 거기 갈 수 있도록 하는 예비자원을 양성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추진이 되려고 그러면 빨리 선정이 되어야 될텐데 그 선정시기는 언제쯤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 봉하원**
산업담당장학관 봉하원입니다.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내년도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기본계획도 아직 내려오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준비과정도 사실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선정하는데 우선은 전공과를 관련지어져 있는 학교 그 다음에 반도체산업과에 많이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학교 그 다음에 산업체의 어떤 접근성이란가 학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곽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반도체고등학교를 염두에 두고 다 로드맵이 가는 거죠, 지금 선정만 안했을 뿐이지.

●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 봉하원**

저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데 어딘가는 기준을 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반도체장비를 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반도체고를 모델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심의 하다보니까 기숙형 공립고에 관한 얘기가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꼭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방문을 하면서 그 학교장 또는 지역동문회관계자 또 학교운영위원장 이렇게 여러분들의 얘기 또 학교장 실제로 그걸 담당하고 운영해야될 행정실 등등의 얘기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을 해 가지고 좀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더 논의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같이 우리 한번 고민을 하고 그리고 좋은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드립니다.

예산서 155, 157, 160쪽 체육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지난 달 광주에서 개최된 제37회 소년

체전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싸워준 선수나 지도자들 특히 교육청 관계관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국대회성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조한 것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더욱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체육예산 편성내용을 보니 순회코치 증원에 따른 안전비가 1억 790만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비로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지원비를 제외하고도 일반예산에서 20억이 투자가 되었고, 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반재원 9,100만원 등 일반재원만도 22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는 2008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선수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2차 추경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본예산에 넣지 2차 추경에 넣었는지 좀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찌감치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서 선수양성에 매진할 것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내년도 대비 훈련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곽정수 위원**

191쪽에 진천고등학교 그 밑에 현장방

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하는 부분을 보니까 그 땅이 주변의 소유주가 불응해 가지고 땅 모양이 우습게 생긴 걸 해 가지고 거기다 맞춰서 짓는다고 그러면 모양도 우습고 또 실제로 실효성도 바람직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업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거기 학교시설결정 용역비가 거기 지금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뭔지 내용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토지지적도상에 도시계획상에 학교용지라는 지목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땅이 전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변경을 받았고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전문가들이 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거나 계획변경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를 짓기 위한 학교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사전용역비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럼 여기 대체농지조성비니 이런 건 안들어간 거죠, 그냥 용역만 들어가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걸 구입을 하는 경비는 별도로 있고 순수하게 그걸 학교용지로 바꾸기 위한 용역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아까도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질문 중에 답이 나온 게 있어서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궁금했던 건 다목적실 예산을 설립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예산상에 어디고 안들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어디는 우리 예산이 7억이고 지방자치에서 3억을 준다 또 어디는 5억을 준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게 그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데 예산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전출이 되어서 잡혔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원칙상으로 보면 그게 도 예산으로 왔다가 도 예산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도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도 예산

을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군수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학교회계로 이렇게 줘야만 아마 지역정서상 조금 본인들이 PR이 되고 군청의 홍보도 되고 각 기관간에 협력관계도 아마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례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재산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교육재산이기 때문에 도지사 내지 교육감밖에 가질 수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회계가 학교회계하고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하고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 쪽에서는 그걸 받으면 또 학교회계수입으로 잡아서 지출로 잡는데 집행은 또 본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액을 저희들한테 주면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회계에서 나온 재원하고 저희들이 예산심의 해준 돈하고 합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지금 회계상으로만 순수하게 본다면 학교회계도 별도의 회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재산상으로만 순전히 본다면 교육감한테 와야 더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7억 해서 플러스 3억 하면 10억 자리 공사가 되면 거기 공사설계비나 감리비나 이런 게 7억 가지고 세우는 것하고 3억 가지고 세우는 것하고는 차액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의 예산만 가지고 부대경비를 세우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예산이 온 거하고 플러스한 부대경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계상으로 정확히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회계로 준 것에서도 일부 부대잡비로 세우고 또 저희들도 따로 세우고 해서 합쳐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시설직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집행을 그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세우고 있습니다.

● 걱정수 위원

진행하는데 예산상으로는 부대경비나 이런 건 여기 서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걱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순회코치문제입니다. 일선학교의 애기를 들어보면 운동들을 잘하려고 하지 않는데다가 순회코치마저 없어서 애로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북에 1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원을 해서 143명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강원도에 155명이고 우리보다 하여튼 비슷한 전라북도도 우리보다 조금 크긴 하지만 176명, 충남이 169명 그렇게 많습니니다.

좀 연차적으로 순회코치를 증원을 해서 일선의 지정종목 운영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7쪽에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성초, 초평초, 용천초, 어상천초, 보덕중, 심천중, 매괴고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 학교들은 자치단체장이 일정부분 30%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인 매괴고등학교는 유지재단에서 보조금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법인에서 3억 1,0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런데 지난번에 제천의 세명고등학교하고 형석고등학교에 예산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도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법인의 사학에 대한 운영을 권한을 가지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최소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법정부담금이라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도가 법정부담금 20%정도가 사실은 안됩니다.

그리고 어느 영세법인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런데 그러면 법으로 정한 의무부담도 못하는 데서 사학이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서 법인이 좀 학교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사학지원비도 좀 고려를 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그분들도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수혜를 받는 데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법인이 너무 미온적이다

그래서 법인의 어떠한 개진의 정이 있을 때까지 사학지원을 보류하자 이런 취지였던 걸로 제가 그 날 심의과정에서 느낀 감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렇다면 이게 올라가면 이것도 그 잣대에 맞추면 삭감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서 한 3억 1,000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올해 다목적강당비를 포함해서 특별교부금 신청이 아직 교육부로부터 신청요구가 없어서 저희들이 내지를 못하는 하는데, 추경시점은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우선 확보해 놓고 특별교부금이 오면 그걸 세입조치를 별도로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걸 특별교부금이 오면 집행을 하고 특별교부금이 오지 않으면 사실상 집행은 보류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사실 공·사립을 저희들이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다니기 때문에 공립학교는 시설이 월등히 좋은데,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는 열악

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공·사립 구분없이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도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립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한 행사만 하지 의무는 안한다 그런 잣대로 보면 우리가 매과고에 올렸어도 이게 삭감될 가능성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재단에서도 더 지원금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사립학교도 차별대우 받지 않고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집행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157쪽 학교운동부 훈련시설 확충 요건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대상학교가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충주예성여고, 세광고등학교, 덕성초등학교, 청남초등학교, 울랑초등학교, 모충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울랑초를 충주교현초로 모충초를 단양초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정정 공문을 보내셨죠, 맞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기획관리과장 연희지입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그거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은 울랑초등학교를 충주교현초등학교로 모충초등학교를 단양초로 하는 걸로 저희

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곽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문제인 기숙사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9개 학교에 기숙사를 건립을 하면서 국고로 225억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 부담하는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도한 투자다 하는 의견들이 위원님들의 대부분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어느 것이 합당한 건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간사 김부웅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1,185억 돈이 나온 것이 선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교부받는데 영향이 있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영향이 있을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 간사 김부웅

그렇다고 지금 특교라고 해서 우리 이자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되는 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소요예산을 가지고서 시간이 있길래 언뜻언뜻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옥천고등학교는 3,800만원 정도, 영동고등학교는 66명 증원하기 위해서 1인당 5,040만원 정도 그 다음 많게는 괴산고등학교는 50명 증원하기 위해서 8,350만원의, 지금 저는 들어가는 인원 한 사람당 평균을 한번 내본 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 해당지역의 아파트값이 지금 한 30평 정도 된다고 하면 7,000정도면 될 겁니다. 25,6평 따져도 6,7천 정도, 4인 1실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괴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8,300만원의 1인당 경비가 넷으로 들어간다면 3억 2,000 한 실이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무슨 시설을 그렇게 엄청나게 하길래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많아서, 제가 자꾸 엄살을 떠는 것 같은데 오늘 진천고등학교를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숙사에 정보검색실, 화장실, 샤워실, 도서실 뭐 이런 갖출만한 것은 다 갖춰있더라고요.

그런데 괴산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게 안 가봤습니다만 갖춰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50명을 수용 더하기 위해서 41억 1인당 8,300만원씩 들인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걸 저는 포문으로 열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병우 위원

사실 기숙형공립고등학교를 특히 농산어촌 교육낙후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먼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는 나무랄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교롭게도 선거시기에 아주 중요한 교육정책의 공약의 하나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섬세하게 필요성이나 투자계획 같은 것이 점검되지 못한 채로 덩어리돈이 내려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고요.

특히 학교 현장을 직접 가서 보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역시 그렇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목적경비가 어떤 이름으로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요긴하게 정말 효율성 있게 잘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우리 자체 필요에 의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또 그걸 확충을 해 왔습니다.

제일 최근에 지었던 그런 학교들에도 가보면 정말 있을 건 다 있고 아마 교육시설 중에서 가장 초현대식으로 그렇게 지어져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청에서 이번에 내려온 관련예산을 집행을 계획을 세운 요번 안은 그거에 몇 배로 더 단가를 올려 잡고 최고급 자재로 아주 초현대식으로 호화롭게 어떻게 과장하면 이렇게 설계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목적을 가진 225억 정도로 들어왔으니까 그것은 쓰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대상학교인 9개 고등학교에 필요시설을 225억 범위 내에서는 과연 지을 수 없는가, 그것도 언뜻 우리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생각은 그 범위 내에서 지어도 지금 필요한 정원내의 시설을 충분히 짓고도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었던 학교들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십 몇 억대 정도면 훌륭히 지었고, 그렇다면 지금 225억을 가지고 9개 고등학교에 필요한 규모씩 이렇게 배분을 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굳이 우리 자체 재원에 투자를 해야될 필요도 없다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짓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산출해 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여기 보니까 그 중에 3개 학교 정도들은 기존 시설 리모델링하는 예산도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리모델링뿐 아니라 화장실증축이라든지 개·보수 그 다음에 냉방시설 추가설치 이런 관련예산들도 들어 있던데, 그런 것과 계

획들을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포문을 이어서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김부용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기숙사의 사업단가가 높고 고액의 투자를 함으로써 예산이 과다 소모되지 않는가라는 염려를 해 주셨고요. 또 김병우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갑작스러운 성급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면서, 현재 기숙사도 지금 충분히 잘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신축하는 기숙사들이 단가가 너무 높고 다소 고급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225억의 재원을 가지고 현재 수용하고자 하는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일을 하다보면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자체 재원이 절약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의향을 물으셨고요. 또한 기존 기숙사나 기타 부대시설 사업을 덩달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농어촌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지역을

떠나는 농민들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으면서 그분들이 도시 못지 않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느냐, 이런 부분적인 차원에서 마침 정부정책이 농어촌학생들에게 좀더 혜택을 주자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부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높은 단가로, 또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 상당히 향상되고 질 좋고 기존의 시설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보 검색실이라든가, 모뎀학습실, 강의실, 세탁실, 체력단련실 또 승강기, 다용도실, 옥상휴게실 또 신생에너지를 이용한 태양열이용시설, 에어컨시설 또 전기를 쓰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승압공사 아울러 또 그 부지를 이용함으로써 인해서 기존에 있던 건물들의 용도까지 합쳐서 이렇게 짓다보니까, 저희들 스스로도 기존에 짓던 그런 개념보다는 높은 단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예산절약부문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현장방문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심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곽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저는 인문계고등학교 교장을 오창고등학교, 흥덕고등학교 두 군데 교장을 해 봐서 사실은 기숙사의 생리를 잘 압니다.

이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이 사실은 효율성이 강조되어야 되는데 지금 잘 지어 놓고도 학생이 얼마나 차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방문한 학교 중에는 그 인원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 있는 교장도 있는가 하면, 어떤 교장 선생님은 지금 있는 것도 어려운데 뭘 또 지으려고 그러느냐 이러는 솔직하게 심정을 얘기하는 교장선생님도 없지 않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를 들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숙사비를 대주는 학교는 학생들을 채우는데 별문제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는 학교는 기숙사생을 채우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늘렸을 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늘어난 분량만큼을 또 지원해 주겠냐 하는 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현재 있는 인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인원을 갖다가 기숙사를 지었을 때 과연 재정자

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거기 기꺼이 학생들 기숙사비를 제공해 주겠느냐 하는 것도 걱정스럽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어놓고 어느 때는 보면 6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데는 26만원인가 얼마를 내야 된다고 그러는 학교도 있다고요 기숙사비를, 그랬을 때 농촌에서 자기 집에 밥 먹으면서 숟가락 하나 더 있는 건 그게 그렇게 부담이 안되지만 한 달에 목돈으로 20몇 만원씩을 부담한다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농촌현실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농현상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농촌이 피폐해져 가지고 생활수준이 자꾸 낮아지고 조선평정이나 등등 기타 어려운 학생들이 여기 농촌에 많이 있는데, 과연 그걸 부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형들이 그 비율을 채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한 가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침대 샹시실에 쪽 있는 데에 들어 갈 수 있는 학생하고 돈도 없고 성적도 떨어져서 거기 못 들어가는 애들하고의 심리적인 박탈감도 그 치유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도 건축하면서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또 투자한 효율성도 한번 따져야 되고 또 지금 지어놓으면 제가 자꾸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거 지어놓으면 50년 써야 됩니다. 50년간 교육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사실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 이거 덜렁 초호화로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학교에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거 어떡할 거냐 하는 것도 사실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같이 한번 걱정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수웅 위원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자꾸 중복되는 얘기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기숙사가 되어 있는 데가 증축하는 데가 대부분인데 지금 호화판으로 하면 똑같은 학교 내에서도 새로 지은 호화판 들어가는 아이들하고 애들은 어떻게 할거냐 하고 웃으면서 물어봤더니, 그거야 새로 들어온 1학년 저리 보내고 3학년 좋은 데로 보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 같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저기 들어가는 애들은 아

마 안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교장선생님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확실치 않은 현실에서 이걸 지어 가지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학교의 새로운 고민거리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또 그거 꼭 그렇게 지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준다는데도 안하면 그 육은 누가 먹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도 다니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면서도, 우리 위원들이 만일에 이리이러한 낭비요인이 있으니까 불투명하니까 요번에 한번 짚아보면 어떠냐 생각하면서도 짚았다가 먹는 육도 있고, 냅다 승인했다가 이 자식들 지으라고 해놓고 말이야 애들도 못 채우는 건 말이지 현실도 모르고 했다 이런 육먹을 수도 있다,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우리 공유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한진 몰라도 이게 내년 예산하고도 관련이 아주 없는 게 아니라는 예상도 되니까, 거기서 225억 온 것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그렇게도 가능한데 또 어떻게 보면 자체예산을 해서 해 준다고 했다가 잘못해서 교육위원들이 짚았다고 하면 그

덤터기도 써야되는데 그게 덤터기가 될지 나중에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고언이 될지 모르겠어서 걱정스러워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한번 우리 고민해 봤으면 어떻가가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 답변이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이상일

국장님 비슷한 의견인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다 들으시고 공통적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겠어요.

우리 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기숙형 기숙사를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어져 있는 기존 기숙사를 몇 군데 들여다봤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참 잘 지었다 이 정도면 아이들한테는 너무 과분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농촌의 가정환경과 학교기숙사와 이걸 너무 차이가 나면 아이들이 정말 그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해서 공부 잘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그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좋은 기숙사를 지어준다면 물론 좋지만 거기 들어가는 아이들과 못 들어가는 아이들과 그 위화감 또 앞으로 관리문제

화장실도 방방마다 만들려면 나중에 화장실 청소 하려면 청소비가 아마 많이 들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에 현재 잘 지어져 있는 기존 기숙사처럼 지어주면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 의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감선생님을 선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평일 날은 그런 대로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들이 다 쉬는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그 문제하고, 두 번째로 식당에 일하실 영양사나 요리사들이 벌써 그 소리 듣고 그거 없는 학교로 전출간다고 그런 답니다. 180명이 세 끼를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전기용량문제도 냉난방시설 다 하조계다가 45살이나 되는 거대한 기숙사를 지으면 아마 전기를 몇 키로 이상 쓰면 전기기사를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한 등 끄기 자전거 타기 이러는데 이렇게 거대한 시설을 해놨을 때 과연 그 운영경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겠는가 이걸 지방자치단체나 누가 안도와주면 결국 수익자부담이 되는 건데, 도시의 관찮은 사람들은 관찮겠지만 농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만원 내지 30만원 기숙사비 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어려움을 일선학교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집행청에서 예산을 변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묶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우리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먼 앞날을 염려하시는 위원님들 때문에 또 위안도 되고 이러실 것 같습니다.

곽정수 위원님께서 완성 후에 학생수용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서 운영비 지원 없이 입사율이 낮았을 때의 문제점, 또 지역별 학교별로 기숙사 운영비, 또 농촌에서 기숙사비가 상당히 부담이 가중될 것이면서 기숙사간에 학생입사자와 비입사자 간의 형평 뭐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투자에 신중성을 기해서 우리가 재검토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서수용 위원님께서서 증축이 대부분인데 기존 기숙사하고 환경차이에 대해서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거대하게 투자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합당하고 적합한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원들 스스로 현장에 갔다왔지만 상당히 고민스럽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25억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가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무 위원님께서도 현지 방문결과 현재 있는 기숙사들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지어 있는데 다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새로운 기숙사를 건립했을 때에 관리비문제와 입사자간의 형편문제, 또 현 기숙사정도의 기숙사를 이렇게 절약해서 짓는 문제를 검토를 해 보시자는 말씀과 함께, 이상일 위원장님께서도 다 짓고 냈을 때 운영상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감의 근무여건 물론 사감이 전문사감이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염려가 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거기 종사자인 영양사라든가 기타 종사자들도 미리 걱정을 하는 문제, 또 기술적으로 시설전기용량문제라든가 농촌경제상 기숙사부담 가중문제 이런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하시자는 의견이 공통사항으로 나오신 걸 보면, 어

떻게 됐든지 간에 위원님들은 이 사업투자에 대해서 420여 억원이 넘는 투자를 하면서 이것이 과연 적정하게 우리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워낙 많은 사업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또 교육감님께서서는 단지 같은 인문학교 내에서의 입사자, 비입사 또 그러니까 구 기숙사에서 입사하는 학생과 새로운 건물에서 입사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감님은 기숙사가 없는 학교의 학생들과의 형평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가를 높게 짓고 또 기존 기숙사보다는 굉장히 호화롭게 환경을 저희들이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없는 시설들을 넣는 대신에 다른 시·도보다 수용인원은 낮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나 우리 도가 비교적 낮고 다른 시·도는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본 결과 60%정도 내지 85%를 수용하는 시·도도 일부 있고, 또 어느 시·도는 여러 가지 저희들보다 환경이 틀리겠지만 시설단가도 우리 못지 않게 하는 시·도도 있는가 하면, 시설단가는 저희들

보다 낮은 시·도가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염려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는 그래도 어떤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투자예산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지었지만, 운영은 이게 수익자한테 100% 전가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입사자 아닌 학생들한테 투자될 돈까지 입사자한테 투자하는 것도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도 상당히 질문도 교육부에 많이 해보고 했지만, 아직 교육부 쪽에서는 하드분야부분만 이렇게 대화가 되고 소프트분야나 운영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교육청 교육감한테 일임하는 상태의 답변이 지금 오고 있고 그것도 문서화되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우리 실무진들이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떻게 방침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두가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다소 지금보다는 예산이 절약되는 방안으로 이렇게 위원님들 염려를 덜 수 있는 방법만큼 저희들이 수용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설령 예산이 이렇게 확정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도 리모델링이 쉽고 나중에 수요자가 많다면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니면 1인 4명 넣는 걸 6명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존에 나중에 교실이 더 필요하다든가 하면 기숙사가 조금 다소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바로 리모델링해서 보통교실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등 최대한도로 효율률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집행청에서 조금 낮은 수준에 조금 덜한 수준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숙사를 이렇게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일

예, 답변하세요.

● 교육국장 김종근

기숙사문제 장기적인 것을 두고 따질 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현재의 기숙사 운영하는 학교들을 볼 때 기숙사가 있음에도 수용을 다 못해서 모자라서 고민

하는 학교도 있고 또 기숙사가 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입사자 수가 적어서 걱정하는 학교 지역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지역사회 형편 분위기, 학교분위기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학생과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갈등을 그래도 줄이려면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입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지을 때 집보다 좋게 잘 지어야 성공가능성이 높지 잘 짓지 않으면 오히려 성공가능성이 더 희박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정독실 등 문화적이고 여럿이 사용하는 공간 그런 것이 앞으로 사회가 갈수록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조정해 주시고, 이 사업을 두고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가서 잘 됐으면 잘된 대로 못됐으면 못된 대로 평가할 때, 교육위원들께서 가지시는 부담보다도 추진하는 교육감님이 갖는 부담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하여튼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진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 **위원장 이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과장 안세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에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기숙사에 비해서 시설이 과다하지 않느냐 호화롭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걱정도 하셨습니다.

기존 기숙사시설은 대부분 침실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침실, 기타 화장실, 정독실 일부, 사감실, 세탁실 요런 정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기숙형 기숙사를 짓는 학교의 기숙사는 방금 전에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상당히 구비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규모가 기존 기숙사에 비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크니까 기존 기숙사에 비해서 호화롭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축비 자체는 2006년도에 저희들 기숙사 지은 것이 m^2 당 100만원 기준 했습니다.

금년도 기숙사 짓는다고 하는 것이 ㎡당 115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자재나 건설자재가 인상된 것을 따진다고 해도 3년 중에 15%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철근이나 레미콘 등 건축자재 파동으로 인해서 자재가 인상된 걸 따진다면 100만원에서 115만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결코 호화롭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더 편의시설을 갖추고 편리하게 이렇게 짓다보니까 규모가 커져서 건축비가 커졌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정회)

(19시 05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김부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부웅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삭감 내역입니다.

예산안 108쪽 제2외국어교사연수 연수 경비 2,000만원 삭감 일본항공료 700만원 삭감, 예산안 129쪽 중·고전국연합학력평가 중학교학업성취도평가 발송상자비 115만 2,000원 삭감 고등학교학업성취도평가 듣기평가CD복사비 18만 4,000원 삭감 발송상자비 110만 4,000원 삭감, 예산안 137쪽 전문계특성화운영지원 한국형마이스터고 운영비 8억 6,427만 6,000원 삭감, 예산안 150쪽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인도네시아 교육정보화지원 초청연수 기념품구입비 100만원 삭감 문화체험 경비 200만원 삭감, 예산안 158쪽 학교운동부훈련시설확충 덕성초등학교 감리비 750만원 삭감 충주교현초등학교 감리비 720만원 삭감 단양초등학교 감리비 720만원 삭감, 예산안 190쪽 192쪽 기숙형고등학교육성 77억 4,115만 3,000원 삭감 삭감된 예산 총 86억 5,976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여 세입·세출 각각 1조

6,290억 7,753만 4,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조정내용과 같이 본 추경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된 사업비를 예비비에 편입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세출 예산 각각 1조 6,290억 7,753만 4,000원으로 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김부웅,
위 원곽정수, 김병우, 서수웅, 정무.

○ 출석공무원 : 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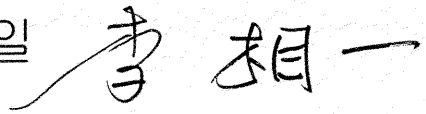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희, 시설과장 안세열.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8. 7. .

위원장

이상일

 李相一

(별첨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1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8. 6. 25. (수) 14:00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08. 6. 26. (목) 14:0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